



2017 연차보고서

2018. 1

『2017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국의 고사성어에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힘을 들이지 않고 요행으로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거나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수주대토(守株待兔)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는 고지식함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현재 보험산업은 생존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험시장 포화 및 수익성 하락,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관행 변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연구원은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며 보험산업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보험연구원의 다양한 연구결과와 연구계획 등을 정리한 2017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은 보험회사 회계·자본제도 대응, 고령사회에서의 보험 역할 제고, 신성장 동력 발굴, 경영 효율화 지원 등 4대 사업목표하에 이루어진 2017년 연구성과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새로운 회계·자본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연금제도 등 고령사회에서의 보험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헬스케어서비스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경영효율화 지원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를 통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및 정책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장의 경우 주요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 공청회 및 심포지엄 등 각종 연구행사 내용입니다. 저진보험·전통시장 화재보험에서부터 자동차보험, 리스크관리,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서비스, 자율주행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3장에서는 보험회사 위험관리 제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보험규제 합리화 등 2018년의 4대 사업목표하에 수행하게 될 보험연구원의 주요 연구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회계제도·건전성감독, 4차 산업혁명, 연금·건강관리, 보험법제 등과 관련된 현안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4장은 보험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 연구 관련 활동입니다. 보험 및 금융전문 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 정기간행물 소개와 금융·보험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등 대내외 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인 5장에서는 보험연구원의 일반 현황으로 연구조직과 각 연구부서의 주요 연구영역 및 업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보험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보험연구원장 한기정

한 기 정

I . 2017년 주요 연구

1.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18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2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과 과제 고찰
- 24 연금세제 효과연구: 연금저축을 중심으로

2. 회계·자본제도 대응

- 28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30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3. 고령사회에서의 보험역할 제고

- 34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36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1, 2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 시 자산 적정성 비교분석
- 38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 방안
- 40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체계 개선 방안
- 42 주요국 공·사건강보험 연계체계 분석

4. 신성장 동력 발굴

- 46 생산물배상책임 역할 제고 방안
- 48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과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과 시사점
- 50 정신질환자 현황 및 위험보장 강화 방안
- 52 장애인 위험보장 강화 방안
- 54 보험회사 은행업 겸업 사례와 시사점
- 56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활용 방안
- 58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60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5. 경영효율화 지원

- 64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 방안
- 66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산출방법 개선 방안
- 68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72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74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76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78 보험금 청구권과 소멸시효
- 80 해외 주요국의 지급여력제도 현황
- 82 국내 신탁업 현황 분석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과제 도출
- 84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
- 86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 88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
- 90 지재권 중장기 보험 운영 타당성 연구

7. 금융·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 94 보험설계사 이직 요인과 정착률 제고 방안

CEO Report

- 95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96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97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KiRi 리포트 포커스

- 98 영국의 퇴직연금 세제 변화에 따른 적립금 수령행태와 시사점
- 98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
- 99 독일의 솔벤시 II 시행 현황과 특징
- 100 핀테크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점과 검토사항
- 101 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
- 102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배상책임의 문제점
- 102 중국 중안보험 인슈테크 사례의 시사점

Contents

- 103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이슈 고찰
- 104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가계부채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105 하드 브렉시트가 금융시장과 해외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06 주요국 손해보험회사 수익성 비교
- 107 영국의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107 EU 보험시장 진입의 열쇠,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제도
- 108 영국의 개인저축계좌 다변화와 시사점
- 109 「EU 보험경쟁법」의 변화와 수평적 협력가이드라인 활용방안
- 110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법안 검토
- 111 P2P 보험 도입 효과 분석
- 112 건강생활서비스의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식
- 112 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 113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의 구체화 필요
- 114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변화 방향
- 115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와 의미
- 115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
- 116 카셰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117 보험회사의 환해지 현황과 문제점
- 118 독일 보험회계제도 변화와 시사점
- 119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120 사고부담금제도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과 자동차보험의 형평성 제고
- 121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변화: IFRS 17 시행은 사업모형 혁신 기회
- 121 빅데이터 분석의 자동화와 정보보호
- 122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123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24 손해보험회사의 보유율 확대와 시사점
- 125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현황과 개선방향
- 126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
- 126 드론 사고 손해배상책임 구체화 필요
- 127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이후 가입률 변화와 시사점
- 128 중국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 129 공공데이터 개방과 인슈테크 스타트업
- 129 근로자재해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선결과제
- 130 상법 보험편 주요 개정 논의
- 131 상습적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
- 132 유럽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 정비 논의와 시사점
- 1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 134 산재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35 금리위험관리 수단으로서 자금차입 방식 확대의 필요성
- 135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쟁점
- 136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
- 137 중국 전문보험회사 현황 및 시사점
- 13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 139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경과와 과제
- 139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 139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 현황 및 고도화 방향
- 140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증가와 과제
- 140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
- 141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 검토
- 141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
- 142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42 『장애와 건강 통계』를 통해 본 장애인 건강위험의 특징과 활용
- 143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와 고려사항
- 143 최근 RBC 비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
- 144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성과
- 144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방향 및 시사점
- 145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평가와 제언
- 145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 일괄면제규정 일몰과 시사점
- 145 중국 리스크와 해외사업 지역다변화
- 146 연성보험사기와 행동경제학
- 146 보험회사, 자산관리 대중화시대에 대비할 필요
- 147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 147 비대면채널 자동차보험 가입자 특성 및 시사점
- 148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비교와 시사점
- 148 헬스케어서비스와 건강나이 도입
- 148 2016년 11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 149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회적 인식 개선
- 149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 150 현행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
- 150 산림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 151 경상수지 흑자와 국고채 금리
- 151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최근 판례 및 법 개정

Contents

- 152 보험회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
- 152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의미
- 153 암치료 기술의 발전과 영향
- 153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방안
- 154 보험회사의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동향
- 154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 155 미국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 155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155 보험업법 차별금지 조항의 영향 검토
- 156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소고
- 156 미국 금융선택법안의 비금융그룹 규제완화와 시사점
- 157 전세금보장상품 판매 이슈 검토
- 157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 개정 검토
- 158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사고위험
- 158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 159 한미 채권시장 변화와 보험회사의 캐리트레이드 전략
- 159 보험회사의 포인트제도 활용 전략
- 160 보험종류별 예금보호 금액의 차등화 필요성
- 160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성과와 시사점
- 161 금리상승과 생명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 관리
- 161 데이터 이코노미와 보험
- 162 치매와 우울증의 관계
- 162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
- 163 중국 기업의 해외 금융회사 M&A와 소유·지배구조
- 163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
- 163 연령과 금융자산에 따른 즉시종신연금 선호도 차이
- 164 여성 주택소유자 증가와 주택연금
- 164 보험회사 상품구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 165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피해자 구제방안
- 165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
- 166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
- 166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과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 167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방안

- 167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 168 디지털 건강관리플랫폼 현황과 고려사항
- 168 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 169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리뷰 포커스

- 170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의 원인과 개선 방안
- 170 고연령 사망률 변화 추이 국제 비교
- 171 의료서비스 가치를 고려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 검토
- 172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
- 173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실태 및 개선 방향
- 174 노후준비 지원 제도 도입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 175 최근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의 종합 평가
- 176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재산세 체감에 미치는 영향
- 176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연금가입률 변화와 향후 과제
- 177 한·일 고령자의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 178 한·일 고령자 노후생활 관련 정책 평가
- 179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실태 및 대책방향
- 180 한·미의 노후빈곤과 연금정책 평가
- 181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확대와 사적연금제도
- 181 한국과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연금정책 평가
- 182 건강생활서비스와 의료행위 그레이존 검토
- 183 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
- 184 '복지 비용'과 '노후 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지출 구성 변화
- 184 요양병원 현황과 개선 과제
- 185 한·미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 평가와 정책적 함의
- 186 한·일 공적 건강보험 건강생활서비스 비교 평가
- 187 호주의 공·사건강보험 연계 사례와 시사점
- 188 은퇴가 건강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 189 의료심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과 의무화 검토
- 189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정부 및 정당(안) 비교

Contents

- 190 한방추나요법 진료비 실태와 문제점
- 190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연금 도입과 과제: 독일 휘룸연금을 중심으로
- 191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과 과제
- 191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 일본사례 중심으로
- 192 변액연금 현황과 과제
- 192 일본 DC형 제도 개혁과 함의
- 193 우리나라 고령농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 193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혁의 연계 필요성
- 194 개인형 IRP 수익률 현황과 과제
- 194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및 과제
- 195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 판매추이와 과제
- 195 근로자의 건강보장 가미형 퇴직연금 상품 니즈 및 과제
- 196 가구의 총 저축액 대비 개인연금 저축액 비중 비교
- 196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비자 인식변화 조사
- 197 우리나라 다태아의 출생과 건강 현황
- 197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 사례 및 과제
- 198 퇴직연금 가입자의 위험자산 투자성향과 과제
- 198 고연령 사고사망자 감소추이와 의미
- 199 영국 연금시장 경쟁도 변화와 시사점
- 199 노후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
- 200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 지표의 추정
- 200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Ⅱ . 2017년 주관 행사

1. 정책·경영세미나

- 204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 207 4차 산업혁명과 보험산업의 미래 및 2017년 보험산업 정책방향
- 209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계약자 행동과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 211 장애인·정신질환자 위험보장 강화 방안
- 214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 217 Risk-based Global Insurance Capital Standard
- 219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과제

- 221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 223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 225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
- 227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 229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 231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및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3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2. 국제세미나

- 236 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 240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 245 당신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고령사회, 공사보험 연계 방안
- 249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 252 보험의 미래 혁신

3.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258 IFRS 17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 259 IFRS 17 도입과 세무회계
- 260 최근 원화환율 동향 및 전망

4. 고령화포럼

- 262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 263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대응

5. 금융정책포럼

- 266 기본소득의 이해
- 267 보험시장 선진화, 도전과 과제: 가격자유화

Ⅲ . 2018년 주요 연구계획

1. 보험회사 위험관리 제고

- 270 회계제도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계약자배당제도를 중심으로
- 270 Solvency II 시행 이후 유럽보험시장 연구
- 270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271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운용에 관한 연구
- 271 생명보험상품의 장수리스크 연구
- 271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방향 연구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 혁명 대응

- 273 인구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
- 273 2019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74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중장기 전망
- 274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베트남 진출 전략
- 274 자본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 275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275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3.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276 요양병원 운영 현황 및 역할 정립 방안
- 276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연금위험 관리 방안
- 276 여성 연금정책의 국제 비교와 정책 방향
- 277 고령사회 대비 예방중심 건강관리 연구
- 277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4. 소비자 보호 및 보험규제 합리화

- 278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278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 278 보험 모집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5. 기타

280 보험연구원 10년사

IV . 2017년 연구 관련 활동

282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283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 제공

284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85 KIRI 고령화리뷰

285 각종 대외 연구 활동

288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290 보험·금융 도서 정보 제공

V . 일반 현황

292 경영비전

292 연혁

29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294 임직원 현황

294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297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2017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연구 결과를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있게 제시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보험동향

분기별로 연 4회 국내외 경제·금융·및 보험산업 주요 동향을 설명

포커스·이슈 분석

웹 격주간지 『KiRi 리포트』 및 웹 월간지 『고령화리뷰』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I.

2017년 주요 연구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회계·자본제도 대응

고령사회에서의 보험역할 제고

신성장 동력 발굴

경영효율화 지원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금융·보험 이슈 연구

Chapter 1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과 과제 고찰
- 연금세제 효과연구: 연금저축을 중심으로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 보고서

18

연구배경

우리나라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5년 기준 5.5%로 일본(4.5%), 독일(4.1%)에 비해 높다. 또한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자산 규모는 1,077조 원이며, 가계금융 자산의 31.7%를 보험/연금이 차지하며 국민의 주요 저축 및 위험보장 수단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보험계약 실적(신계약 건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침투도 기준으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침투도는 2015년 기준 각각 7.5%, 5.1%로 OECD 평균(생보 4.8%, 손보 4.5%)보다 높아 성장 여력이 제한적이다.

또한 향후 금리상승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저하,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 및 취약계층 증가, 그리고 해약률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보장 공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회계제도의 변화, 세제 및 수수료 체계 변화로 인한 저축성보험 감소세 심화가 보험산업 성장세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사회적 변화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토대로 2018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를 전망함과 더불어 효과적인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경영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경제전망

IMF는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 회복세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을 2017년 3.5%, 2018년 3.6%로 전망하였다. 한편,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중국의 중속성장 체제로의 전환,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다.

국내경제는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2017년 3.0%, 2018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적 리스크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지속, 부동산규제 강화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이 있으며, 대외적 리스크로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감소,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압력,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등이 있다. 국내 금리는 물가 상승 및 경제성장률 확대, 미국 금리상승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3년 물)가 2017년 1.8%, 2018년 1.9% 상승할 전망이다. 기준금리의 경우 해외 투자은행들에 따르면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인해 2018년 중 한 차례 인상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감소와 장기저축성보험 감소 지속으로 인해 2017년 대비 0.5%p 감소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2.3%p 감소한 3.0% 증가가 예상된다. 종목별로 보면, 우선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 공시기준이율 하락 등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재물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성장으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성장정체와 가계 저축여력 감소, 세제혜택 요건 강화로 인한 개인연금의 성장저하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고가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요율인하의 여파로 전년 대비 4.0%p 하락한 5.4% 증가가 예상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4.8%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감소와 장기저축성보험 감소 지속으로 인해 2017년 대비 0.5%p 감소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보험니즈 변화, 보험료 현실화 등으로 보장성보험이 성장할 것이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및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저축성보험 판매 위축이 계속되면서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2.1% 증가가 전망된다.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수요 위축이 지속되겠으나 본격적인 베이비부머 은퇴, 개인연금계좌(IRP) 가입대상 확대 등으로 은퇴시장이 확대되어 퇴직연금시장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8% 증가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대수 증가세 지속, 고가차 증가, 가입금액 고액화 등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보험 가입 확대, 2017년 대형사 중심의 요율 인하 등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한 3.2% 증가가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종목	2016		2017(E)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전체 손해보험	84.5	5.3	87.0	3.0	89.2	2.5
장기손해보험	47.8	2.6	49.2	3.0	50.2	2.1
연금부문	11.8	13.7	11.6	-1.4	11.9	1.8
자동차보험	16.4	9.4	17.3	5.4	18.1	3.2
일반손해보험	8.5	2.6	8.9	4.8	9.3	4.5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18년 보험산업 주요 경영과제로 본연의 경쟁력 강화, 보험회사 위험관리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시대 대비를 제시하였다.

주요 경영·정책과제 2018년 보험산업 주요 경영과제로 본연의 경쟁력 강화, 보험회사 위험관리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 대비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적 성장의 동력이었던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 본연의 경쟁력에 근거한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성장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손해보험의 시장 확대 및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자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통해 축적된 고객의 자산을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게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진출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현지화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을 줄이기 위해 현지 관리회사에 보험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위험보장 공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접하고 위험보장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 보험상품의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한 진입규제 완화(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IFRS 17, IFRS 9, K-ICS 등의 제도 변화

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운용수익률을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리변동과 환율변동 위험 관리를 자산부채관리 전략과 일치시켜야 한다.

셋째, 금리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확대, 가계 부채 관리 정책으로 인한 해약률 상승에서 초래되는 위험보장 공백 확대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공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장 확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등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는 실업 증가, 소득양극화 등의 폐해와 더불어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우선 IT, 의료, 보험이 융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슈어테크 혁명

: 현황 점검과 과제 고찰

박소정(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보고서

22

연구배경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사의 기본적인 운영의 틀은 수백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삶을 바꾸어 왔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변화는 보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슈어테크 관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같은 기술의 발달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인슈어테크가 우리나라에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인슈어테크는 보험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스타트업 사례들과 기술의 속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보험산업의 변화를 읽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기술들 중 보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스타트업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독일·영국·중국·일본 등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같은 기술의 발달이 보험산업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 Series A 투자는 2011년 7천 5백만 불

에서 2016년 5억 천만 불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60%에 가까운 투자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영국·중국·일본 등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슈어테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판매채널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판매 및 확장 사례가 다수 있다. 가격비교 사이트로는 PolicyGenius, theZebra가 있다. 기존 보험사가 온라인 채널을 추가하는 사례로는 Progressive, SwiftRe가 있다. 온라인 전용사 사례로는 Oscar, Clover 등이 있다. 기존 보험사가 온라인 전용사를 설립한 사례로는 Haven, ExpressTerm 등이 있다. 비보험 핀테크 회사가 보험상품을 교차판매(cross-selling)하는 사례로는 N26, SoFi 등이 있다.

그리고 인슈어테크에 기반한 디지털 채널을 통한 판매는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비용을 낮추어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개별 수요를 반영한 상품 사례로는 Ladder가 있으며, 공유경제에 부합하는 on-demand 상품 및 micro-duration 상품 사례로는 Cuvva, Slice, Sure 등이 있다.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P2P 보험회사 사례로는 Friendsurance, Guevara 등이 있다.

인슈어테크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은 보험회사에 가장 필요한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로 통해 위험의 대상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축적에 기반한 새로운 보험의 모델이 제

기존의 보험사들이 인슈어테크를 이해하고 산업 변화를 선도해 나가지 않는다면 완전히 다른 생태계의 가치사슬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시되어지고 있다. 미국 **Progressive**사에서 90년대 말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텔레매틱스를 활용한 보험가격 결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물인터넷의 활용은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가정종합보험, 애완동물보험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사물인터넷은 보험계약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하므로 단순히 위험분석이라기보다 위험 자체를 줄이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인슈어테크는 보험계약들이 손실에 대한 보상에서 위험을 관리해주는 것으로 사업의 개념이 바뀔 수 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활용은 개인정보와도 긴밀히 연결되는데 **MIT Media Lab**의 **MedRec**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공유에 대해 활발히 실험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험사들은 빅데이터, 드론, **AI** 등의 신기술을 보험 가치사슬 (**Value Chain**) 전 영역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인슈어테크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보험의 기본 개념을 바꿀 수 있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P2P** 등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보험 가치 사슬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과 가까운 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의 보험사들이 아닌 제3의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다. 예를 들어, 많은 경우 텔레매틱스 데이터는 자동차 회사나 통신사가 가지고 있다.

보험업은 금융중개업으로 중심에서 중개하는 것이 핵심 역할인데,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P2P**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P2P**의 결합은 보험중개업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플랫폼만을 제공해 주면 그룹에 속한 개체들이 스스로 위험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P2P 모델은 대형 손실에 취약하지만 재보험사나 자본시장의 증권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결론 기존의 보험사들이 인슈어테크를 이해하고 산업 변화를 선도해 나가지 않는다면 완전히 다른 생태계의 가치사슬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연금세제 효과연구

: 연금저축을 중심으로

정원석(연구위원)·이선주(연구원) | 보고서

24

연구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빈곤층일 정도로 심각한 노인 빈곤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입 연금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은퇴 후 소득대체율은 40% 안팎으로 개인연금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이 현재 소비를 줄여 장기간 자금의 유동성이 제한되는 연금에 자산을 적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각국은 개인의 연금 자산 축적을 유인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에 따른 가입자들의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해외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연금세제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내용

우리나라 연금세제 역시 공·사적 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2001년 이후 연금세제는 연금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E), 적립금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E), 연금수령 시 적립금과 운용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T)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대

표적인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2년 이후 240만 원이었던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2007년 연간 300만 원으로, 그리고 2011년 연간 40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2014년에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세제혜택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국세통계연보와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1년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 확대에는 고소득층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가시켰으며, 2014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금세제와 비교할만한 해외사례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세제혜택 한도 18,000달러를 부여하고 만 50세 이상자에게는 추가적으로 6,000달러를 부여하는 Catch Up Contribution을 도입하였다. 이후 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사적연금 납입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존 사적연금 납입액 수준이 높은 그룹이 Catch Up Contribution의 대상자가 된 경우 사적연금 납입액이 크게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중산층과 동일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환급해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높아지는 추세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 저소득층에게 사적연금 납입액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Saver's Credit의 경우 저소득층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과세미달자가 많아 신청을 해도 세액공제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시행되었다.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이후 영국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큰 폭으로 제고 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퇴직연금가입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제도의 변화와 함께 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연금제공의무 부과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연금세제에 대한 반응분석과 해외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금자산 적립이 절실한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저소득 과세미달자에게도 중산층과 동일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액만큼은 환급해 주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제안하였다.

결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중 절반이 빈곤층이며, 노인인구는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적절한 소득원의 확보는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연금저축 세제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저소득층의 노후자금 마련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hapter

2

회계·자본제도 대응

-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보고서

28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금리 하락으로 많은 생명보험회사의 실질 자본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감소는 부채가 원가법으로 표시되는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2021년 시행이 예정된 IFRS 17에서는 부채시가평가에 의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채시가평가제도(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의해 자산과 부채의 매칭이 잘되어 있지 않은 생명보험회사 자본의 금리민감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생명보험회사 자본관리에 대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여력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까지 남은 3년여의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본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본고는 회사별 내부자본 확충 여력 및 외부자본 확충 환경을 진단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재무회계상의 자본에 대한 확충·관리에 대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주요내용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자본확충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는 첫째, 보험회사의 내부 자

본확충 여력이 충분한지 여부이다. 이익의 내부 유보나 신계약가치 제고는 외부 자본확충에 비해 선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부 자본은 채권자 및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및 투자자에 의한 경영감시 및 경영상 제약을 받게 된다. 즉, 경영자 입장에서 내부 자본은 외부 자본에 비해 비용이 낮은 자본확충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회사의 외부 자본확충 여력과 정비례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익 유보 및 신계약가치 제고 등 내부 자본확충 여력이 크다는 것은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회사일수록 외부 자본확충 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외부 자본확충 여력도 상당부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둘째, 보험회사의 외부 자본확충 환경이 대규모 자본조달에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대규모 외부 자본확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보험회사는 내부 자본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내부 자본확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수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회계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이익 내부유보율이 70% 이상인 경우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감독당국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회사들은 적자 회사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흑자를 달성하지만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고 지배주주의 자본투입 여력이 낮은 회사들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이들 회사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 대부분이어서 내부유보율 제고를 통한 자본확충 여력이 제한적이며, 성장 둔화로 신계약가치 제고에 의한 가용자본 확충 여력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내부 자본확충만으로는 향후 부채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최근 생명보험산업 전반적으로 사업 효율성이 제고되어 내부 자본확충 여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외부 자본확충 환경도 녹록치 못하다. 특히 유상증자 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자금이 부족한 지배주주가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많은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잃지 않으면서 대규모로 증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지분희석이 없으면서도 재무회계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신종 자본증권의 경우 최근 한화생명의 발행 성공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발행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자본증권의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대규모 발행은 생명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순이자비용의 증가로 오히려 내부 자본확충 여력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발행 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최근 규제완화에 의해 NH농협생명이 선제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성공시킨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후순위채 발

행은 재무회계 자본 감소에는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잔존만기가 5년 이하로 되면 실질 자본비용이 신종자본증권 이상으로 급증한다는 단점이 있다.

결론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감독당국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회사들은 적자 회사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흑자를 달성하지만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고 지배주주의 자본투입 여력이 낮은 회사들로 보인다. 대략 4~5개의 중대형 생명보험회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감독당국은 이들 회사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보고서

30

연구배경 2021년은 보험회사에게 매우 중요한 해이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 17, 신지급여력제도(K-ICS) 이외에도 IFRS 9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IFRS 9은 2018년부터 시행되나, 보험회사의 경우 IFRS 17 도입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면제받는다. IFRS 9은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회계기준으로 자산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FRS 17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비해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컨설팅 보고서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정성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정량적 분석은 미미하다.

선행 보고서들은 IFRS 9 시행 시 보험회사의 총당금 부담 증가, 손익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정성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내용 IFRS 9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IFRS 9은 현행 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첫째,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방식 변화에 의해 각 측정 방식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중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자본변동성과 손익변동성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둘째, 손상 인식 방법의 변화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자산-부채 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자본변동의 문제가 여전하나, 자본변동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위험회피회계 기준의 변화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세 가지 영향에 대해 차례로 분석을 한다.

먼저,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방식 변화에 의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자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FRS 9 적용 시 생보사에 비해 손보사의 FVPL 자산 증가가 크다. 2016년 말 자산을 기준으로 생보사는 9.8%, 손보사는 14.5%의 자산이 FVPL 자산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기준 생보사, 손보사 각각 1.7%, 2.6%인 것에 비해 매우 큰 수치로서 IFRS 9 시행 시 손익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단순한 가정에 의해 과거 당기순이익을 추정해보면, 현행 회계기준에 비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변동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IFRS 9 시행 시 일부 보험회사들의 FVPL 계정의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사는 경제적 관점의 현금흐름 및 자본관리에 중심을 두되, 향후 시행될 IFRS 및 K-ICS와 공통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듀레이션 갭과 자본 변동성을 동시에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 및 듀레이션을 확대시켜야 한다. 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 및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FVPL 자산의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IFRS 9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의해 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히,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은 현행 발생손실모형에 비해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가능성이 높다.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중 5%가 투기등급(BB+ 이하) 하락 혹은 30일 이상 연체 가정할 경우(투기등급의 부도율은 16%, 부도 시 미회수율은 80% 가정), 대다수 보험회사는 대손준비금 이하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나, 일부 보험회사는 대손준비금 이상의 대손충당금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자산부채 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자본변동의 문제를 살펴본다. 2016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새로운 회계기준(IFRS 9 및 17)을 적용했을 때, 금리 1%p 상승 시 기업회계상 자본의 변동률을 보면, 만기보유증권을 FVOCI로 재분류할 경우 모든 보험회사의 자본변동률이 50% 이하가 된다. 하지만 이는 현행 RBC 기준의 듀레이션갭을 바탕으로 추정된 결과이다. 부채 듀레이션을 RBC 기준보다 50% 증가시킬 경우 일부 보험회사의 자본변동성이 10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현행 회계 상 자본변동률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현행 자본변동률에 비해 큰 폭으로 자본변동률이 커지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행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이 매우 높은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회계기준 전환 시 오히려 자본변동

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회계기준상의 자본변동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변동성을 관리한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보험회사는 경제적 관점의 현금흐름 및 자본관리에 중심을 두되, 향후 시행될 IFRS 및 K-ICS와 공통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듀레이션 갭과 자본변동성을 동시에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 및 듀레이션을 확대시켜야 한다. 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 및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FVPL 자산의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FVPL 자산 비중 축소와 장기채 비중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률 저하는 투자영역의 다변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FVPL 자산의 비중 축소 및 FVOCI 자산의 비중 확대를 실행할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 구성도 달라질 것이다. 주가 및 금리리스크가 줄고 신용 및 외환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 및 외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Chapter

3

고령사회에서의 보험역할 제고

-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1, 2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 시 자산 적정성 비교분석
-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 방안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체계 개선 방안
- 주요국 공·사건강보험 연계체계 분석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수요 등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수용된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퇴직연금의 외연이 확대된 상태에 있고, 향후 퇴직연금 도입의 의무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의 환경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대책 이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수급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우리나라 퇴직연금 환경변화는 크게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입단계 환경변화는 사업장 도입 의무화,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 대표

되고, 수급단계 환경변화는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와 연금화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퇴직연금 세제는 2000년 EET방식으로 변경된 후 지속적으로 변화되었다. 가입·적립단계에서는 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 및 손비 처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한다. 그리고 수급단계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되나 연금화 유도를 위해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을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입단계에서는 낮은 세제지원으로 가입유인이 약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며, 영세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수급단계에서는 연금수급 유인이 미흡하여 향후에도 일시금 수급을 선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 대다수 국가는 납입 보험료액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수급단계에서는 축적된 연금 적립금에 대해 과세하는 EET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저축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한 세제혜택효과는 각각 17%와

퇴직연금 환경변화는 가입측면에서 사업장 도입 의무화, 가입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 수급측면에서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와 연금화 유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활성화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라고 하겠다.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세제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4% 수준으로,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으로는 ① 정부재정 절감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② 소득불균형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③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한 연금수령 유도, ④ 사용자의 재무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세제효과 분석으로 소득 계층별 가입유인 효과,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 의무화 효과, 가입대상자 범위확대 효과의 3가지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첫째, 소득계층별 가입유인 효과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은 가입유인을 감소시켰으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세제혜택 확대는 가입유인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 의무화 효과와 관련하여, 도입 의무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가입이 먼저 확대된 후 저소득층의 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이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연금소득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세제혜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입대상자 범위확대 효과와 관련하여,

2017년 7월부터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자는 7,315천 명으로, 조세지원은 연간 최대 1조 6,230억 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제도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세제혜택 또한 증가한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세제 개선안으로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입단계에서는 OECD 수준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세제지원, 저소득층 및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영세사업주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한 것을 제안하였다.

수급단계에서는 연금형태의 수급을 유인하기 위해 노후자산형성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퇴직일시금 세제지원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결론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세제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1, 2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 시 자산 적정성 비교분석

최장훈(연구위원)·이태열(선임연구위원)·김미화(연구원) | 보고서

연구배경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문제는 세대 차이를 가리지 않고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노년층의 복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인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의 경우 OECD 국가와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도입의 역사가 짧다 보니 대다수의 노인들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수년 전 도입한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다시 인상하고자 하는 정책도 현 노인 세대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근로 세대의 노후 준비는 어느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세대보다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있으며, 공적연금 또한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 구조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현 근로세대의 노후 준비가 부족할 때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 근로세대가 은퇴할 때 노년 생활을 위한 자산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전망하고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간 가구 특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1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을 은퇴 시점인 60세를 기준으로 각각 추정하여 각 세대별로 은퇴시점의 자산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노후 생활비의 적정성은 성별, 소득계층별(총 3분위로 구분), 배우자 유무별,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 때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 후부터 사망 시까지 일정한 경우와 변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은퇴 후 소득은 사회보험소득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망에 사용하는 모형으로 능형회귀(ridge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고 설명변수 간 인터렉션 항들을 회귀식에 포함하여 변수들의 설명력을 높이고 전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능형회귀에 의해 계수가 산출된 후 데이터를 입력하여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 생활비, 그리고 사회보장 소득액을 전망한다. 전망이 완료되면 순자산 전망액에서 매년 생활비를 차감하고 사회보장 소득액은 더하는 방식으로 자산 적정성을 계산한다.

전망 결과를 보면, 은퇴시점(만 60세)에서의 순자산은 1차 베이비부머가 2차 베이비부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자 가구주, 배우자 있는 가구주,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은퇴 시 자산과 은퇴 후 소비에 대한 예측과 조정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2차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노후대비를 위해 가계는 절대적인 노후 소득 규모 못지않게 소비 수준 설정이 중요하고, 정부는 가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보험업계는 소비계획을 반영한 연금 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퇴시점의 생활비는 순자산의 경우와는 반대로 2차 베이비부머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높게 나타났다.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모두 고소득, 남자 가구주,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주 가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

노후생활비를 위한 은퇴시점의 자산 적정성을 자산고갈 연령과 노후 생활비 부족액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은퇴 전 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소득 중간계층이 다른 계층보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 소비는 자산 상태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시점 노후 준비 정도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2차 베이비부머의 사회보험소득이 더 높지만 이보다는 순자산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순자산을 사회보험소득을 차감한 생활비로 나누어 보면 2차 베이비부머가 더 낮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산이 고갈되는 시점을 계산해 본 결과 2차 베이비부머의 자산 고갈 연령이 더 낮게 나타났다.

셋째, 노후 생활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의 계층에서 자산 고갈 시점이 평균 수명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다수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국민의 노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퇴 시 자산과 은퇴 이후의 소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자산을 얼마나 더 축적해야 하고 소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가계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노후 소득 규모 못지않게 소비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노후대비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가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보험업계는 소비계획(전망)을 반영한 연금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 방안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보고서

38

연구배경

사적연금이라 불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이후 40%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정 도입 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기대보다 약화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은 절실하다.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하는 사적연금의 포괄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연금수령 유도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기간을 장기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과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가입자 행동요소(Behavioral elements) 변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주요내용

DB형 퇴직연금의 기업체 부담 등으로 DC형 퇴직연금 비중 확대가 전망되며,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형 IRP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 일시금 형태로 수령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을 보완할 추가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IRP 계좌는 해지가 매우 자유롭게

때문에 적립금의 이탈이 발생하기 쉽고, 높은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해지율이 높은 수준이다. 한편 개인연금은 최소연금지급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의무 연금수령 기간도 5년으로 단기이므로 종신연금에 비해 노후소득 확보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해외 각국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 및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금선택 행동에 변화를 유도하는 요소는 스위스, 덴마크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두 국가는 전액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국가이나 연금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은퇴 초기 목돈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분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며, 전후후박형 연금과 같은 상품을 제공한다. 한편 주로 일시금수령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 다양한 수령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수령을 일부 강제화하는 국가에서는 제한적인 상품을 제공한다. 한편 많은 국가에서 일시금 수령 시 높은 세 부담으로 연금수령을 유도하며, 이직 혹은 퇴직 시 적립금이 이전되는 개인퇴직계좌에 대해서도 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연금선택 행동요소(Behavioral Elements) 변화 방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을 통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이 절실하다. 첫째, 가입단계에서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며, 연금수령의 장점과 일시금 수령의 단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금수령 기간 장기화를 위해 연금수령 기간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립금 유출방지와 수익률 제고 방안을 도입하여 적립금 확대를 통한 장기연금수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였다. 설문 결과 연금과 일시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수령방식을 은퇴자에게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은퇴자의 연금 비중 확대유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폴트 연금수령 방식과 프레이밍(연금선택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선택의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 또한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연금수령 유도에 효과가 있었다. 응답자 특성을 혼인 여부, 연령,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금선택 행동요소(Behavioral elements) 변화 방안 활용 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가입단계에서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지정한 후, 수령단계에서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액 연금을 수령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은퇴자에게는 다시 일시금 비중 20~100%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연금수령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레이밍 또한 연금수령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연금교육과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 시 의무 연금기간 선택과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수령 시 의무 연금기간 선택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여 연금 수령기간 장기화 유도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사적연금의 적립금이 축적되는 적립단계에서도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립금 유출방지와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해외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장기연금수령 유도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가입단계에서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며, 연금수령의 장점과 일시금 수령의 단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금수령 기간 장기화를 위해 연금수령 기간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립금 유출방지와 수익률 제고 방안을 도입하여 적립금 확대를 통한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적연금 장기연금수령 유도 방안은 사적연금을 DC형 및 DB형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개인연금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계 등 모든 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 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체계 개선 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 | [보고서](#)

40

연구배경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DB형 중심에서 DC형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로 투자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까지 퇴직연금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투자중심 가입자교육, 제도이해중심 가입자교육을 보다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조사(2012)에 의하면 가입 근로자의 약 35%가 가입자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 내용 역시 부실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대상 조사(2016)에서도 사용자 책임의식 결여로 형식적 교육에 치우치고 있으며 사업자의 교육 전문성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가입자교육 실태를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가입자교육 현황 및 실태를 선진국의 가입자교육 사례 등과 상호 비교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사용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 책임은 미국 등에 비해 엄격하지만, 사업자에게 가입자교육을 일괄 위

탁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입자교육은 매우 형식적이고 투자중심 가입자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가입자교육 매뉴얼 작성과 표준화, 투자교육의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특히 가입자 교육 중 핵심적 교육인 투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매우 낮고 투자교육 이후 상품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비중 역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교육 시행을 통해 투자상품 변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교육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비용부담 가중으로 가입자 교육 담당인력이 거의 없어 체계적인 교육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 담당인력 확보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의 교육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퇴직연금서비스 센터, 일본은 기업연금연합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자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와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가입자교육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철저한 가입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입자교육 내실화는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현안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가입근로자의 약 30% 수준이 가입 시 교육 및 가입후 교육 모두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교육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면교육이나 집합교육을 통한 가입자교육이 영세사업장의 경우 매우 적어 영세사업장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교육 인프라 제고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먼저,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가입자교육을 위탁하여 교육책임이 사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사용자와 사업자 간 교육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와 사업자 간의 가입자교육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둘째, 가입자 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구체적인 교육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에 교육 내용이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최소한 어느 범위까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단한 정보제공은 서면교육중심으로 하되, 투자관련 교육처럼 집중도가 요구되는 내용은 집합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교육방법 차별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연금교육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연금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표준

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교육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전문화된 가입자교육 서비스 센터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교육에 대한 현장 실사 및 설문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실시 여부, 교육 내용 등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가입자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가입자교육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 가입자교육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입자, 사용자, 사업자, 정책당국 등 제도참여자 모두의 적극적 노력과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수적이다. 가입자교육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와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해, 그리고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 재인식할 때이다.

주요국 공·사건강보험 연계체계 분석

정성희(연구위원)·이태열(선임연구위원)·김유미(연구원) | 보고서

42

연구배경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개선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보장의 핵심 화두가 되면서 의료비 관리 문제와 공·사 보험 간 관계가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보고는 ‘국민 의료비의 효과적인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공·사 연계 체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해외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 사례를 보면 사전에 정립된 민영건강보험 급부 수가 기준을 통해서 불필요한 진료나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면서도, 의료인의 전문판단을 존중함으로써 수가 규칙의 예외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보험업계(민영건강보험연합)와 의료업계(연방의사연합)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민영건강보험 급부 수가 규칙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

적 건강보험제도 도입부터 공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진료(급여)와 자유진료(비급여) 간의 의료비 혼합을 원칙적으로 제한(혼합진료금지)함으로써, 민영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유진료가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인과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또한,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에서 공보험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민 대상으로 의무가입인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민영건강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동시에 개별법으로 규제하며, 공공병원에서는 무료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되 보험회사와 의료기관들 상호 간의 수가 계약 등을 통해 의료비를 관리하고 있다. 즉 공공병원과 민영병원, 공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공적 운영원리와 사적 운영원리를 각각 인정하면서도, 양자가 전체적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례를 보면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민영건강보험의 공공성은 그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보완형이라는 점, 따라서 보완적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공·사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전제 요건인 만큼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공·사 간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 오면서, 이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지원 정책을 도입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된 일본의 경우 혼합진료의 제한적인 허용 및 허용범위 확대 등 점차 가중되는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사례를 통해 볼 때,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 재원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한 사례도 있는데, 호주의 고령자 및 고액청구자 기금 운영과 독일의 고령자에 대한 표준보험료율 제도를 대표적으로 참고할 만 하다.

결론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사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미흡은 비단 민영건강보험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진료

비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비급여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급여 의료비 표준가격 제도 도입 등을 앞서 살펴 본 독일 사례를 참조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보험의 보완형에 맞는 바람직한 민영건강보험 역할 정립 방안 마련과 사회안전망으로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이 균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가입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시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중 개인부담이 37%로 OECD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볼 때, 특히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손 가입자의 보장성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프랑스 사례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확대해 온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한 정책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Chapter

4

신성장 동력 발굴

- 생산물배상책임 역할 제고 방안
-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 한국과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과 시사점
- 정신질환자 현황 및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장애인 위험보장 강화 방안
- 보험회사 은행업 겸업 사례와 시사점
-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활용 방안
-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생산물배상책임 역할 제고 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이규성(연구원) | 보고서

46

연구배경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시행 이후 생산물배상책임(이하 ‘PL’) 보험료는 연평균 8.4%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기준으로 1,132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배상책임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옥시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PL보험에 가입한 결과 보험금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전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PL보험 역할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8년 PL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PL법 도입 이후 PL보험시장 분석,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PL보험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PL보험시장은 PL법 시행 전에 비해 다수의 보험회사가 상품을 공급하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전환되었고 손해율도 50%내외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증가로 PL보험은 가입 건수 증가로 건당 보험료는 낮아지고 사고건당 지급보험금은 커진 리스크풀링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에 PL보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100% 보전해주고 있지 못해 손해보전기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행 보험요율 적용체계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 등급요율이기 때문에 PL보험의 리스크관리 촉진기능은 미약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소비자들의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PL보험제도 역할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1,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조자의 안전한 제품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PL보험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금제도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208명 중 67.3%의 소비자는 2002년에 시행된 PL법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는 소비자(32.7%, 395명)도 27.7%(109명)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4%(162명) 소비자들은 최근 5년 동안 자신이나 가족의 신체상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중 9.6%(16명)만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5%(1,081명) 소비자가 PL보험 가입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88.3% 소비자는 의무화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조물의 안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PL법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395명)를 대상으로 징벌적손해배상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85.4%의 소비자(337명)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징벌적손해배상금을 도입하는 경우 제조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PL보험의 역할평가와 소비자 설문조

PL보험은 2002년 도입된 이후 단일종목으로 될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경우 보다 큰 역할이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PL보험상품은 이러한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상품개발과 공급이 미약한 상황이다. 향후 PL보험 수요확대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련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여 리스크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 결과에 기초하여 2018년 개정된 PL법 시행 등에 대비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PL보험의 리스크폴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최근 PL사고와 연관된 사고(리콜비용담보, 제품자체손해담보, 제품결함에 따른 간접손해담보)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개발,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산출 및 적용능력 구축, PL리스크를 포함한 배상책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초과 또는 포괄배상책임보험(excess or umbrella liability insurance)을 공급, 표준하도급계약서나 표준약관에 PL보험가입조항을 신설하여 PL사고를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리스크 서베이 실시를 통해 적정한 보상한도액의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실제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보전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시행될 징벌적 손해배상금제도에 보험회사는 관련특약상품을 개발하여 리스크관리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담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PL보험제도가 기업의 PL리스크관리를 촉진하도록 손해보험회사는 현행 보험료를 산출체계인 등급요율체계에 손해율이나 리스크관리 상황의 양

호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성과요율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PL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업종별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언더라이팅 전문가를 육성하여 PL리스크컨설팅에 기반한 보험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보험회사는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에 보험회사명, 가입한 보험상품명칭과 내용,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명시하여 자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자 등에 대한 소비자보험교육 내용에 PL보험을 추가하여 일반 국민들의 PL법과 PL보험의 인식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결론 PL보험은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등 향후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된 경우에 크게 확대되고 리스크관리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회사는 이러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보험요율제도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촉진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 한국과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과 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보고서

48

연구배경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은 23명의 피해자와 9,368건의 시설물 피해를 야기했는데 국민안전처는 동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110억 원 규모로 추정했다. 지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경주지진으로 인해 크게 바뀌었다. 본고는 지진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지진보험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지진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장기재물보험의 지진담보특약 등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풍수해보험법」에 근거해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고 화재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지진담보특약은 민영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장기보험 지진보험특약의 보험료(계약 건수)는 각각 203억 원(24만 건), 1억 600만 원(2,832건), 11억 5,800만 원(39만 건)이었다. 한국, 미국, 일본, 터키의 지진보험 침투도(보험료/GDP)는 각각 0.0003%, 0.009%, 0.048%, 0.003%로 한국 지진보험의 침투도가 이들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진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보험요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정책성 지진보험인 풍수해보험이 2차사고인 화재 및 폭발 등을 담보하지 않고 풍수해를 주요 담보로 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의 지진보험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지진담보특약은 풍수해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진보험에 대한 수요를 일부 채워왔다고 할 수 있다.

지진보험제도는 크게 임의 화재보험특약 및 지진보험회사의 지진리스크 관리(캘리포니아 주와 일본)와 지진보험 풀을 통한 의무보험 운영(터키)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와 일본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재물보험의 특약 형태로 지진보험을 인수하고 정부가 지진보험리스크의 대부분을 인수·관리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진보험의 경우 보험리스크의 대부분을 민간이 관리하고 있다. 단, 풍수해보험의 경우 2017년 풍수해보험에 대해 국가재보험을 도입하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민영보험회사의 풍수해보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터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지진보험리스크를 직접 관리하는 이유는 지진사고에 의해 민간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헌의 지진사고 기록이나 한국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은 여러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민들이 지진보험을 통해 지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하고 정책성 지진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가입률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지진보험의 문제점은 활성화되지 않은 보험 시장, 미흡한 보험상품, 지진보험에 특화된 정책성 지진보험의 부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고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상품 개선 및 가입률 제고와 중·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 지진보험 도입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이상적인 지진보험은 ‘보험 소비자의 필요’와 ‘보험자의 보험리스크 관리 용이성’을 충족시키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진보험 설계를 위해 보험자들은 현재 지진보험 담보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로 확대하고 지진담보별 보상한도 및 총 보상한도 설정, 지진사고에 대한 정의 명확화, 인수 거부 조건 명시, 합리적인 보험요율 설정, 보험 목적물에 따른 요율 차등화 등을 통해 지진보험 상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 지진보험 제공, 지진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금감면, 재물보험 계약 시 지진보험 가입 권유 의무화, 지진 담보를 부담보로 제공, 단체보험 할인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정부가 지진보험 리스크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보험회사로부터 인수해 재보험 계약이나 지급보증(국가재보험)

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진보험 전문 기관 설립 또는 국가재보험 도입 등을 통해 지진보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정부의 지진보험리스크 관리 방법은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 지진보험 도입 시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미 도입된 타 정책성 자연재해보험(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가 일정 수준의 손해율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국가재보험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정책성 지진보험리스크 운영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 과거 문헌의 지진사고 기록이나 한국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은 여러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민들이 지진보험을 통해 지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하고 정책성 지진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가입률 제고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 현황 및 위험보장 강화 방안

이정택(연구위원)·임태준(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원) | 보고서

50

연구배경

정신질환은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는 환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정신질환 환자 수는 2015년 289만 명으로 2005년 대비 66%가 증가하였다. 정신질환 환자 수 증가와 비례하여 정신질환 진료비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2015년 2조 9천억원 수준이며, 전체 질환 진료비 증가율(6.7%)을 매년 상회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8.3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질환은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자살은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이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점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중 27.2%만이 의사나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 가능성이 높은 경증의 정신질환도 치료받는 경우가 극히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의료비 지출 규모는 낮은 편이며, 민영부문에서도 보험 접근성이 낮으며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미흡한 편이다.

주요내용

정신질환은 공적 보험영역에서 의료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의료급여를 통한 정신질환 환자 수는 2015년 38만 명으로 총 의료급여비의 24.9%를 차지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상해, 장애, 사망 시 치료비를 보장하며,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사적 보험영역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어린이보험, 치매보험 등이 정신질환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16년 1월 이후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일부 정신질환을 포함시켰으나, 치료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 치료 시 급여부분의 법정본인부담금만을 보장하여 보장수준은 극히 낮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규모는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사적 보험영역에서도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장애인의 보험차별 금지에 관한 법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경험통계 부재로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고, 경증 정신질환자도 해외보험사와 비교하여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내세워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질병보험에서도 정신질환은 중증도에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의료비 지출 규모는 낮은 편이며, 민영부문에서도 보험 접근성은 낮으며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미흡한 편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접근성 제고 및 정신질환 보장상품의 공급을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통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정신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 질병이다. 또한, 근로활동 기간에 다빈도로 발생하는 기분장애, 불안장애, 조현병에 대한 보장상품은 공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공적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위험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정신과를 찾는 것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받는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을 활용하면 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보험은 정신질환의 위험 보장을 위해서 중증 정신질환이 어렵다면, 경증 정신질환에 대한 합리적 인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신질환별 인수기준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인수옵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학계·보험업계·정부당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신질환 보장 범위 및 인수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연령에서 발병률이 높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에 대한 보장상품이 미비하므로, 단체보험을 활용하여 근로

자의 정신건강 증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근로생산성 감소 및 노동재해를 대비하여 노동재해종합보험이나 업무재해종합보험을 판매·운용 중에 있다.

정신질환 보장상품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정신질환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판정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다른 신체질환과 비교하여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상품 공급의 확대 및 운용을 위해서는 정신과 상담 이용횟수 제한,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연간 치료비 한도 제한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접근성 제고 및 정신질환 보장상품의 공급을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통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신질환 관련 통계 구축의 미미,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인수기준과 위험률 부재 때문에 정신질환 보장상품을 공급할 수 없었고 정신질환 관련 통계를 구축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료급여 통계와 같은 국민통계를 이용하여 정신질환 관련 건강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 위험보장 강화 방안

오승연(연구위원)·김석영(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보고서

52

연구배경 장애인구는 후천적 질환, 사고 및 인구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인을 세계인구의 15%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8.5%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라 할 수 있다.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생애과정에서 장애를 갖게 될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애는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는 소득과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재활, 주거, 교육, 일상생활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제는 생존 복지에서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 이러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민영보험의 위험보장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듯이, 장애인의 위험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 위험의 특징을 분석하고 민영보험을 통한 장애인 위험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장애인 위험보장 강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우리나라 장애출현율은 2014년 기준 5.59%인데, 장애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고 기준이 엄격하여 세계 장애인구 비중인 1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일상생활장애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장애인구 비중은 1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장애 발생의 89%가 후천적 원인이며, 주로 중·고령기에 발생한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노화의 과정으로 발생하는 노년기 장애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각종 위험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유질환율은 33.7%로 전체인구 17%의 약 두 배에 이르고, 1인당 진료 부담은 장애인이 전체 국민보다 3.9배나 높다. 상해사고위험 측면에서는,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비장애인에 비해 피해 정도가 심각한 편이다. 특히,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은 본인의 상해 사고위험도 높지만, 대인/대물 배상책임 관련 법적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높다.

현재 민영보험은 장애인전용 보험상품과 일반 보험상품을 통해 장애인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상품은 사망, 암, 연금보험이 있으나, 사업비가 낮아 설계사들의 판매유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실손의료비, 상해, 배상책임 위험 등은 보장이 되지 않아 판매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 장점인 감시기능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하여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성장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보험산업이 국민들과 정책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일반 보험상품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심신박약과 심신상실자의 사망담보 보험계약이 무효이며, 사망담보 외에도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체적 장애와 경증 정신장애의 경우도 장애인 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극적 태도, 장애인 사고통계 부재로 상품설계 및 공급이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위험보장이 취약하다.

장애인 보험차별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는데, 그동안 장애인 보험차별 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결과 모집단계에서의 부당한 가입 거절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인수심사는 보험사의 재량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증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에서 생활지원종합공제(가칭)를 통해 위험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정신적 장애인의 민영보험가입이 어려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복지협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생활지원협회(공제회)를 설립하고 의료비, 사망/후유장해, 배상책임, 지진상해 등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발적인 공제

설립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조직적,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차별 여부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보험차별이 의심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차별 여부를 따지기보다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정기적으로 보험차별 현황을 조사하고, 심의 사례들을 장애유형별로 데이터화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투명한 인수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기초 요율을 개발하여 민영보험 상품 개발 및 공급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위험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의 사전적인 위험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영보험회사는 이윤추구의 목적을 갖지만 공적 보장을 보완하여 각종 사고위험을 보장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 보험수요가 커짐에 따라 유병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험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은행업 겸업 사례와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보고서

54

연구배경

최근 들어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소유한 보험회사, 국내 시중은행의 지분을 인수한 보험회사들이 있으며, 대형 보험회사가 은행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는 여신시장의 일종인 중금리 대출시장에 참여한 보험회사도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의 은행 자회사 소유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보험회사와 제조기업은 은행 자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영국의 프루덴셜은 1998년 인터넷 전문은행인 에그뱅크를 설립하였고 일본의 보험회사와 기업들은 2000년 초 인터넷뱅크를 설립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2P 대출, 결제, 송금 등 기술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가 확산되면서 은행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다변화되고 있다. 핀테크 기술에 기반한 비은행회사의 은행업 진출 사례로 미국의 JP Morgan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모바일 금융서비스, 지급결제 분야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였다. 반면 AIG, 메트라이프 등 미국의 대형보험회사들은 여신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여신시장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반면 은행업을 겸업하던 미국의 대형보험회사들은 은행업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와 소비자보호 강

화 등과 이로 인한 비용 상승이 은행 자회사 매각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 시너지 창출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로 구분해서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은행 본연의 업무인 예금·대출업무, 신용카드, 외환업무 비중이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험회사들의 은행업 겸업 전략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형 보험회사 19개 중 3개의 보험회사는 은행 자회사를 청산하였고, 2개 보험회사는 은행 자회사의 사업을 신탁업에 국한시켜 예금·대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변액보험, 변액연금 등에서 축적되는 자산을 보험회사가 운용하고 관련된 투자자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부합하게 소유하고 있던 은행 자회사의 업무를 신탁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은행 자회사의 사업전략 수정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강화된 은행에 대한 자본금 규제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테이트 팜, 네이션와이드, 오마하뮤추얼 등의 은행 자회사들은 아직까지 예금·대출 업무 비중이 큰 반면 AIG, 프루덴셜, 프린시פל 등은 은행 자회사의 업무를 신탁업에 국한

최근 들어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로 구분해서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은행 본연의 업무인 예금·대출업무, 신용카드, 외환업무 비중이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험회사들의 은행업 겸업 전략이 수정되고 있다.

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이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은행업 겸업의 시너지 효과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효과에 불과한다. 왜냐하면 선행연구는 보험사업을 다양하게 영위하는 경우의 수익-위험이 보험회사가 은행업을 겸영하는 경우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은 보험회사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한 가지 사례가 신탁업일 수 있다. 프루덴셜, 프린시פל 등은 자산운용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자산운용 서비스 가운데 투자자문 서비스와 더불어 신탁 서비스를 은행 자회사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예금·대출 업무의 비중이 높은 스테이트 팜, 네이션와이드 이외의 보험회사들이 소유한 은행 자회사들의 비이자 수익은 신탁서비스에서 창출되고 있다.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수수료 체계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소유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은행소유를 반대했던 주요 논리는 시스템리스크, 지급결제시스템 안정, 소유주의 사금고화 등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 전략에 수반되는 신탁업에 국한한 은행소유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업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업으로 정의되지만 미국의 사례는 예금·대출업무를 제한하고 보험회사 연금고객들의 자산관리에 필요한 신탁업에 국한된 은행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모회사인 보험회사 연금 고객들에 국한한 계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높여주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보험회사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인 투자자문서비스, 신탁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겸영업무로 허용되고 있는 투자자문 및 일임서비스, 신탁업 등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변액보험 활성화가 선행될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활용 방안

조용운(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56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건강한 음식 찾기, 조기축구회·요가클럽 등 가입이 대중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개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건강생활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듯하다.

공공부문은 이러한 개인 중심의 건강생활양식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은 ‘건강결정요인에 근거한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및 예방 중심의 질환관리’를 과제로 하고 있다. 보건소가 과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도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이상 소견자(대사증후군 보유자, 일부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서비스 다양성의 한계, 1회성에 그친 서비스, 지역적 접근성의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사후관리 실시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민간부문 주도 건강생활양식 확산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민간 비의료기관이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인 듯하다. 보고는 공·사가 협력하여 건강생활서비스 공급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고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서비스 단계별로 의료행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건강생활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군을 제외한 건강군과 주의군, 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의 변화(운동, 금연, 식생활관리, 금주 혹은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를 지원하는 상담·교육, 지도,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4개 단계를 포함한다. 첫 번째 단계는 건강검진 자료 및 수집 자료 등을 이용한 건강위험도 측정 및 건강수준 계층화 단계이다. 생활습관을 진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의군 및 위험군을 대상으로 초회 면담을 수행하면서 문제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단계이다. 생활습관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수립된 지원계획 등에 기초하여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문제의 생활습관을 치료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건강생활서비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제도를 일반건강검진 2차 검진에 대
사증후군을 포함하도록 확대·개편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의
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실천지원서비스 부분을 민간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생활습관 치료를 통해서 건강위험도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법적 검토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건강생활서비스 제도 및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고 공·사가 협력하여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양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제도를 일반건강검진 2차 검진에 대사증후군을 포함하도록 확대·개편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실천지원서비스 부분을 민간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험회사는 실천지원서비스를 보험 상품 기초서류에 반영하거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도 제안하였다. 보험회사는 실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대상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이러한 모형은 국민건강보험에게 바람직한 모형일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및 요양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 의료민영화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 사후관리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7개 지역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로 제한된 지역에서 제공되어 왔다. 그리고 1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민간부문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사후관리를 민간부문이 부담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사건강보험자의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진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안은 낮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공급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비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보험회사 등 비의료기관은 요양기관의 검진 결과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정보 수집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셋째, 일반건강검진 2차 검진 등 요양기관 관련 업무가 증가하여 많은 요양기관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공적 건강보험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지만 보험회사 등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참여 증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김석영(연구위원)·김세영(스위스리 부장)·이선주(연구원) | 보고서

58

연구배경

본 보고서는 과거에 판매된 주요 한 상품들에 대해서 단순히 상품 약관과 설명서에서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상품의 개발 배경, 회사들의 상품 전략 그리고 상품의 그 이후 진화과정 등을 조사하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의 IoT 및 Big Data 기술 발달에 기인한 새로운 국내외 상품 개발 동향을 조사하여 향후 상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상품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도 및 규제 변화, 경제 환경 변화, 그리고 보험관련 주요지표 변화를 살펴본 후 1960년대 이전, 기반구축기의 상품, 근대화시기의 상품, 시장개방 국제화 시기의 상품, 그리고 산업선진화와 구조조정기의 상품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서 판매된 상품들중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종신보험, CI보험, 투자보험, 실손의료보험, 간편심사보험, 그리고 어린이보험을 살펴보았다.

종신보험은 사망담보 판매화법의 개발을 통하여 2000년대 초반이후 크게 활성화되었다. 종신보험은 이후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투자연계형 종신보험, 선지급 종신보험, 저해지/무해지 종신보험으로 진화하였다.

종신보험의 진화



CI보험은 2000년대 초 웰빙라이프 바람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생명보험회사들이 새로운 건강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느낄 때 개발되었다. 국내소비자 니즈 그리고 의료가기술 환경의 발전에 따라 보장질병의 개수가 확대되었고, 여성 CI, 다중지급 CI, GI(General Illness), 통합보험 등으로 진화하였다.

투자보험은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주식투자와 간접투자방식의 펀드투자 열풍이 불 때 변액보험으로 개발되었다. 변액보험은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순차적으로 개발되었고 이후 CI보험에 변액기능을 추가한 변액 CI보험, 어린이보험에 변액기능을 추가한 어린

앞으로 보험상품의 진화는 어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특정 상품의 출현보다는 보험상품의 형태와 서비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변액보험등이 출시되었다. 한편으로 변액보험은 보증옵션의 강화방향으로 진화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보존해주는 실손상품에 관심이 증가하였다.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던 상품을 생명보험회사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실손의료보험은 국가건강보험의 재정·소비자 물가 등 국가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진화하였다.

간편심사보험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자 및 특정질환의 유병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발되었다. 라이나생명의 실버암보험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연령 확대 및 담보의 확대로 진화하였다.

어린이보험은 1950년대 교육보험으로 출발하였으며 1980년대까지 저축보험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보장성상품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0년에 태아가입특약 도입, CI보험 도입, 보장기간 확대, 변액보험 도입 등으로 진화하였다.

결론 앞으로 보험상품의 진화는 어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특정 상품의 출현보다는 보험상품의 형태와 서비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건강나이에 연

동한 보장성 상품, Connected 보험상품, Order Made 보험상품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으로 애완동물의 보편화로 애완동물보험 시장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며, Iot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리스크라는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여 손해보험 영역에 새로운 보험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백영화(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60

연구배경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관련 법규나 판례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내용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상품과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해당한다. 감독당국 실무상으로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통상적 소모 및 마모, 제품의 하자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아닌 단순한 부가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고,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 다만 관련 법규상으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당국(FCA)의 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의

하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부담하는 단순 보증서비스의 경우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서비스, 제조사·판매사의 단순 보증서비스보다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도 금융청(金融庁)의 감독지침에서,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의 보험업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수리·교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직접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수리·교환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본 금융청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에 대하여 수리·교환을 해주는 경우에도 보험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마련하였다. 이에 의하면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은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보험

현재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보험이 아닌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넓게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법규의 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일정 정도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서비스 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영업행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서비스계약 모델법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서비스계약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담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마모로 인한 경우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되, 주별 입법례에 따라서는 이에 더하여 해당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의 경우에도 서비스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도 많다.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실무에서 보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외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예컨대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인정하거나, 담보 범위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보증연장 서비스의 운영 또는 그 제공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단기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보증연장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해줄 것 인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아울러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수준의 규제를 할 것인지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거래 구조, 가액 및 시장 규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Chapter

5

경영효율화 지원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 방안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산출방법 개선 방안
-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 방안

송윤아(연구위원)·이소영(연구원) | 보고서

64

연구배경 본 보고서는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 및 추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동기간 자동차보험의 급격한 증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 인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2016년 기준 4,63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8%를 차지한다.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는 외래위주로, 외래진료비의 경우 2015년부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였다. 한방진료 중에서도 한방비급여 진료비가 연평균 34.2%씩, 한방급여 진료비(26.3%)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한방진료비의 급증은 한방 이용 환자 수(연평균 24%)뿐만 아니라 1인당 한방비급여 진료비(연평균 8%)의 증가에 기인한다. 2014~2016년 기간 동안 양방의료기관의 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연평균 24%씩 증가하여 자동차보험 전체 환자 수 대비 한방의료기관 이용 환자 수의 비율이 2014년 18.6%에서 2016년 26.3%로 증가했다. 또한 양방급여, 양방비급여, 한방급여의 1인당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2.2%, -5.4%, 2.5% 증가한 반면, 1인당 한방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8% 증가했다. 급여

항목은 양·한방 상관없이 금액 및 상대가치점수와 인정기준 및 심사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급여항목에 지급한 1인당 진료비는 큰 변동이 없지만 한방비급여 항목은 금액이나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방비급여의 1인당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보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방의료는 정보비대칭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또한 한방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결정체계가 미흡하여 적정진료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비대칭과 공급자 유인수요가 강하게 존재하는 자동차보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진료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을 마련·제공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 감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필요·타당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양방과 한방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환자의 다빈도 질병을 대상으로 의과와 한방 각각의 치료 효과, 의과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였을 때의 효과, 양·한방의료 간 대체·보완관계 등을 파악하여 양·한방 중복이용

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비대칭과 공급자 유인수요가 강하게 존재하는 자동차보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진료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을 마련·제공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 감독해야 한다.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의 증상 및 상병의 정도에 따른 처방기준과 중복처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술횟수, 시술시간, 시술자, 치료실 요건 등 한방물리요법의 인정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결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결정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평가원과 심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의 성격상 자보수가기준에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진료수가기준의 추상성을 적시에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에 계약의 주요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하여 심사평가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필요·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이 계약의 주요 성분·원산지·효능 등을 확인함으로써 환자는 안심하고 계약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이 치료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처방목적에 대한 심사가 가능해진다. 넷째,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도 현지조사제도 도입을 통한 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요양기관

의 자발적인 부정행위 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결론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는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조속한 원상회복을 돕는 한편,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한방의료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보험 내 한방의료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의료 이용 환자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산출방법 개선 방안

조재린(연구위원)·정성희(연구위원) | 보고서

66

연구배경

최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갱신보험료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갱신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물가의 상승이 물가상승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소비자의 의료보장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위험은 보험회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한다.

먼저 신기술 개발이나 의료제도 변화 등 상품개발 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안전할증을 적용하거나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갱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안전할증이란 수치상등으로 계산한 보험료에 위험에 해당하는 정도의 보험

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하며, 보험료 갱신은 보험계약 시 향후 보험료를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역선택에 대해서는 주로 보험료 세분화 또는 보험료 차등제를 사용한다. 여기서 보험료 세분화는 계약시점 또는 보험료 갱신시점에서 보험계약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계약 또는 갱신 후 보험계약자 개별의 보험사고 및 청구 통계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차등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공제(deductible) 및 한도(limit) 설정 등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비용 분담은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행위에 있어 신중하기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3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보험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향후 갱신보험료가 가입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이다. 현재의 연령별 의료비의 차이와 높은 의료물가 상승률 그리고 매우 긴 보장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갱신보험료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갱신보험료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갱신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물가의 상승이 물가상승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평준보험료 도입, 보험료 세분화, 연간공제금의 도입, 보험료 차등제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다.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에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않으며 갱신 및 재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 향후 건강한 가입자는 탈퇴하고 위험률이 높은 가입자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포괄적 보장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도 거의 없다. 또한 갱신 및 재가입을 거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히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제제할 상품 차원의 방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보완형 민영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보험과 지나치게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의 공공성은 공공부문과 연계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민영의료보험이 대체형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의 수단인 경우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나, 사치재로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보충적 역할에 한정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성 규제보다는 다양한 상품의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중요시 하게 된다.

결론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준보험료 도입, 보험료 세분화, 연간공제금의 도입, 보험료 차등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향후 갱신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노후 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리 추가 납입하거나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형태적으로 공공성이 약하고 역선택 가능성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은 EU 지침서의 권고대로 상품구조, 가격, 가입심사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급여력 등 사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험료를 세분화하여 역선택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셋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연간공제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갱신 시 역선택 발생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지홍민(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보고서

68

연구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시장은 과거에 비하여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부족한 공적연금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금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매우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구 중 하나는 상품의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을 측정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이나 연금의 유보가격은 계약의 구매자가 지급할 의향이 있는 최대 보험료를 의미한다. 유보가격에는 자신이 계약으로부터 얻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와 상이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고객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가격을 측정할 수 있으면 실제 가격인 납입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보험이나 연금의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보가격에 대한 결과는 보험사의 가격정책, 신상품 개발, 교육 및 판매 채널 전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내용 전통적인 기대효용이론은 모든 가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매우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므로 실제 사람들의 선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효용이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행동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누적전망이론(Cumulative 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생명보험과 연금상품들의 유보가격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누적전망이론은 기존의 전망이론을 개선한 이론이며 가치함수, 기준점, 결정가중치 등 하부요소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측정모형에는 의사결정자의 심리적인 요소가 반영되므로 이 이론은 유보가격 등 고객의 만족도가 반영되는 연구를 위해 매우 적합한 방법론을 제시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가격을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매력적인 보험계약은 유보가격이 1을 상회하게 된다.

먼저 종신생명보험의 유보가격을 측정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종신보험의 유보가격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30~40대에 대한 매력도가 50세 이후의 잠재 고객에 대한 매력도보다 크다. 둘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성의 유보가격이 남성의 유보가격을 상회한다. 셋째, 이자율은 유보가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3~10%의 구간에서는 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유보가격도 상승한다. 이자율이 4% 이상이면 일시납 종신보험의 유보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의 핵심이론 중 하나인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생명보험과 연금 상품들의 유보가격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생명보험 및 종신연금의 가격결정, 신상품 개발, 교육 및 마케팅 전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은 1을 상회한다. 넷째, 종신보험보다 10년 및 20년 만기의 정기 생명보험의 유보가격이 더 크게 나타난다. 아울러 생사혼합보험은 다양한 만기에서 모두 1을 상회한다. 다섯째, 일시납보다는 보험료의 납입 횟수를 증가시킬 때 유보가격도 상승한다. 여섯째, 손실회피계수와 유보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손실회피계수는 유보가격의 크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부가보험료가 존재하면 생명보험의 유보가격은 하락한다. 다양한 종신보험 상품 중 가장 유보가격이 높은 20년 만기 정기보험의 유보가격이 1이 되는 손익분기 부가보험료율은 이자율 3%에서 순보험료율의 20.4%이다.

아울러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을 측정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금의 지급보증기간이 길수록 유보가격도 증가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유보가격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성의 유보가격이 항상 남성의 유보가격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셋째, 10년 또는 20년 지급보증 종신연금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유보가격이 증가한다. 지급보증 없는 즉시연금의 경우 이자율 7%까지는 유보가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유보가격이 증가한다. 넷째, 세제혜택을 고려하면 20년 지급보증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은 1을 상회할 수 있다. 이자율 3%에서 이러한 연금의 유보가격이 1이 되는 순보험료율은 13.3%이다. 다섯

째, 연금의 유보가격도 손실회피계수의 값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보험 및 연금상품의 심리적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험사가 고객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면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유보가격이 가장 높은 최적의 계약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연구 결과로부터 유보가격을 향상시키는 보험 및 연금계약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보험사의 가격결정, 신상품 개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인의 손실회피성향인 것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의 행동경제학 및 심리학 연구들은 교육이 개인의 손실회피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리스크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고객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마케팅 방법을 이용하여 손실회피를 감소시켜 보험이나 연금의 유보가격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보가격의 제고는 궁극적으로 상품의 매출증대로 연계될 것이므로 보험사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공익목적의 수행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Chapter 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보험금 청구권과 소멸시효
- 해외 주요국의 지급여력제도 현황
- 국내 신탁업 현황 분석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과제 도출
-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
-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
- 지재권 중장기 보험 운영 타당성 연구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정호열(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보고서

72

연구배경

보험시장의 상호협정과 관련한 현행 법규는 그 대상이 너무나 막연하여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인가받은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행한 손해보험업계의 긴급서비스 출동 중지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 면제를 부인하고 이를 부당공동행위로서 금지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 같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운용과 관련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는 현행 보험시장 관련 상호협정과 배치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앞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하다.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 OECD 가입과 더불어 각종 경쟁제한적 법령과 관행의 폐지를 권고 받았고, 이 때 보험시장의 많은 상호협정이 폐지되었다. 이후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보험시장 관련 상호협정은 계속 정비되어 왔다. 그럼에도 주요 법제는 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였다. 2017년 1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계는 2건의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손해보험업계는 12건의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상호협정과 관련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 조항은 일본 제도를 승계한 조항으로서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규정이 조문의 위치만 바꾼 채 낙후된 내용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이에 반해 일본 보험업법상의 상호협정 관련 제도는 그 사이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고,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관련 주요국의 법제(유럽연합, 일본, 미국)와 논의도 그 사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등의 법제는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25조가 ‘보험회사의 업무’로 만연하게 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뚜렷한 판례법의 형성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위험의 집적, 분산과 전가(pooling, spreading and transfer of risks)라고 하는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협정이나 합의에 국한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해왔다.

미국에서는 1946년 맥캐런-퍼거슨법 소정의 특례 자체가 적용면제를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즉 당해 합의가 위험의 집적과 분산이라는 특성을 가져야 하고, 주의 보험감독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당해 행위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관련되고, 협정당사자가 보험권역 내의 법 주체여야 한다.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미국이 보험업에 대한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비하여 그 사정이

보험산업의 법적 환경을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정비하여 국내 보험시장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사뭇 다르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개정 보험업법 제101조 이하에 따른 적용제외는 당해 협정 내지 합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것일 때에는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조 소정의 적용면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의 집행제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을 지니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 적용제외 규칙 또한 보험 사고나 지급보험금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한 협정이나 공동보험에 관한 합의를 적용제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적용제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협정이나 합의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괄적용제외는 보험업계를 위해 사실상 실익이 없었고, 바로 여기에서 2010년 규칙이 금년 3월 31일부로 실효되는 배경이 된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각국 보험시장은 자국 경쟁법과 보험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독일 보험감독법이나 경쟁제한금지법에는 보험분야에 대한 카르텔법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국내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국내외 경쟁법 커뮤니티는 유럽연합처럼 상호협정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을 선호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상호협정이 운영되고 있는 보험시장의 실정에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시장안정을 교란하고 거래비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

결론 인가받은 상호협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동조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 등 이미 적잖은 불확실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법적 환경을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정비하는 것은 내국 보험시장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정봉은(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보고서

74

연구배경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장차 대형보험회사의 경영파탄이나 다수 보험회사의 도산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금력 등에서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계약이전 및 계약포괄이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은 계약인수회사 물색의 곤란, 대규모 자금지원에 따른 현존하는 기존보험회사의 피해 및 기존 보험계약자들의 재산권 침해 제기 우려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회생처리방법에 대한 상세한 연구 및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법제와 보험시장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 처리 제도와 발전과정에 대한 상세한 연구 및 정리가 필요하다.

주요내용

일본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도산처리 시스템 설계에 도산회사에 대한 계약자보호와 건전회사의 계약자보호를 양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로, ‘도산처리의 최소비용 원칙’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유지를 통한 위험보장의 지속’이라는 대원칙을 관철하여 청산·파산을 배

제하고 구제회사를 찾아 계약이전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로, 일본의 도산처리 시스템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보험금의 직접지급(Payoff)을 인정하지 않고 도산회사나 구제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직접 또는 자회사)만 인정한다.

넷째로, 일본의 도산처리 시스템은 보상보험금에는 상한을 두지 않으나 보증비용은 강제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채권액의 일정비율(80~90%)로 제한하고 있다. 즉 정률보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영국의 제도에서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일본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 각출하는 민간보험회사의 각출금은 최대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어 최대목표부담금 이상의 각출은 하지 않으며 자금이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으로 공적자금을 출현하기로 하였다. 이 정부지원자금의 성격은 사후에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순수한 정부재정자금의 성격이다.

여섯째로, 일반채권자의 권리도 변경할 수 있는 갱생절차에 의한 처리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일반채권자 특히 후순위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한 권리변경을 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자 채권은 삭감하고 일반채권자는 보호한다는 비난과 함께 원활한 도산처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갱생특례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비롯한 모든 채권을 신속하게 처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김대환(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보고서

76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불과 12년 후인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을 실현하여 의료접근성을 단기간에 개선시켰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도 높은 건강성장을 달성해왔다. 하지만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의료비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액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해 왔지만 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과거 10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하려는 과거의 접근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내용 의료비의 증가원인은 소득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인구의 증가 등 다양하다. 하지만 장기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을 고려할 때 분명 다른 핵심적인 원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200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겠다고 단언했던 과거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전체 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은 다양한 지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

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외래방문 및 입원일수가 훨씬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가의료장비와 병상 수 등이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비급여와 관련이 있다. 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 정부가 급여의료에 한해서만 양(진료행위)과 가격(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해 온 반면 비급여의료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온전히 시장에 위임하였다. 결국 의료기관은 비급여의 양과 가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왔으며,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유발되었다.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의료기관별로 진료비 차이가 크고, 급여의료를 비급여 의료로 부당징수하는 불법행위까지 만연하게 되었다. 심지어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들까지 비급여 영역에 포함되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취약해졌다.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적인 제도인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비급여 의료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무한경쟁하고 있으며, 더 많은 환자유치를 위해 고가장비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군비경쟁도 서슴치 않는다. 단순히 동네 의원에서 상담 또는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동일 질환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중복 검사를 시도한다. 의료전달 체계가 엉망이다보니 비효율성을 넘어 낭비적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하면 보험료 인상이나 수가체계 개선 등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비까지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후적 치료에만 집중한 나머지 건강하지 않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고령자의 의료쇼핑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사기 및 범죄도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에 한몫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비급여를 악용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단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주사제의 반복 사용으로 환자의 집단 감염을 유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은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경제성장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결국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인하는 것만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이나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래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첫째, 성형과 같은 순수한 선택진료만 제외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모든 의료행위와 진료비를 정부가 심사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험사기 및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사후적 치료가 아닌 사전적 예방을 통해 건강한 고령화를 유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 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의료기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정부가 설계한 의료정책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과거의 정책을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험금 청구권과 소멸시효

권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보고서](#)

78

연구배경

보험금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들의 숫자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분쟁들은 보험 제도의 특수성이 가미되어 복잡한 양상을 띤다. 최근에는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자살자의 유족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관심을 끌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안들도 여럿 제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비례하여 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소멸시효는 민법학,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법학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양자의 논의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면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판례와 법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에 관한 우리 법 체계의 통일성과 논리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하였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선 소멸시효 일반론을 소개하였다. 소멸시효 제도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멸시효 제도의 의의, 역사, 정당화 근거, 기산점, 기간, 중단과 정지, 신의칙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판례와 학설은 일반적으로 이를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의 틀에서 설명하여 왔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틀을 완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입법 추세는 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주관적 체계의 요소를 가미하면서, ② 소멸시효 기간은 단축하고, ③ 소멸시효 기간 체계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으로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쟁점이 될 만한 판례들은 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들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보험금청구권과 신의칙에 관한 판례들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예외적인 판례들이 있으나, 이 판례들은 모두 수사기관이 애당초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파악하였다가 나중에 확정판결을 통해 정정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자 개인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 중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이나 보험금 지급 유예 시 시효 정지는 입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안이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은 민법 소멸시효 제도 개정과 연계하여 논의해야 하는 방안이다.

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현행 소멸시효 제도의 해석론으로서는 타당한 결론이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호 문제는 입법론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였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모두 6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법안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 중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이나 보험금 지급 유예 시 시효 정지는 입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안이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관적 체계 선택은 민법 소멸시효 제도 개정과 연계하여 논의해야 하는 방안이다.

결론 본 연구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관련 입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의 지급여력제도 현황

이기형(선임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김세중(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김진익(수석담당역)·김혜란(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김미현(연구조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해외 주요국의 지급여력제도는 IAIS가 권고하고 있는 부채시가 평가에 기반한 총재무제표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여 EU식 전환, 미국식(RBC 방식) 전환을 겪었으며, 향후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지급여력제도(EU Solvency II 및 IAIS ICS 방식)로 전환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지급여력제도를 현 미국식 RBC 방식에서 EU Solvency II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상품의 영향으로 많은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2016년에 시행된 EU의 Solvency II 도입과정 및 절차를 조사하고, 지급여력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에 대해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해외 주요국의 현행 지급여력제도에 대해 평가방식을 비교해 보면, 미국·일본·대만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EU·캐나다는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표준책임준비금제도·부채적정성평가, 자산이나 부채가치의 변동성에 대비한 준비금항목 등의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 향후에는 조사 대상 국가 모두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로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가평가 방식에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한다. 가용자본은 기본적으로 자산가치와 부채가치의 차이인 순자산가치로 정의할 수 있는데, 미국·일본·대만 등은 원가평가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회계상 자본을 바탕으로 감독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한다. 한편, EU Solvency II는 위험마진(risk margin)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캐나다 LICAT는 역편차준비금(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을 가용자본에 추가한다. 또한 EU와 캐나다는 가용자본을 자본의 질에 따라 계층화하고, 가용자본의 계층별로 가용자본에 대한 최저 유지기준을 설정한다.

해외 주요국의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비교하면, EU Solvency II 표준모형은 위험별 요구자본 산출 시 주로 시나리오 방식을 사용하지만, 그 외 국가는 기본적으로 계수 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계수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특정 위험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비교하면, EU Solvency II는 요구자본 기준을 지급여력요구자본(SCR)과 최소요구자본(MCR)으로 이원화하고 규제를 차별화하고 있지만, 미국·일본·대만은 RBC 비율이 200%(우리나라 기준 100%에 해당) 이상이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정상인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캐나다 MCCR은 2가지 지급여력비율(전체비율, Tier 1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지급여력제도 개선에 있어 주요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IAS 회원국들은 IAS가 권고하고 있는 총 재무제표 방식으로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시장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선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지급여력제도 개선 시 정책 목표 달성 및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한다.

슈를 정리하면, 크게 ① 부채 및 요구자본 평가, ②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 완화, ③ 시가평가로 인한 변동성 완화, ④ 제도 도입 절차 및 합의 과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U는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기존의 방식(원가평가)과 완전히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이행하지만, 미국은 원가평가를 기반으로 시가법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이행을 추진 중이다. 해외 주요국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일시적·전면적 도입보다는 적용대상 한정, 경과조치 등을 포함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며, 변동성 완화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다.

결론

해외 주요국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경과를 살펴보면, 기존 제도·국제적 정합성·시장환경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가 간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세부 개선안은 모두 다르다. 제도 개선으로 달성하려는 정책 목적, 시가(경제적 가치, 공정가치 등)평가 개념 도입 등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국가 간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각 국가마다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시장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선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들은 지급여력제도 개선 시 정책 목표 달성 및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시장 충격 완화 및 ②

과도한 변동성 완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한편 각국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 개선 시 계획 - 실행 - 평가 - 개선(Plan - Do - Check - Action)이라는 로드맵을 설정하여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한다. 이는 지급여력제도 변화가 보험시장 및 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강화, 보험시장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제도(특히, 정량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상품, 자산운용, 부실금융기관 정비 관련 규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제도 개선 로드맵이 필요하다.

국내 신탁업 현황 분석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과제 도출

임준(연구위원)·백영화(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저성장·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전문 자산관리업자를 통한 초생애 또는 세대 간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신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신탁업의 경우 본질적인 기능인 자산 관리 서비스로서의 역할은 미미하고, 단순히 투자 상품 소개 및 판매 역할에 그치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포섭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내 신탁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본 용역과제가 발주되었다.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보험연구원은 생명보험신탁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였다.

주요내용

생명보험신탁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으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부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과 수탁자에 의한 신탁 재산의 관리·처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결합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생명보험신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탁가능재산 가운데 하나인 ‘금전

채권’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과거 법무부에서 보험금청구권은 독립된 재산이 아니므로 신탁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제외하고는 여타 보험계약은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주요국에서는 수탁가능재산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의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탁가능재산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재산권 일반’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명보험신탁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생명보험신탁은 크게 해지가능 생명보험신탁과 해지불가 생명보험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지가능 생명보험신탁은 위탁자가 생명보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상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해지불가 생명보험신탁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제혜택 때문이다. 우선 해지불가 생명보험신탁의 사망보험금은 유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수탁자에게 생명보험증권을 이전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위탁자가

생명보험신탁의 국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신탁의 투자 권유와 보험의 모집을 어떻게 구별하여 규율할지, 둘째, 수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에 제한을 둘 것인지, 셋째,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어떤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총유산가액에 포함된다. 또한 일정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 연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만큼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신탁회사와 제휴를 맺고 신탁계약 대리점이 되어 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신탁에 대해 별도의 세제혜택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생명보험신탁상품 가운데 하나가 Discounted Gift Trusts이다. 고객이 맡긴 일시납 재원은 Discounted Portion과 Invested Portion으로 나뉘어진다. Discounted Portion은 위탁자 자신을 위한 재원으로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한편, Invested Portion은 위탁자의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상속된다.

Discounted Gift Trusts의 과세처리와 관련하여 우선 Discounted Portion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신탁재원 원본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나 Discounted Portion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Invested Portion은 수동신탁이나 재량신탁이냐에 따라 과세처리가 달라진다. 수동신탁의 경우에는 잠재적 면세 이전에 해당되지만 재량신탁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생전증여에 해당되어 증여 즉시 2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신탁의 국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검토과제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경우 신탁의 투자권유와 보험의 모집을 어떻게 구별하여 규율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수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투자형 생명보험 관련 신탁의 부실화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셋째, 생명보험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탁자의 권리 보유 여부에 따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미국식과 수탁자의 권리 보유 여부에 따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영국식 등을 참고해볼 수 있다.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성희(연구위원)·백영화(연구위원)·이정택(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김미화(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헬스케어서비스는 발전된 기술의 접목과 다양한 공급자의 생태계 진입으로 산업 간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개인의 서비스(공급자) 접점이 다변화되면서 맞춤형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수집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각각 기술이 통합적 시각에서 접목되고,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비즈니스 수익구조 간 공급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해 일상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스스로 라이프 디자인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해외 보험회사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산업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세계 가장 높은 초고령국가이면서 최근 정부 주도의 헬스케어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일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본 정부의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현황과 이러한 배경하에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최근 헬스케어서비스의 트렌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스마트화 확상으로 ‘대체 의료기기 등장’, ‘개인 스스로 시공간 초월한 건강관리’, ‘공급자, 서비스, 정보 간 융

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만성질환 발병률 감소, 의료비 절감, 소득 개선 등 공공적 편익이 매우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에 대한 당뇨 예방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10년 이후부터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며, 30년 후엔 비용대비 편익이 2.41배로 추정되었다.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관리는 당뇨병 이외에도 고혈압, 고지혈, 심장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병률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당뇨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의 경제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 논문과 경험 사례를 통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① 의료비 절감, ② 종업원 생산성 향상, ③ 종업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 사례가 발표되었다.

일본 정부는 의료산업(건강수명연장) 분야의 시장 창출 및 산업육성을 위해 민간영역 및 공급·수요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신사업활동 가이드라인제정을 들 수 있다.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사업자가 기존 법령에서 상정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소관 장관을 통해 규제소관 장관에게 해당 사업계획의 규제 적용 유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사전 예방과 관리로 전환되고,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과 산업 간 접목으로 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저성장시대 블루오션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증진과 신성장 동력을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규제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 제도로써, 신규 사업자의 규제 불투명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은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관련하여 건강수명연장산업 분야에서의 신규사업 활동 중 사업자의 요구가 높은 사업을 유형화하여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 보험회사는 정부기관, 학계, IT업체, 통신업체, 헬스케어서비스 전문회사 등과 활발한 업무 제휴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일생명의 경우 경제산업성(정부기관), 교토대(학계), 일본 IBM(IT업체), NTT(통신업체) 등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환경을 진단해 보면 ‘의료행위’의 의미는 판례 및 유권해석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데,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건강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국내 법률 상호 간 상충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없애거나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사업자가 헬

스케어서비스 사업을 도입 및 확대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헬스케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의 조화하에서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강성호(연구위원)·최장훈(연구위원)·김미희(연구위원) | 연구용역

86

연구배경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금융거래 소외계층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계 재무건강(Financial Health)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재무건강 관련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추진된 바 있으나 그 개념이나 추진 방향이 명확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Wellness, Financial Fitness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 추진해 왔지만, 구체적인 개념이 확립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무건강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의 재무건강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재무건강의 개념은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산이나 재무적 어려움의 부재 상태인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사용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건강(financial Health)을 가계 및 개인재무(Household / Personal Finance, Consumer Finance)에 건강(Health)의 개념을 적용하여 정의하였다. 즉, 재무건강을 “가계가 일상

적인 지출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재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재무적 성장이 가능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재무건강의 요소로 ‘기초체력’, ‘면역력’, ‘건강지속력’의 3가지의 건강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기초체력은 일상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면역력은 재무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건강지속력은 저축과 투자를 통하여 재무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재무건강 지표의 구성요소는 기초체력, 면역력, 건강지속력의 3가지이며, 지표의 종류는 객관적 지표, 주관적 인식, 재무행동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실질적인 재무건강 측정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이라는 두 가지의 지표로 측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재무행동 지표는 보조 지표로서, 객관적 재무건강과 주관적 재무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계획과 실천을 통해 재무행동을 향상시킴으로써 재무건강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표이다. 객관적 혹은 주관적 인식 지표를 통해 판정되는 가계의 재무건강에 대한 판정은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기초체력, 면역력, 건강지속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우량가계’, 기초체력, 면역력만 충족하거나 기초체력, 건강지속력을 충족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무건강은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는 이면에 기초체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허약 및 위급가계 비중 또한 적지 않아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 재무건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무건강에 대한 인식제고, 재무건강 제고를 위한 관련 정보 및 지식제공의 필요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제고방향을 제언하였다.

는 가계는 ‘양호가계’, 기초체력만 있는 가계는 ‘기초충족가계’, 기초체력은 없는데 면역력 혹은 건강지속력만 있는 가계는 ‘허약가계’,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부족한 가계는 ‘위급가계’로 설정하였다.

한편, 이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가계는 미래의 가계소득, 금융자산 가치 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여 전반적으로 재무상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무건강의 3요소(기초체력, 면역력, 건강지속력)에 대한 중요도로 ‘기초 체력’ 43.09%, ‘건강지속력’ 29.02%, ‘면역력’ 27.89%의 비율로 나타나 기초체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가계의 전체적인 재무건강에 상태에 대해 65.8% (대체로 건강 58.4%, 매우 건강 7.4%)가 건강한 편으로 응답하였다.

가계의 재무건강에 대한 판정을 객관적 지표, 주관적 인식 지표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우량가계 17.1%, 양호가계 26.6%, 기초충족 14.8%, 허약가계 25.5%, 위급가계 16.0%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인식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우량가계 48.3%, 양호가계 10.3%, 기초충족 가계 5.2%, 허약가계 20.0%, 위급가계 16.1%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건강 지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기초체력 결과를 살펴보면, 객관적 지표상 41.5%(허약 25.5%, 위급 16.0%)가, 주관적 인식 지표상 36.1%(허약 20%, 위급 16.1%)가 기초체력 미충족 가계(허약 및 위급가계)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무건강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기초체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허약 및 위급가계 비중 또한 적지 않아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무건강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건강에 대한 인식제고, 재무건강 제고를 위한 관련 정보 및 지식제공,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제고방향을 제언하였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

임준(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금융업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 규제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 간 과도한 경쟁은 고위험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부실 및 금융시장 불안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진입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됨에 따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본 용역과제가 발주되었다.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권 관련 연구를 담당하였다.

주요내용

연구내용은 크게 ① 보험시장 현황분석, ② 인가단위 해외사례 분석, ③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관련 해외사례 분석의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연구주제인 보험산업 시장분석의 경우 시장구조(structure)-시장행위(conduct)-시장성과(performance)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3개 지표는 다시 세부지표들로 구성되는데, 시장구조 지표에는 보험회사 수 및 유형,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진입 및 퇴출기업 수 등이 포함된다. 시장행위 지표는 공급자 행위와 수요자

대응능력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급자 행위는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수요자 대응능력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가격비교 능력이나 상품선택 능력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성과 지표에는 자본수익률, 자산수익률 등의 다양한 수익성 지표가 포함된다. 분석 결과,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모두 시장집중도와 수익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 지표 측면에서는 경쟁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상품가격 경쟁보다는 수수료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보험회사로, 시장행위 지표의 공급자 행위와 시장구조 지표의 보험회사 유형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주제인 인가단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종목별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국가운데에서는 일본만 보험업으로 면허를 부여하는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두 가지 종류의 면허가 존재한다.

한편, 최저자본금 요건과 관련해서는 보험종목별로 면허를 부여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대다수 국가에서 보험종목별로 세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의 경우에 법정 최저자본금 규모가 1개씩만 규정되어 있다. 실제 허가

지재권 중장기 보험 운영 타당성 연구

이기형(선임연구위원)·임태준(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 | 연구용역

90

연구배경

2010년 도입된 지적재산권소송비용보험(이하 ‘지재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기초로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하여 왔다. 지재권보험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활용할 의향이 있음에도 정부의 예산제약으로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제약으로 보편적인 기업들에게 전부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술로 성장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재권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생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지재권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상품의 수요에서 2년 이상 중장기보험의 도입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2017년 9월 2년 보험기간의 보험상품이 설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재권보험의 중장기보험 운영에 대한 타당성과 운영방안을 연구하였다.

주요내용

지재권보험의 중장기보험 운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보험법규 측면의 제약은 없으나 보험회사의 상품 운영과 공급측면, 정책적 효과 달성 측면에 문제점이 있어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험회사의 공급측면에서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계약자들이 가입하여 일정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품

공급자와 수요자의 접점이 일치되어야 하나 중장기 지재권보험은 공급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업법 등에서 운용상에 규제는 없으나 상품 운영측면에서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어 정확한 위험측정과 적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려워 보험가용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정부정책측면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특정 기업을 다년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험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고 위험평가가 가능한 보편적인 수준으로 시장 확대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장기 지재권보험을 보험기간 3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보험의 가입대상은 지금보다 더 제한하여 혁신적인 기업에서 지적재산개발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료는 현재의 계약 및 사고실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할증을 부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재권보험에 장기특약(일시납, 연납)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약에는 보험료 미납 시 계약의 효력과 사고에 대한 책임, 정부지원 보험료의 추징 등을 규정해야 한다. 장기저축성 보험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지재권담보 보험료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납입보

2010년 도입된 지적재산권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중장기보험계약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험업법 등 규제측면의 제한은 없지만 보험상품의 공급과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주요 요인은 특히 정부예산제약으로 인해 보험수요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보험을 운영한다면 지원기업을 혁신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3년 이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크게 하지 않는 한 5년 이내 장기저축성 보험계약에서 기납입보험료보다 많은 만기환급금을 기대할 수기업들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재권보험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보험기간을 산업재산권의 등록기간과 연계하거나, 특허를 담보로 하여 대출할 때 지적재산권보험을 요구하고 자기자본규제에서 신용리스크를 차감하고, 보험가입 기업에게 금리우대가 되도록 정책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지적재산권 납입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재권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재권 보험가입을 통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한 모집단이 확보되는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지재권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재권 보험은 리스크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보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지고 리스크관리의 인식이 유형재산에서 무형재산으로 옮겨지는 경우 시장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 현재보다 낮은 보험료로 지재권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고 현

Chapter

7

금융·보험 이슈 연구

- 보험금융연구
- CEO Report
- KIRI 리포트 포커스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 고령화리뷰 포커스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보험금융연구

94

보험설계사 이직 요인과 정착률 제고 방안

안철경(부원장)·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 |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4호

보험회사는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계사를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근과 같은 저성장하에서는 고객 관리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계사의 감소, 탈락, 이직 등에 대한 관리가 보다 중요한 경영과제로 부각된다.

국내에서 설계사 이직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단순 설문조사 수준으로 실무적 단계에서 과제가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원인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정교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직 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정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유고객 수가 많은 경우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신계약 건수의 경우는 적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유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현재 실적압박에 놓여 있는 설계사들의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만족도와 이직의도의 관계는 만족도가 낮은 설계사의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속(TA), 비전속(GA), 텔레마케팅(TM) 등 모든 유형에서 모집 수수료 만족도와 이직의도 간에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수수료 분급에 대해 만족도가 낮으며, 이 경우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설계사가 선취 방식을 선호하고, 이러한 선호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수수료 분급을 시장에 정착시켜 설계사 정착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설계사의 경력과 이직의도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TA설계사의 경우 고경력 설계사의 이직의향이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GA 설계사의 경우 평판(-), TA설계사의 경우 실적(-), TM설계사의 경우 보유고객 수(+) 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CEO Report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김해식(연구위원) | CEO Report

지난 20년간 보험회사는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나 부채는 원가로 표시하는 회계불일치를 경험하면서 장부상 자본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왔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이러한 회계불일치를 해소하여 적절한 자본이 장부에 표시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시행되면 보험회사는 두 가지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담고 있는 회계기준(IFRS 17)이 최초로 시행되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준비금 평가액보다 현재 적용된 준비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회사는 준비금 부족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둘째, IFRS 17 시행 이후에도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서로 달라 금리 변동에 따라 부채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를 초과하여 자본이 감소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두 도전과제는 모두 시장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 번째 도전의 경우 IFRS 17 최초 시행 시 준비금 평가에 적용되던 할인율이 하락하게 되면 자본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IFRS 17 최초 시행에서는 장래이익을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준비금 부족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나 장래이익을 미리 인식하는 것이므로

IFRS 17 시행 이후 손익계산서에 나타날 이익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도전의 경우에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자산과 부채 모두 가치가 증가하게 되지만 자산보다 부채의 듀레이션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본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RBC 요구자본 측정기준을 강화하고 IFRS 17을 적용한 준비금의 부족 문제도 IFRS 17 시행 이전에 해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에는 자본확충과 더불어 배당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회사의 주된 자본확충수단은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및 저금리에 따른 보유채권의 시가평가 이익이었다.

보험산업의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은 보다 탄력적인 로드맵 구상과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변화된 환경에서 채권 발행 비용도 상승하고 채권평가이익도 감소하여 자본확충에 제약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한 이익잉여금을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장 둔화 추세에 대응하여 IFRS 17 시행을 저성장 사업모형을 구축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은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보험산업의 자본확충 여건을 고려하여 건전성감독 로드맵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자본확충 이슈가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로드맵을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동향분석실 | CEO Report

96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산업활동의 회복세로 2016년보다 0.4%p 상승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투자심리 개선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 지속으로 2016년 수준인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와 공급측 상승 압력의 영향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금리(3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내 물가 상승으로 연평균 1.7%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2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지난해에 비해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9% 증가할 것으로, 반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22% 증가에 그쳤다.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최근 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회복을 반영하여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하였다. 종목별로 보

면,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신(新)종신보험의 신규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절판효과가 감소하면서 4.4%(기존 4.7%)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저축성보험은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의 부진을 변액저축성보험이 다소 만회하면서 0.3%(기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기저효과로 4.1%(기존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2.6%)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개인연금(-3.6%)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퇴직연금(24.7%)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자동차보험(9.4%)과 일반손해보험(2.6%)의 성장세로 인해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다. 2017년 종목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이 저축성보험 판매 위축 지속에도 불구하고 장기질병보험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2.9%(기존 2.9%) 증가가 전망된다. 개인연금은 성장여력 약화와 업종 간 경쟁심화로 4.3% 감소(기존 -3.0%)가 전망된다. 퇴직연금은 수익성 및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기존 0.0%)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대수 증가세 둔화, 요율 인상 효과 소멸, 마일리지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4.0%(기존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의 회복세에 힘입어 3.5%(기존 4.2%) 증가가 전망된다. 이와 같이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7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도 2.6%(기존 2.9%)로 하향 조정하였다.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류건식(선임연구위원)·이태열(선임연구위원) |
CEO Report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특수직역연금가입자까지 IRP 가입이 허용되었다. IRP 가입대상이 사실상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후준비를 위한 IRP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IRP에는 모든 퇴직연금자산이 집중되고,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며 퇴직급부가 지급되므로 은퇴자금의 허브로서 중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IRP는 추가적인 세제혜택과 포괄적인 자산운용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있으며, 적격 개인연금의 적립금과 상호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다.

이러한 IRP 특성을 보험회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경우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금융산업으로서 역할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IRP가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설계사의 개인영업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IRP 시장에 접근함에 있어서 개인연금 등 유사상품과의 연계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RP와 적격 개인연금 사이에 자금이동이 자유로운 점을 활용하여 기존 가입자에게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부각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IRP가 노후준비를 위한 종합계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을 겸영할 수 있어 외형상 종합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IRP가 가지고 있는 종합금융계좌의 성격에 적합한 마케팅 및 고객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위험보장이나 장기상품 취급이라는 보험회사 고유의 강점과 다양한 투자기능을 결합한 자산운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객의 특성별로 장기간의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투자상품을 조합하여 자산운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금지급 개시 이후 개인의 재무행위 변화를 반영한 연금지급옵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사연금의 포괄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IRP의 연금지급을 연계하는 연금지급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포커스

영국의 퇴직연금 세제 변화에 따른 적립금 수령행태와 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0호

현재 영국은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이하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이 다양화되었다. 연금자유화 이전에는 적립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연금자유화 이후 세율 0~45%의 중합과세로 전환되어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영국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형태를 분석한 결과 연금자유화 이전 퇴직연금 수령자가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94%에 달했으나 연금자유화 이후 종신연금 선택비율은 10%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자유화 이전 10% 이하이던 실적 배당형 연금(이하 ‘Drawdown’)의 선택비율은 연금자유화 이후 28%, 그리고 일시금 수령비율은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연금 적립금 규모가 작을수록 일시금으로, 연금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들이 작은 규모의 적립금을 장기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경우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합과세의 특성상 적립금이 큰 경우 적용 세율이 높기 때문에 면세범위인 적립금의 25%까지만 일시

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실적 배당형 연금(Drawdown) 등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급여 수령자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연금 수령행태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노후소득원으로서의 역할 및 세제(稅制)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급여 수령자의 98%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평균 금액은 2,078만 원으로 소액이었으나, 연금으로 수령한 수령자의 평균 적립금은 2억 6,748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노후소득원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적립금이 많을수록 연금화 수령 시 얻게 되는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자의 충분한 연금자산을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적립의 연속성 강화 및 중도인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시금 수령 시 적용 세율을 높이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세제 개편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

이정택(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0호

정부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

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수가 고지체계 강화 및 정보 공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과거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5년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과 소비자의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비급여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1,954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공개하였다. 심평원에서 발표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비급여 진료수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현행 비급여 진료수가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수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해 진료비 적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본고는 가격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 규모별·지역별 진료수가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비급여 항목별 진료수가 편차를 분석한 결과, 일부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진료수가가 병원 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방추나요법, 상급병실료 차액, 교육상담료 등이 가격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났으며, 진료수가 편차가 작은 비급여 항목은 치과보철료, MRI 검사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시력교정술료, 치과임플란트 등이 있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급여 진료수가는 높으나 가격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별 비급여 진료수가를 종합병원, 병원급에 한정하여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평균 비급여 진료수가는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높고, 병원 간 비급여 진료수가의 편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수가 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규모별·지역별 비급여 항목들의 진료수가 수준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편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단순 비급여 진료수가 비교보다는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수가 비교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급여 진료수가 정보의 연도별 집적이 충분하지 않아, 진료수가 공개가 진료수가 안정화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가 비급여 진료수가 편차를 줄이고 적정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수가와 진료빈도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독일의 솔벤시 II 시행 현황과 특징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1호

1970년대에 도입된 유럽 지급여력제도는 계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02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강화한 솔벤시 I, 2016년 1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와 요구자본을 더 강화한 솔벤시 II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회원 국가들은 솔벤시 II 지침

등을 자국 내 보험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승인하에 보험회사가 준비금이율의 변동성 조정, 그리고 16년 경과조치 등 장기보증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자본금 확충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독일 생명보험회사들은 준비금 중 고금리상품 비중이 크고, 10년 이상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으로 인해 큰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감독당국은 사전적으로 최고예정이율을 인하여 상품설계 단계부터 역마진발생을 차단하며, 책임준비금 이외의 추가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솔벤시II를 시행할 당시에 상당수 생명보험회사들이 허용된 장기보증조치를 적용한 결과, 적정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보험사업 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상당수 보험회사에게 내부모형 사용을 승인하여 건전경영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준비금 적립이율의 변동성 조정 등 장기보증조치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대상 84개 생명보험회사 중 65% 이상의 회사가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급여력 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강보험회사는 41개사가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8개사가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독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의 내부모형 사용현황과 경과조치 적용결과 등 솔벤시II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들과 논의하여 보험계약책임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솔벤시II에 대한 감독적 조치와 보험회사의 대응은 향후 우리나라의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와 보완조치 마련에 정책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핀테크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 : 문제점과 검토사항

박선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1호

모바일 혁명과 함께 쉽게 응용해서 개발 가능한 오픈소스의 발전, 대중적 자금조달방식인 클라우드 펀딩의 등장, 금융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요구가 늘어나면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기술 발전을 감안할 때 핀테크 상용화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 첫째, 핀테크 기술사용에 취약한 노인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 셋째,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함에 따라 신규로 진출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이 부실화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핀테크 기술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 출현하면서 이를 악용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기존 소비자 보호 법률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상기한 네 가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정보전달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인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전자금융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사고책임 배분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사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어, 경영 부실화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마지혜(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2호

정부는 2014년 연금저축 등 5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의 세제혜택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소득공제는 공제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공제 금액의 일정비율을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해주어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정부는 세액공제 적용 시 고소득층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세액공제 전환을 추진하였다.

세액공제 도입 이후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 행태를 분석한 결과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금액 및 가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2013년 2.8%(181만 원)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 2014년 1.9%(102만 원)로, 그리고 2015년 0.9%(84만 원)로 감소하였다. 이는 12%의 낮은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도입 이후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후 정부는 중·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였으나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2014년 9.9%(225.3만 원)에서 2015년 8.6%(225.1만 원)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를 바탕으로 볼 때 중·저소득층에서 세액공제로 인한 연금저축 감소효과가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연금저축 유인효과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세액공제율 인상으로는 저축여력이 적고 과세미달자가 많은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배상책임의 문제점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2호

보험업법 제102조는 모집종사자의 모집 관련 위법 행위 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칙으로,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조항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휘·감독이 약화됨에 따라,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대한 개정논의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용관계’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 및 학계에서는 ‘사용관계’ 판단 시 현실적인 지휘·감독 관계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피용자를 통한 경제적 활동의 확장 및 그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의 확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책임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용자책임은 본래 손해의 공평한 배분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현실적인 지휘·감독의 존재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지휘·감독의 존재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관계를 판단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관계’의 개념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약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곧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은 그 규모 및 실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보험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모집종사자에게 단순히 수수료를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구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 중안보험 인수테크 사례의 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이규성(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3호

최근 국내외 소비자들의 개인용 전자기기 및 PC를 사용한 상품 구매가 활발해졌다. 해외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인수테크를 적극 도입·활용하고 있는데 정보공학 기법을 이용해 금융 시스템의 효율을 제고하는 기술을 핀테크라 하고

이 중 보험회사의 경우를 인슈테크라 한다.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도 인슈테크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미미하다. 국내 인슈테크 사례에는 보험다모아, 아이올, 라이나생명 챗봇, 동부화재 UBI 자동차 보험 사례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KPMG가 매년 발표하는 “Fintech 100”에 국내 보험회사가 선정된 사례는 없다.

본고는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KPMG “Fintech 100” TOP 5에 선정되는 등 인슈테크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중안보험 사례를 소개하고 중국과 한국의 인슈테크 환경을 비교했다. 중안보험의 성공 요인은 기존 인터넷 사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와 박리다매 전략,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가 중국과 한국의 인슈테크 환경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안보험과 보험다모아의 보험상품 판매절차를 비교한 결과 개인인증, 약관확인 및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별도의 결제정보 입력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별도의 개인인증 없이 보험을 구매할 수 있고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보험계약에서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보험계약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도 직접 서류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전달해야하는 등 중안보험에 비해 보험의 계약과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이 가계성 소액보험에 복잡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 절차가 요구될 경우 보험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관련 인슈테크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제고와 인슈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인증 방식 다양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들은 인슈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험 상품 및 계약 방법 개선, 기존 인터넷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판매채널 다각화(B2B2C 모델), 인슈테크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이슈 고찰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3호

보험상품 판매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 가능 보험상품의 범위 제한, 점포별 모집종사자 수 제한, 모집액 한도(일명 25% 룰) 등의 사전규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전규제에 대하여 소비자 편익의 제한 등을 이유로 완화 내지 폐지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통산업 공정경쟁 사례분석을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전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통산업 공정경쟁 사례분석에 의하면, 사전규제 도입 여부가 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의해 결정되었다. 첫 번째는 사후규제의 실효성이고, 두 번째는 제조업체와 결합되지 않은 비수직 결합 유통업체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이다.

유통산업 사례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이슈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규제 실효성과 관련하여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에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둘째, 비수직 결합 유통채널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전국에 지점을 설치한 은행 대부분이 자회사로 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비수직 결합 은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에 사후규제만으로는 공정경쟁 확보가 어려우며 사전규제가 필요하다. 단, 사전규제 방식과 관련하여 유통산업 사례의 경우처럼 기업결합규제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현행 은행산업에 기업결합규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분리매각을 통해 비수직 결합 은행을 만드는 것인데,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렵다. 기업결합규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집액 한도 설정(25% 룰) 등과 같은 현행 사전규제 방식은 차선택이 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가계부채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용식(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4호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경계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위해 주택전매 제한, 청약자격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여신심사 강화와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강화에 금리상승 우려가 더해지며 주택(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경기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아파트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관리방안 발표 이후 2017년 1월 발표된 아파트매매·전세가격 증가율은 전월 대비 각각 0.01%, 0.04%로 크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둔화는 가계부채 관리에는 긍정적이나 내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의 경우 2015년까지 부동산 경기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둔화는 가계부채 관리에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내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여신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둔화와 더불어 은행의 여신심사가 가이드라인 강화로 인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보험회사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험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로 인한 내수 위축이 장기적으로 보험수요 감소 및 해약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내수위축이 경기하강 국면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신규보험수요 감소와 더불어

재정상태가 악화된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할 가능성이 높아 해약환급금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여신시장의 풍선효과로 보험계약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보험계약의 해약·효력상실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했던 2000년대 초반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는 경기부진과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풍선효과가 확대되었던 시기이며, 보험계약대출과 해약률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험계약대출과 해약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실제 해약률이 보험회사가 예상한 해약률보다 높아질 경우 유동성 부족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향후 도입될 IFRS 17 기준은 보험부채시가평가에 해약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해약률 관련 위험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드 브렉시트가 금융시장과 해외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임준환(선임연구위원)·박선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4호

최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단일 시장 전격 탈퇴, 즉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선언하였는데, 협상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 EU,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부정적인 견해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3.4~9.5% 정도 감소할 수 있고 재정손실이 약 660억 파운드(9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非 EU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체결 가능성, 단일 관세 인하, 규제 완화, EU 예산 분담금 및 지원금 절감 등으로 인해 영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런던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EU 역내 금융패스포트(pass port)와 규제 동등성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패스포트란 영국에 거주한 금융회사들이 EU 역내에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영국 보험시장은 다른 금융업에 비해 유럽 시장에 덜 의존적이어서 패스포트 손실로 인한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금융 패스포트 활용도가 높은 은행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편 국내 보험회사들도 수익률 제고와 투자 다변화 목적으로 유럽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어 하드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 채권,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환위험에 노출되는데, 이종통화 대 미국 달러화로의 전환 여부, 환헤징 수단의 선택 등을 포함한 포괄적 환헤징 위험관리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추가 투자 시에는 변동성이 커진 유럽시장 보다는 미국 및 아시아 지역 중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 거점 지역의 대도시 지역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 수익다각화와 대체투자 목적으로 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 시 환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져 환위험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어 환헤징된 내부수익률로 투자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부동산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할 경우 이종통화 대 미국 달러화로의 전환 여부, 환헤징 수단의 선택, 부분과 완전 헤징기법의 선택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환위험 관리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환헤징을 하는 이유는 임대수익률은 대체로 안정적인데 외환 변동성이 높아 해외 부동산 투자수익이 환율 변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대상과 상품 다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들이 해외 부동산 추가 투자 검토 시에는 변동성이 커진 유럽시장보다는 미국 및 아시아 지역 중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 거점 지역의 대도시 지역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개방형 펀드의 경우 수익률에 따라 환매 시점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주요국 손해보험회사 수익성 비교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5호

최근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은행과 생명보험 회사에 비해 월등하게 나타나자 일각에서 이익의 적정성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이익(사업)구조를 미국,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관련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미국·일본 손해보험 회사에 비해 자본이익률(이하 ‘ROE’)이 높은 반면, 자산이익률(이하 ‘ROA’)은 낮은 경향이 있다.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높은 ROA를 실현하였고, 일본 손해보험회사는 2011년 대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2014년까지 수익성이 낮았으나, 최근 수익성을 회복하여 2015년도 ROA가 우리나라 손해보험 회사보다 높은 특징이 관찰된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 보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부채규모에 비해 적은 자본이 요구되는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 적립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험부채에 비해 자본이 적다.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적립금은 보험영업이익과는 무관하며, 계약자에게 공시이익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채규모 대비 투자이익이 높지 않아 ROA가 낮다. 한편,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보험영업 부분의 수익성은 미국·일본 손해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익의 안정성이 높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합산비율 평균은 한국 98.3%(저축보험료 제외), 미국 96.6%, 일본 94.3%이며, 2016년(9월 기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합산 비율은 94.1%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단, 2011년 이후 합산비율의 평균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가 96.9%로 가장 낮으며, 보험영업이익의 안정성이 가장 높다는 특징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수익성이 미국, 일본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사업모형의 차이로 인해 이익 안

정성과 ROE는 높은 반면 ROA는 낮은 특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장기 저축보험 사업은 자산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수익성이 높지 않아 ROA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5호

영국은 2013년 7월 자율주행자동차(이하 “AV”라 함)의 시험운행을 허용한데 이어 2015년 2월 AV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실행방안(Action Plan)을 공표하였다. 동 실행방안은 고속도로 시험운행규정 마련, 국내 도로교통 및 의무보험 관련 규정 정비, 제네바 및 비엔나 협정 등 국제협정의 국내 반영이 주요내용이다.

영국은 동 실행방안에 따라 2015년 2월에 AV 시험운행규정을 제정하였고, 2016년에는 AV 의무보험제도에 대해 보험업계, 자동차 제조사,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운행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Trinity 보험회사는 2016년에 시험용 AV 및 높은 수준의 AV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AV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방식의 책임부담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3자와 운전자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새로운 단일보험증권방식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동 방식은 AV 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일괄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운전자의 과실 없이 제조사 등의 귀책사유 사고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피해도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7년 1월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받아 생산물배상책임보험방식 대신 단일보험자방식(Single insurer model)으로 전환을 확정하고, 2월 22일 법률안(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을 의회에 상정하여 현재 하원에서 1차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AV의 시험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제정될 영국의 단일보험자방식을 검토하여 사고책임 부담과 의무보험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 확정한 단일보험자방식과 같이 자율주행모드에서의 사고 시 운전자를 제3자로 보아 의무보험에서 보상하고 제조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제안한 연구가 있지만, 영국이 최초로 AV사고책임과 보험제도에 대한 입법을 한 것으로 국내 AV 보험제도 마련에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보험시장 진입의 열쇠,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제도

김해식(연구위원)·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6호

EU는 회원국 보험회사에 Solvency I보다 강력한 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EU 감독당국은 Solvency II보다 느슨한 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비회원국의 보험회사에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역내 보험회사가 역외 보험회사와의 시장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Solvency II를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EU 역내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도 늘어나지만, EU 시장에 진출한 역외 보험회사 역시 규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는 Solvency II와 비회원국 지급능력감독제도의 동등성(Equivalence) 정도를 평가하는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 보험회사의 EU 보험시장 내 규제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비회원국 감독수준의 상향을 통해 역내 보험회사의 해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Solvency II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제도와 Solvency II의 유사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 동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해당국 역외 보험회사에 Solvency II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면제하여 EU 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역외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비회원국 지급능력감독제도가 Solvency II에 수렴하는 결과를 가져와 EU 회원국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시장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부 동등’은 일단 인정되면 금융당국의 정기적인 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동등 인정 기간에 제약이 없는 형태로 재보험계약, 역외 자회사 지급여력평가, 그룹감독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전부 동등’ 대신 지급여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등’이 부과될 수도 있고, 재보험계약과 그룹감독에 대해서는 ‘시한부 동등’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조건부 동등 결정의 경우 비회원국은 10년마다 동등성을 다시 평가받게 되며, 시한부 동등

은 2020년 12월까지만 동등성이 인정된다.

국내에서도 지급여력평가를 포함한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체계의 선진화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 보험회사가 유럽 보험시장을 개척하는 데 EU Solvency II 동등성 제도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은 EU Solvency II를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제도 간 장기적인 수렴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Solvency II 동등성 제도를 활용한 국내 보험산업의 외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Solvency II 동등성 제도는 해외재보험 수재를 촉진하고 재보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등성 제도는 출재보험료 기준 세계 2대 시장인 EU 시장 진출에 좋은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개인저축계좌 다변화와 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마지혜(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6호

영국은 최근 경제·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인저축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확대 개편하였다. 최근 확대 개편된 개인저축계좌를 살펴보면 영국은 2015년 생애 최초 주택마련지원을 위해 주택마련 목적의 적립금의 최대 25%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Help to Buy: ISA를 도입하였고, 2016년에는

핀테크 투자활성화와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핀테크 관련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Innovative Finance ISA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노후자금마련을 위해 60세 이후 적립금 인출 시 최대 25%의 보조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Lifetime ISA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자산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노후자금마련 등을 위한 저축유인 제도가 존재하나 실질적인 혜택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ISA의 경우 낮은 수익률로 인해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미미하다. 낮은 수익률과 그로 인한 낮은 수준의 세제혜택으로 인해 ISA 가입자는 2016년 11월 241만 명을 정점으로 12월 239만 명 그리고 1월 236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마련 자금 및 노후자금마련에 대한 세제혜택 역시 근로소득자의 46.8%에 이르는 과세미달자에게는 실질적인 저축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저축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Lifetime ISA 혹은 Help to Buy: ISA처럼 노후자금마련, 주택마련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저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저축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핀테크 투자와 같이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U 보험경쟁법」의 변화와 수평적 협력가이드라인 활용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7호

EU 보험경쟁법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제101조 및 제102조에 근거하고 있다. EU는 단일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하여 최소한 공동행위만을 인정하는 보험적용제외제도(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이하 ‘IBER’)를 1991년부터 운영하여 왔는데, IBER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존재하는 IBER도 일몰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까지 남아있는 IBER은 공동으로 통계표 작성·위험보험료 산출·연구에 대한 정보교환, 특정 리스크의 공동인수풀 운영이었다. EU는 잔존한 IBER에 대한 연구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7년 3월 이후 명시적인 규정(regulation)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EU는 공동 계약조건 사용 등에 대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수평적 협력협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IBER도 이에 준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EU는 2017년 3월 이후 2개 공동행위에 대한 예시를 가이드라인에 제공할 예정이었다.

또한 EU는 Solvency II와 공정가치부채평가에 필요한 할인율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보활용에 대한 예시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58조(적용제외)에 의거, 「보험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동의 위험보험료 산출, 공동인수협정만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로 되어 있다. 향후 공정가치 부채평가 제도와 자체모형사용이 가능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보험회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정보가 필요하며 재무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당국은 공정가치부채평가 등에 필요한 변수 연구나 작성에 대한 공동협력과 정보교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명시적인 적용제외규정에 추가하여 EU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법안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7호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청구권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규정하는 내용,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보험금청구 시부터 보험회사의 회신 시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안은, 타 입법례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긍정적으로 고려

해볼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이나 기산점 변경과 같이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본질적으로 개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과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 도모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상법은 보험제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 관련 청구권의 경우 일반 채권보다 짧은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이른바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본질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아예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청구권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규정하는 방안은 보험금청구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 기산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장기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객관적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주관적 체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원칙으로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지 특별히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에만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멸시효 제도와 별도로, 향후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에 설명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우선 보험계약자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고 각 보장급부별로 해당 여부와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2P 보험 도입 효과 분석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8호

최근 핀테크의 보험 버전인 인슈어테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및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금융·보험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인슈어테크는 보험회사의 효율성과 더불어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지급심사,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데이터 집적 및 위험률 산출,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 인슈어테크가 기존 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 장치로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주문자방식(order made) 보험상품 및 P2P(peer-to-peer)보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 및 보험 운영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상품의 사례로, 해외에서는 P2P 보험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이 시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P2P 보험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구매가 시도되고 있다. 공동구매 및 P2P 보험은 소비자가 보험판매 및 운영 단계에 참여하여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P2P 보험은 소규모 그룹의 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P2P 보험이 도입될 경우 보험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비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단순히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것을 넘어서 보험의 원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성이 일부 해소되어 기존에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보험 사각지대의 소비자들도 보험가입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보험 사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슈어테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 위반 우려로 인해,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P2P 보험이 그대로 도입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보험회사와 인슈어테크 전문회사가 협업할 경우,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 상품운영과 IT 업체가 가지고 있는 유연

적인 기술 적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현 보험법규하에서는 가장 적절한 형태로 보인다. P2P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업 및 보험업 운영 주체의 개념이 바뀌고,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P2P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강생활서비스의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식

조용운(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8호

건강생활서비스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신체활동과 식습관 등의 건강행태 변화는 스스로 실행하기 쉽지 않아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서비스와 함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센티브의 활용이 미흡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모 및 종류가 초기적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모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단순 참여 및 행동 기반 인센티브에 국한되어 있고, 금연 성공, 목표 체중감량 달성 등과 같은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활습관 개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법 설계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문헌 및 실증연구 등을 참조할 때 인센티브는 참여 혹은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

가 있고 설계 방식에 따라 장기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일회성 참여 혹은 행동 유인을 위해서는 일회성 인센티브가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대상자가 생활습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참여 혹은 행동기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간헐적이거나 행동하고 있는 경우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기간이 목표달성을 위해 충분할 정도로 길어야 한다.

한편, 건강생활서비스의 인센티브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 제공은 보험자의 재원부담 혹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료비 절감효과, 건강증진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건강증진 효과가 지급보험금 절감효과로 나타나므로 생활습관 변화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송윤아(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9호

제품과 서비스의 제조·판매사, 보험회사의 차별화 및 수익창출 방안으로 부가보험이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보험의 부가모집 방식이란 특정 재화·용역의 제조·판매사가 재화·용역의 판매 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제조·판매사는 차별화를 확대하며, 보험회사는 신규모집채널을 확보하고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2015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단종보험이 부가보험의 한 종류인데 모집방식이 개선될 경우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보험 모집방식은 소비자가 재화·용역의 구입시점에 현장에서 관련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불완전판매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가보험은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인 재화·용역의 판매에 연계하여 모집이 이루어지는 부차적 상품으로 주요상품 판매과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판매권유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부가보험에 대한 구입 결정시 소비자는 가격비교 및 탐색기회 제한, 정보과다, 결정피로증, 구매압력 등의 상태에 놓임으로써 합리적인 행동 및 의사결정이 어렵다. 부가모집방식 하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은 결국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거나 높은 모집수수료와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례로, 영국은 5개의 부가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과다 지불한 금액이 최소 1억 800만 파운드에 추정하였으며, 호주에서는 자동차 판매사가 모집한 부가보험의 손해율이 4.4~22%, 모집수수료율이 36~5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보험이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부가보험의 손해율이나 가격 등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부가보험 모집수수료 한도

설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보험회사들의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의 구체화 필요

송윤아(연구위원)·이소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19호

2015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대인배상 진료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2조 3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지급된 진료비 비중은 약 10%이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항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비급여)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에서 비급여항목(1,636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이른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경우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하여 진료의 의·약학적 필요·타당성, 즉, 진료의 적정성이 우려된다. 교통사고 환자가 원상회복을 위한 의·약학적 필요·타당한 진료를 식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진료수가의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의 일반원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다수의 세부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형태로 두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은 건보수가 기준상 세부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진료비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한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와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결정절차에 대해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만 규정할 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사지침을 마련한 후 향후 이를 진료수가 인정범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진료수가 인정범위 구체화의 목적은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인 바, 자칫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진료의 적시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변화 방향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0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4월 18일 공포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i)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ii)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점, (iii)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다고 정하고 있다(개정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이는 제조물이 대부분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종전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오던 사항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한편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불법행위 억제력 제고 및 피해 보상의 실질화를 위해,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가증된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이에 대해서는, 배상액에 별도로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볼 때 실제 손해액의 3배라는 개정법상 상한액은 불법행위 억제라는 입법목적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제조물 책임소송의 입증이용이해지고 배상액은 더 높아지게 되어,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한다면 제조물사고 발생 시 제조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함으로써 제조물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고, 제조물책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조업자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조물 사고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이 큰 제조물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부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보험보상을 허

용하는 방안 등도 추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와 의미

김석영(연구위원)·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0호

소비자의 보험약관 이해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감독당국 주도의 표준약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제도 정비에 따라 각 보험회사는 약관 이해도를 높여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만 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도가 제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종목에서 최근 평가결과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우수등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등급을 획득한 보험회사의 수는 회사별 평가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제8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기점으로 증가했으며, 주로 생명보험회사의 평가 결과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Flesch 가독성 테스트, 평가표(Check List 방식)를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노력을 강제하고 있다. 미국은 1978년 6월부터 보

험약관에 대해 Flesch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종합감독지침에 따라 상품인가 신청 시 기초서류 내용의 명확성 관련 평가표(Check List 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메모나 만화 형태의 설명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노력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평가 결과의 영향력 증대, 자체 평가 시스템 규정화, 약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문화 형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 결과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이해도 평가 결과를 보험회사 경영평가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거나 신상품 인허가 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Flesch 가독성 테스트, 일본의 평가표(Check List 방식) 작성과 같이 보험회사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규정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첫 관문이며 분쟁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약관 이해도 개선의 중요성을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1호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대기오염은 대사위험(32.5%), 식이위험(23.2%), 흡연(13.8%) 다음으로 높은 세계 사망위험요인(8.5%)이다.

PM 2.5(입경 $2.5\mu\text{m}$ 이하의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보다 많이 흡착할 수 있으며 인간의 폐 속 깊이 들어가 축적되고 혈관을 통해 전파되어 호흡·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PM2.5와 오존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각각 424만 명, 25만 명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PM2.5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PM2.5의 연평균농도는 2015년 기준 $29\mu\text{g}/\text{m}^3$ 로 WHO 권고수준과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1990년에 비해서도 높아진 수치이다. 여름 평균 오존 농도는 2015년 기준 OECD국가 중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다음으로 높고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1990~2015년 기간 동안 PM2.5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15,100명에서 18,200명으로 21% 증가하였고, 10만 명당 PM2.5 영향 사망자는 2015년 기준 27명으로 OECD 평균(22명)에 비해 높다. 동기간 오존 영향 사망자는 130% 증가하였고, 10만 명당 오존 영향 사망자는 2015년 기준 1.2명으로 OECD 평균(1.4명)에 비해 낮다. 또한 OECD는 2060년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2010년(36명)에 비해 3배 증가한 107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활동장애 등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으로, 보험회사는 공기의 질과 관련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보험회사는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률을 분석하고 대기오염 수준과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대기오염이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신규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카셰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기승도(수석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1호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공유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공유경제의 유형인 카셰어링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카셰어링은 “모바일을 이용한 네트워크 활용”이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운송 서비스 산업과 연계되어 나타난 새로운 산업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카셰어링이 도입되었으며 주요 형태는 B2C 방식이며,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로는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이 있다.

우리나라 카셰어링 업체의 운영 방식과 이용고객의 특성이 초래하는 다양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카셰어링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높은 사고발생률로 인한 카셰어링 관련 자동차보험제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고발생률 비교 - 대인배상 I

구분	구분	2015년	2016년
대인배상	개인용	5.5%	5.3%
	대여차	10.1%	9.5%
	카셰어링	47.7%	43.7%
대물배상	개인용	14.4%	13.8%
	대여차	25.4%	24.2%
	카셰어링	164.6%	149.6%

주: 1) 개인용은 소형A, 소형B, 중형, 대형의 합계임

2) 손해액은 손해조사비 미포함 실적임

자료: 1)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2) 렌터카 공제회 실적자료

이외에도 사고보상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갈등, 불법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 카셰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 카셰어링 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카셰어링이 새로운 운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서 검토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높은 사고발생률 문제”는 카셰어링업체가 자체적으로 이용자 사고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고위험도가 높은 이용자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사고보상 사각지대 문제”는 대물배상 보장한도를 1억 초과로 확대하거나, 1억 초과 다양한 대물배상 한도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2017년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기능을 대면확인 수준으로 정밀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보험과 유사한 상품에 관련된 문제”는 보험회사(또는 공제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으로 사고발생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타 상품내용 관련 불만은 정책당국이 보험유사상품 표준약관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환헤지 현황과 문제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최장훈(연구위원)·마지혜(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2호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계속해왔던 보험회사들의 해외채권 투자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다. 국내 25개 생명보험회사의 1분기 말 외화유가증권 투자규모는 약 78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연 3.1%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낮은 증가세는 2013년 10월 이후 매년 40~62%의 높은 증가세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해외채권 투자 증가세의 둔화는 최근 환헤지 듀레이션 규제 완화, 미국 금리의 인상 기초, 환헤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보험회사는 최근 외화자산 듀레이션 인정요건 완화와 더불어 환헤지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장기물(1년 이상)인 통화스왑(CRS)에서 단기물 외환스왑(FX Swap)을 선호하고 있다. 장기 해외채권투자에 대해 외환스왑을 통한 환헤지의 실효성은 만기가 짧아 이에 따른 환헤지 부담은 절감할 수 있으나 외환스왑의 만기연장 시 미국 금리의 상승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를 롤오버(roll-over) 리스크라고 한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한 환헤지 비용 절감은 확보할 수 있으나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채권평가손발생에 따른 롤오버 리스크가 환헤지 비용 절감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외환스왑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달러의 유동성 부족, 롤오버 시 외환 갭(gap)리스크 등으로 실제로 환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금리가 인상기조에 접어들면서 롤 오버 리스크를 우려하여 보험회사들의 해외채권 투자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의 환헤징 수단은 향후 미국 금리 전망, 달러 유동성, 그리고 시장위험인수성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보험부채 듀레이션 관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물 통화스왑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외환스왑은 롤오버 위험에 노출되어 장기 해외투자에 대해 완전한 환헤징이라고 볼 수 없다. 해외채권투자의 경우 통화스왑을 통한 환헤지는 원화 국내 채권투자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보이지만 외환스왑에 비해 환헤지 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부채를 갖는 보험회사의 경우 ALM(부채자산종합관리)이 해외 수익 창출보다 중요하므로 장기물 통화스왑이 환헤지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수익창출의 한 가지 방안으로 통화스왑에 신용디폴트스왑(CDS)발행을 결합한 방법이 단기 외환스왑을 통한 수익원 창출보다 위험이 작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장기 해외투자에 대해 ALM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통화스왑에 신용디폴트스왑(CDS)발행을 결합한 구조화된 채권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해외채권투자물인 미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화표시 한국정부가 발행한 5년물 외평채에 대한 CDS를 발행하면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 외화표시 외평채 또는 금융채권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우리

나라 국가 부도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수요로 CDS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보험회계제도 변화와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2호

현행 우리나라 보험회계제도는 보험부채 원가 평가 원칙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계정보의 산출목적(또는 주요 정보이용자)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하는 실질적 일원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재무회계제도(IFRS 17) 및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보험회계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보험시장과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독일의 최근 보험회계제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독일 보험산업은 독일 GAAP(원가평가) 중심의 단일기준 보험회계제도를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다수의 회계기준이 공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및 재무회계제도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이지만, 계약자배당 책정 및 과세표준 산출 등의 목적으로 독일 GAAP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회계처리기준이 공존하는 보험회계제도는 상이한 회계기준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회계정보 산출과정을 보다 복잡하게 하고 산출된 회계정보의 해석도 불분명하게 하여 보험

회사의 재무상태 파악 및 계약자 배당금 책정 등 회계정보 산출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독일 보험회사의 경우 향후 금리상황에 따라 Solvency II에 의한 지급여력평가 시 재무적으로 건전하지만 독일 GAAP 기준 재무제표 작성 시 자본잠식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다수의 회계기준이 공존하는 보험회계제도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독일 보험산업은 회계기준 간 조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보험회계제도 운영의 복잡성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회계기준 간 조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보험회계제도 변화 사례에서 우리나라 보험회계제도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금융당국은 보험회계제도 개선 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계제도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험시장 및 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회계기준들의 실무 회계관행을 형성하여 산출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회계기준들을 조화시켜 보험회계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하나의 회계기준으로 산출된 회계정보를 조정하여 다른 목적의 회계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3호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는 한방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뿐 아니라 1인당 진료비 증가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기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연평균 46%, 24% 증가하여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 6,586억 원의 28%를 차지한다. 동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하여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를 차지한다.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는 연평균 18% 증가하여 2016년 52만 원에 이른다.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50%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1인당 진료비 상승을 견인한다. 한방 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294% 증가한다. 한의사 및 한방 의료기관 수와 자동차보험 환자의 통원치료 증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바, 환자가 필요·타당한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뿐만 아니라,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 인

정기준을 마련하여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방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방진료의 수가 및 인정기준과 정보 제공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의약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고부담금제도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과 자동차보험의 형평성 제고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3호

과실비율이 적은 교통사고 운전자가 과실비율이 많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할증부담도 큰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한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커서 가해자로 인식되더라도 과실비율이 100% 미만이라면 과실비율이 적은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자신의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고가차일 경우, 더 많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할 우려도 있다. 배상금액이 클수록 보험료 할인할증비율은 높아진다.

과실비율과 손해배상금액의 비대칭성은 자동차보험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초래한 가해자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보상,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를 할 수

있고 민사적 합의를 통해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대인배상 금액을 결정하고 가해자의 배상을 제한한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과 일본은 대인배상에서도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결정한다. 미국의 34개 주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50%, 혹은 51% 이상일 경우 손해배상 권리를 박탈한다.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의 형평성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4년도에 도입된 사고부담금 제도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게 1건당 100만원(대물배상)에서 300만 원(대인배상)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나 사고예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무면허 등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수정비교 과실제도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과실상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변화 : IFRS 17 시행은 사업모형 혁신 기회

김해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4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최종 확정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 17)은 당기순익의 원천과 보유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래이익의 현재가치를 재무제표에 모두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회계는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보유한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이익 규모가 현재가치로 얼마인지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없다. 이에 반해 IFRS 17은 보험회사가 손익 계산서에 보험마진과 이자마진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보험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장래이익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일반투자자와 보험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만큼 보험회계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이 개선된다.

현행 회계는 자산운용을 통한 이자수익은 투자 영업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자수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한 이자비용은 투자영업에 반영하지 않아 자산운용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IFRS 17은 자산운용 재원인 저축보험료는 즉시 적립금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적립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수익)와 적립금에 지급한 이자(비용) 모두 투자영업에 반영하여 이자마진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에 관한 한 다른 금융권 적립금(예수금)회계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IFRS 17은 보험상품 판매로 예상되는 장래이익의 현재가치 합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보험회사의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보유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종 이익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아서 보험회사는 내재가치 등 재무제표 밖(Non-GAAP)의 지표를 이용하여 자사의 기업가치를 설명해왔다. 반면, IFRS 17은 내재가치와 유사한 장래이익을 재무제표에 바로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재무제표를 통해 쉽게 보험회사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래이익과 당기순익의 원천 정보 등 새로운 성과지표를 제공하는 IFRS 17 시행을 고성장에 최적화된 현행 사업모형을 저성장 환경에 맞게 혁신하는 기회로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성과지표를 공유함으로써 사업모형 혁신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의 자동화와 정보보호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4호

최근의 데이터 분석은 개인화와 자동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화란 분석 대상이 그룹에서 개인으로 세분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자동화란 분석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감소하고 기계의 역할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개인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부당한 차별의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자동화는 개인화로 인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분석이 자동화되면서 알고리즘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복잡해져 어떠한 논리에 의해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반 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개인정보 분석의 자동화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켰다. 제22조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자동화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이 법적 효과를 가져오거나 자기에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① 정보주체와 정보관리자 간의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EU법이나 회원국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③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정보주체의 반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정보보호 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개인정보 분석의 자동화와 관련된 명시적인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기계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정보 분석의 자동화와 관련된 법

규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규 정비에 있어서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주요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5호

2009년 블록체인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 기술을 보험계약에 적용한 가시적인 결과가 최근 보도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이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보험에 스마트 계약이 적용되면 보험료 납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모든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해외 시장에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의 보험 적용은 주로 재보험계약이나 기업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별, 회사별로 상품 유형이 다양한 원수보험과 달리 재보험이나 대재해채권은 계약기준이 명확하고 보험상품의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 알리안츠 그룹의 자회사인 Allianz Risk Transfer AG(ART)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적용한 대재해스왑(Cat swap)을 2016년 6월에 발행하였다. ART는 대재해채권에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에는 보험금 정산에 수개월이 걸리던 것이 몇 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AIG와 IBM은 Hyperledger Fabric protocol을 이

용하여 스마트 보험계약(smart insurance policy)을 개발하였다. AIG는 스마트 보험계약을 통해 여러 국가 간 보험계약의 효율성, 신뢰도,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이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지급조건이 되는 보험사고 정보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구축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블록체인 컨소시엄 B3i(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재물 초과재보험(excess of loss reinsurance) 계약의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B3i의 재물 초과재보험은 재보험 계약의 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사고 보고 및 보험금 정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블록체인으로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AIG와 IBM이 구축한 스마트 보험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보험연계증권(ILS: Insurance Linked Securities)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대재해채권 및 재보험과 같은 규모가 큰 재물손실에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연계증권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운영비용이 줄어들면 보험연계증권 시장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리스크를 자본시장에서 증권화하는 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업무로 추가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들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를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보험 서비스에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세중(연구위원)·김석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6호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를 각각 약 680만 마리, 180만 마리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구당 반려동물 양육 비중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험가입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2007년 말 최초로 출시된 반려동물 보험은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확대되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의요율 사용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대부분 철수한 바 있다. 2014년 동물 등록제 의무화로 손해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 보험을 재출시하기 시작하였으나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3개사에 불과하며 판매 실적 또한 미미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반려동물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표준 진료비 부재, 보험료 산출의 어려움 등이다. 반려동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안 식별

이 용이하지 않고 연령판별도 어려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등록된 동물 수는 약 100만 마리에 불과하며, 이 중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 어렵다. 현재 동물 진료의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병원이 의료비를 공시하는 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진료항목별 진료통계 등을 확보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이 어려우며 신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계관리 강화, 동물 의료수가 제도 정비, 요율제도 개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동물 등록, 건강검진, 그리고 보험가입을 하는 인계관리 강화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 의료수가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 보험시장에 신규진입 시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고 참조요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보유율 확대와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6호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 및 순보험료 자유화 이후 부보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 산정과 보유전략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감독당국은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재무건전성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2010년에 전환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의 보유현황과 확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의 보유 확대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손해보험산업 전체의 2015년 보유율(장기손해보험 제외)은 82.5%로 2002년 78.8%에 비해 3.6%p 증가했으나 EU(15개국) 83.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의 보유율 상승은 상위 4사가 견인하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오히려 담보력 부족으로 보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2015년 상위 4사의 보유율(장기손해보험 제외)은 2008년 81.9%에서 2.1%p 상승한 84.0%이지만 해외수재를 통한 보유확대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손해보험시장이 포화된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우량한 물건에 대한 해외수재를 확대하여 경영성과를 개선하고 있다. 향후 손해보험회사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보유확대 경영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유율의 확대는 이에 상

응하는 지급여력규제상 요구자본금(required risk capital)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사의 담보력을 감안하여 보험종목별, 인수 리스크별 보유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형사와 소형사의 보유율 양극화는 가격자유화 이후 언더라이팅 전문성과 조직 운영에 비롯된 것이므로 전문성 있는 언더라이터와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가격경쟁이 심화된 포화시장이기 때문에 해외수재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있는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현황과 개선방향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6호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 증가세가 2013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 단계 혹은 합의시점,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변론 종결 시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이다. 2013년 8,493억 원이던 향후치료비 지급규모는 2014년 9,461억 원으로 11.4%, 2015년에는 1조 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여 대인보험금 증가율 9.1%, 10.4%를 상회한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해등급 14급의 병원치료비는 1인당 평균 27.3만 원이지만 외과향후치료비는 43.4만 원이다. 상

해등급 14급에 대한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 비중은 2010년 374%에서 2015년 167%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15년 상해등급 1급의 70%, 8급의 5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합의금 명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되는데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되는 진단비, 입원비 등이고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와 입원 시 발생하는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가 합산된 금액이다. 휴업손해는 입원일수에 근거해서,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되지만 합의금이 교통사고 환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보면 향후치료비는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된다.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이 지속될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상환자 입원 및 진료 기준 수립이 필요하고 실손 보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병원 치료비 영수증 등의 근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금 조정 역할을 하는 향후치료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

김석영(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7호

우리나라에서 전문보험회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말 현재 생명보험 25개사와 손해보험 31개 사가 사업하고 있으나 전문보험회사는 IBK연금보험 주식회사, DAS 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 등 2개사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모든 보험종목을 판매하고 있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상품 포트폴리오에는 큰 차이가 없다. 특정 종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보험회사 등의 증가는 경쟁을 통해 시장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진입규제는 대기업 기준으로 되어 있어 중·소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진입이 어렵다. 2003년 개정 보험업법에서 단일종목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최소자본금이 일반보험회사의 3분의 2 수준임)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신생 전문보험회사가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기존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보험회사의 기능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가 출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상품개발에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인슈어테크를 보유한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주요 기능을 위

탁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판매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의 등장이 용이해질 것이다.

중·소규모 전문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허가 요건을 비롯한 진입규제의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인허가 제도 중 최소자본금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중·소규모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적용 시 최소자본금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회사의 규모와 보험종목별 리스크를 고려한 차등화를 통해 전문보험회사의 출현과 생존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드론 사고 손해배상책임 구체화 필요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7호

향후 군사, 농업, 방송, 레저, 연구조사, 경찰업무, 보안, 안전점검, 운송, 손해사정, 재난사고 관리 등 사회 전반에서 드론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드론사고 손해배상의 책임소지에 대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드론 사고에서 피해자가 신속히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드론 사고의 특징을 분석해 드론 사고 손해배상책임의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드론 사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드론사고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다양한 형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드론 사고는 운행자 과실, 타인 과실, 제조물 결함(예를 들어, 자동비행 기능 결함), 해킹, 전파·GPS 교란, 자연적 원인(강우, 기온 하강, 태양풍, 조류 충돌 등) 등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기 신체, 차량·기체 고장·파손, 환경 훼손, 도난·분실, 민간 주파수 교란, 사생활 침해, 비행금지구역·사유지 침입, 휴지(休止) 손해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은 타 기기에 비해 기상 악화, 태양풍, 조류 충돌 등과 같은 자연적인 영향에 취약하고 자동비행 기능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드론 사고 발생원인 중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드론 사고 또는 자동비행 중 발생한 드론 사고에 대해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현행법상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드론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드론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적용 여부와 드론의 자동비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피해자 보상 방법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이후 가입률 변화와 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8호

영국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8년 연금법(Pension Act)을 개정하여 2012년 10월부터 일정한 법적기준을 충족

하는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하였다. 자동가입 대상은 사업장 규모별로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에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 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가입제도 도입이 완료된 이후인 2018년 3월까지 총 기여율은 근로자 연간소득의 2%로 하며 이 중 근로자가 0.8%, 고용주가 1% 그리고 정부가 0.2%를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총 기여율은 연소득의 8%로 하며 이 중 근로자는 4%, 고용주는 3% 그리고 정부는 1%를 기여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제도 시행 이전 55% 수준에서 자동가입제도 시행 이후 78%선까지 제고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큰 폭으로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사적연금 활성화의 연장선상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제도가 계획되고 현재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등 제도가 도입된다면 영국의 사례처럼 퇴직연금 가입률 및 노후소득 대체율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의무가입제도는 영국의 자동가입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에게 퇴직연금 제공과 납입의무를 부과하므로 퇴직연금 의무가입제도의 도입은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보다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퇴직연금가입자는 근로자이지만 퇴직연금 가입을 결정하고 기여금을 납입하는 주체는 사업주

이므로 사업주에 대한 홍보와 퇴직연금 제공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제도 도입 과정에서 퇴직연금 미제공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제공을 위해 고용주가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전달 및 홍보가 중요하다.

중국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이소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8호

중국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은 12%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반려동물 수는 소득 증가와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6년 중국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는 1,220억 위안(약 185억 달러)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GDP의 0.16%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려동물산업 성장과 함께 반려동물보험도 출시되고 있으나 가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험회사 스스로의 시장 활성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반려동물보험이 주계약으로 출시된 것은 2005년 중국태평양손해보험사의 반려동물 책임보험이 최초이며,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 및 종합보험은 2013년 이후부터 출시되고 있다. 중국의 반려동물 의료보험은 1년 갱신형으로 가입단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특징이 있으며, 6~7세까지 보장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9~12세의 고령까지 보장을 제공한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책임보험은 1만원 내외(20~100 위안)의 저렴한 보험료로 반려견이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와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한다. 한편 보험회사가 아닌 반려견 헬스케어서비스 회사가 공제상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반려동물 식별의 어려움, 의료비의 비표준화, 낮은 인지도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손해보험사회들은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회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반려동물의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 칩을 이식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반려동물보험의 인지도 확대와 가입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반려동물보험 시장 현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보험회사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노력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반려동물보험은 1년 갱신형으로 판매되며 우리나라에 비해 보장 나이가 길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분실보장도 제공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상품이 단독으로 판매되고 있다. 중국의 보험회사는 불리한 환경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과도기에 실행할 수 있는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인슈테크 스타트업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9호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보험산업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 공급측면의 스타트업은 보험회사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그리고 수요측면의 스타트업은 가격비교 사이트 등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여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 능력 제고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인슈테크 스타트업이 하나둘씩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아직 공급측면의 스타트업은 없으며, 주로 수요측면과 관련된 스타트업이다. 수요측면의 스타트업으로는 레드벨벳벤처스, 디레몬, 아이지넷, 엔트리나우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레드벨벳벤처스 정도이다.

해외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공급측면 인슈테크 스타트업은 미국의 클라이미트 코퍼레이션으로 날씨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구글에 근무하던 직원 2명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편, 수요측면의 경우에는 미국의 스마트 개방(Smart Disclosure)에 의한 스타트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CakeHealth는 소비자의 의료보험 선택을, Castlight Health는 기업의 의료보험 선택을 도와준다.

국내에서 혁신적인 인슈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지금보다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이 나름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공급측면의 인슈테크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유용한 공공데이터가 금융권 내부에 있기 보다는 의료, 날씨 등과 같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추진 시 정부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의 개방만으로는 부족하며, 혁신적인 데이터 분석능력을 가진 데이터 과학자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개방정책과 함께 인력양성정책도 병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재해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선결과제

송윤아(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29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산재보험 급부금보다 큰 경우 산재근로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재산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여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 급부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 배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적자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기업의 파산이나 배상자력 부족 등에 의하여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합의나 소송 시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와 금전적 다툼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송 시 시간, 비용, 절차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산재보험 급부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수단으로 근재보험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따라 과실상계 후 보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산재근로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 사용자의 5.5%(약 13만 개)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근재보험 가입률을 사업종류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2%,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22%로 높은 편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운수·창고·통신이나 제조업 등의 가입률은 2% 미만이다.

근재보험이 산재보험 초과손해 배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의 적정화와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근재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과실입증이 어렵고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보험회사에 있어 사용자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에 상응한 위자료 책정이 필요하다.

상법 보험편 주요 개정 논의

황현애(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0호

20대 국회에서는 상법 보험편 관련 10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 중 일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0건의 개정안을 이슈별로 분류해보면 (i)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ii) 고지의무 수동화, (iii)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 동의에 전자서명 포함, (iv) 생명·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약관 허용, (v)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금 감액청구 허용 등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쟁점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새로운 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를 추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으로 총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보험금청구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독일 등 외국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금 청구 시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시까지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연장의 문제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 (ii) 고지의무 수동화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학계에서도 대체로 수동화에 찬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지의무를 수동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질문표 작성의 원칙 및 세부기준 마련

이 현실적인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iii)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서면동의에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포함하는 방안은 법사위 대안에 반영되어 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공포되었고, 2018. 1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v) 음주·무면허 면책약관 허용문제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오랜 논란이 있어왔던 주제이고, 피보험자 및 그 유족 보호라는 가치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 및 예방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비교형량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v)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료 감액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위험의 ‘감소’는 특별위험의 ‘소멸’과는 달리 그 발생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고 평가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개입되므로, 위험의 감소 여부 및 감액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제도 개선, 고지의무 수동화,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료 감액청구 허용 등 관련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 허용은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보험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문제, 음주·무면허 면책약관 허용 문제 등 아직 논란이 계속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상법 개정 시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대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습적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

오승연(연구위원)·이정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0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수의 비중이 높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 등 다양한 규제들을 강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상습적이고 중독적인 음주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 직접적인 규제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습적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더 나아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비중은 2002년 이후부터 계속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비중도 여전히 높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알코올 사용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평생유병률은 12.2%로 일반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 평생유병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알코올 중독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률은 현저히 낮고, 음주운전 경험률은 높은 상태이다.

기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 대책은 주로 법적 책임부담과 자동차보험금 지급제외나 보험료 할증 등 직접적인 규제 정책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등 직접적 규제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위반자들은 알코올 의존적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음주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케어 도입에 따른 알코올과 약물중독에 대한 공·사 의료보험 보장 강화로 치료환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알코올·약물중독에 의한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사례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의료 보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단속 및 처벌과정에서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 등 음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보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 정비 논의와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0호

최근 유럽에서 보험회사 회생(Recovery) 및 정리(Resolution)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당국의 위기방지 및 위기관리 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보험산업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를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권한과 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은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먼저 실시하였고 최근 보험산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유럽 각국의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간 실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EU 수준에서의 일치된 체계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① 준비 및 계획, ② 조기개입, ③ 정리, ④ 국가 간 협력 및 조정 측면에서 회원국 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유럽 국가 간 최소 수준에서의 일치(minimum degree of harmonisation)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회생 및 정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EU 차원의 공통된 체계가 필요하지만, 회원국들이 자국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회사 및 각국 당국에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하에서 공통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EU 수준에서의 공통된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는 ① 준비 및 계획, ② 조기개입, ③ 정리, ④ 국가 간 협력 및 조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럽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 정비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방지 및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지급여력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급여력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회사 도산 확률을 낮출 수 있지만 도산 자체를 막을 순 없다.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 개선 시 우선적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 및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 개선 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권고한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기준(ComFrame M3E3, ICP 12)’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행될 유럽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체계 개선은 구체적인 벤치마크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정원석(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1호

정부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법 적용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에 근로자성을 적용하는 정책에 대한 보험설계사들의 인식을 설문조사 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안에 대한 설계사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생명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교보, 미래, 삼성, 신한, 한화, AIA, ING, Met 등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2,560명이며, 설문조사기관은 서울마케팅리서치이며, 조사방법은 2017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800명이 전화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3.44%이다. 유효표본(설문에 응한 표본) 중 남성설계사의 비율은 17.8%이고 여성설계사의 비율은 82.3%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보험설계사를 선호하는 고용형태로는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비중이 78.4%, 근로자를 선호하는 비중이 19.4%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선호하는 납세형태로는 사업소득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76.4%, 근로소득세를 선호하는 비중은 19.9%로 조사되었다. 노조 설립 및 가입과 관련해서는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시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9%, 가입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9%였다. 이는 능력에 따른 보수를 받기 원하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선호하는 설계사의 특성상 노조가입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설계사들은 산재보험보다 현재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단체보험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비중이 85.8%로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비중 1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산재보험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 반대가 65%로 찬성 29.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보장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풀이된다. 또한 설계사들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8%는 의무가입에 반대하였으며 45.5%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16.5%에 불과하였다. 설계사들은 본인들의 직업 특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의무만 발생하고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업무 관련 사회보험은 본인들의 직무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무가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1호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에서도 대부분 요양급여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치유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현물로 제공한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항목을 추가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초기 산업재해 의료비의 비급여율은 2015년 기준 44.2%이다.

근로자는 산재보험 비급여 의료비를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근재보험, 개별요양급여제도,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첫째,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대체하는 제도이나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기준인 “필요한 요양”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통상 과실비율이 치료 종료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급여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셋째, 개별요양급여제도와 실손의료보험의 산재보험 비급여 의료비 지원 및 보상에 대한 홍보·안내가 미흡하여 이용이 미미하다.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별요양급여제도와 실손의료보험의 산업재해 비급여 의료비 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의 비급여 의료비를 사용자의 손해배상이나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경우 공정한 주체의 개입을 통해 과실입증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이 근로기준법

상의 요양보상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산재 보험의 요양비 보장성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

금리위험관리 수단으로서 자금차입 방식 확대의 필요성

임준환(선임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2호

2021년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 17) 시행을 계기로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금리 위험을 보험계약의 경제적 금리민감도를 기준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까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적인 자본확충 능력과 자금조달규제 등으로 보험회사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최근 들어 자금차입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선제적 자본확충을 용이하게 했지만 이러한 자금차입 방식은 금리위험 자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특히 자금조달구조(만기)도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금차입 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독일, 미국, 일본 등)의 보험회사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차입을 하고 있다.

자금차입 방식을 다양화하면 부채듀레이션 축소와 자산듀레이션 확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전통적인 금리위험 관리 방식보다 실효적이다. 예를 들어 단기 차입자금으로 장기우량채에 투자하면 부채듀레이션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자산듀레이션이 늘기 때문에 경제적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금차입 방식은 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등이 있으며 발행 방식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은 차이가 있다. 자금차입 방식 다양화는 자금차입의 확대로 이어져 보험회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 자금차입 확대는 보험회사의 레버리지를 높여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보다는 듀레이션 갭을 줄여 지급능력이 개선되어 오히려 보험회사의 채무불이행위험이 감소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 따른 재무건전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뿐만 아니라 가용자본 확충, 전통적 방식을 통한 요구자본 관리 등 다양한 자구적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쟁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2호

일본 국토교통성은 SAE L4 이하의 자율주행차(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운전손해배상책임연구회”(이하 ‘연구회’)를 2016년에 구성하여 현재까지 4번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연구회는 AV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자구제 관점에서 접근하고 AV 이용자의 이해와 사회의 수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회는 2017년 9월 26일 개최된 4번째 회의에서 AV 사고의 자배법 적용에 따른 다섯 가지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각 쟁점사항별 검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V 사고 책임주체로 운행공용자를 그대로 두고 AV 제조사 등에게 사고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구상하는 방안과 제조사를 책임주체로 추가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V 시스템의 해킹 사고는 운행공용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하며, 운전자 등의 신체사고를 타인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방안이다.

AV의 운행에 대해 운행공용자의 주의관리 의무의 정의와 지도, 인프라정보 등 외부데이터 오류나 통신차단 등에 의한 사고도 AV 구조상 결합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향후 AV 기술 발전과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일, 영국, 미국에서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제의 논의 및 결과를 검토하고 AV 이용자와 사회적 수용도를 감안하여 AV 손해배상책임법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AV 사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발표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개별 국가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제는 다를지라도 AV 사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본 등 주요국의 법률체계를 고려하여 AV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국내 AV 손해배상책임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

백영화(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3호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통된 원인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집단적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최근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집단소송제도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총 1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특히 금융소비자법안 중에도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들은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 방식만을 전제하고 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의 목적을 가장 실효성 있고 강력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대형 분쟁에서는 개별 피해자들이 자신의 제외신청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개별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대표당사자가 패소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

신이 피해자인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패소판결의 효력을 받아서 재판청구권이 박탈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집단소송제도를 정비한 일본 등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본에서는 2013년에 소비자 피해의 집단적 구제를 위한 새로운 민사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집단소송제도에서는 소송의 단계를 2단계로 진행하여, 1단계 절차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되어 기업의 금전지급의무를 확인을 구하고, 2단계에서는 금전지급의무 확인판결을 전제로 개별 소비자들의 채권을 확정한다.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패소판결의 효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지 않으며,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개별 소비자들이 가입신청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물론 일본식 집단소송제도가 정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본식 집단소송제도는 개별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식 방식에 비하여 집단소송으로서의 실효성이나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소송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의 능력 등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집단소송제도에는 다양한 제도 모델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다양한 입법례와 활용 상황, 모델별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전문보험회사 현황 및 시사점

임준(연구위원)·이소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4호

최근 중국은 ① 연금 및 건강보험 활성화, ② 상호회사 설립 허용, ③ IT기업의 보험산업 진입 유도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보험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결과로 2014년 19개이던 전문보험회사는 2년 8개월 사이 16개가 설립되어 35개로 증가하였다.

생명보험 전문보험회사 15개 가운데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는 7개, 건강보험 전문보험회사는 6개로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전문보험회사는 대부분 중국의 대형보험 회사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예를 들어 손해보험 부문 1위인 PICC는 PICC Health를 설립하였으며, 생명보험 부문 1위인 China Life는 China Life Pension을 설립하였다.

손해보험 전문보험회사에는 농업보험 전문보험회사, 온라인채널 전문보험회사, 보증보험 전문보험회사 등이 있다. 주요 주주는 생명보험 전문보험회사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이 제조업 등 보험이 아닌 다른 업종의 회사인데, 예를 들어 온라인채널 전문보험회사의 경우에는 IT기업이 주요 주주에 포함되어 있다.

비보험회사의 시장진입, 외국보험회사의 전문보험회사 설립 장려 정책 등으로 인해 중국의 전문보험회사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한 예로 2017년 10월 중국의 택배회사인 ZTO Express는 운송보험을 위주로 판매하는

전문보험회사 설립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최근 동향은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보험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보험산업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채널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해 IT기업의 보험시장 진입 유도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임태준(연구위원)·홍민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4호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은 가계의 경제적 곤궁과 빈곤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적시적기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비 지출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가계의 저축 유인을 감소시켜 국내총저축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보장률 70%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은 보장률 70%안 실행 즉시 10.8% 증가하며,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 30(60)년 후에는 현재 대비 43.9(53.7)% 높아진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은 즉시 0.7%p 상승하며, 인구고령화는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30(60)년 후의 보험료율은 현재 대비 4.2(6.6)%p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현 세대의 저축 확대에 총자본은 약 15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거나(현재 대비 21% 증가), 이후 시간이 경과하고 세대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총자본의 증가세는 둔화된다. 넷째, 총노동은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 예측되는 오버슈팅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12년이 경과된 후에는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 가능한 경제적 비효율은 대부분 인구고령화에 기인하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정책지지율은 만장일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경과와 과제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0호

국회와 정부는 당초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과 월납 모두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최고 세율 인상 및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비과세 축소 등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과세기반 강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저축성보험과 연계된 연금보험의 연금자산이 전체 개인연금의 63%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노후소득원이라는 점, 국민의 장기저축에 대한 유인이 감소한다는 점 등이 간과된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최종안은 당초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일시납 보험 비과세 한도는 1억 원, 월납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보험회사와 정부는 이번 소득세제 개편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디딤돌로 삼아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0호

2016년 12월 15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전까지 상승했던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인상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5년 말 미국 금리인상 시기 전후에도 관측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저성장 장기화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7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구조적인 하향추세에서 일시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 역전으로 인한 자금 이동 규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 현황 및 고도화 방향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0호

현재 보험사기 인지를 위한 모니터링은 보험회사와 금융당국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급심사팀에서 보험사기 인지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담당자의 경험법칙에 의존하고 있다. 보험사기 의심 건으

로 분류되는 대상은 ① 이전에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계약자의 청구 건이나 ② 비록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큰 청구 건 등이다.

한편, 보험회사 이외에 금융당국에 의해서도 보험사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패턴을 보이는 병원이나 자동차정비업체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Sparrow(2000)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평가해보면, 제한적인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만 이루어지고 있다.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 가운데 일부는 보험금 지급 이전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이후에 이루어져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향후 조직적 보험사기와 같은 복잡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시점도 보험금 지급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증가와 과제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1호

지난 2016년 10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연금전환 종신연금을 연금상품으로 오인하여 가입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들은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행을 개선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 기능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종신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소득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옵션이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는 상품의 개발을 제시했으며, 이후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이 출시되어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적합한 상품이 아니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니즈변화에 대응하여 노후소득보장에 집중한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단기적인 영업실적보다는 국제회계기준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 종합적인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1호

국토교통부는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도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용 및 셔틀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 일반 도로 전체로 확대되고 특히 도심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게 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의

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및 사고 관련 데이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안)에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장치 및 주행 관련 기록을 경찰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이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는 사고 발생 시 경찰의 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충돌 직전 30초 및 충돌 후 5초간 또는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의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 사례를 참고하여, 임시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경찰이 신속하게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 검토

최장훈(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1호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재정 지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AAM)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자동조정장치는 크게 연금급여, 은퇴연령,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조정장치가 있으나 국제통화기금은 이 세 가지 중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급여를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자동조정장치는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와 세금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문제 등을 야

기할 수 있으나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된다면 기금고갈시점을 연장할 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연령이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정도 연장해 줄 수는 있으나 재정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보다는 보험료나 연금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나 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재정 안정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인구구조의 안정화이다. 인구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료 또는 연금급여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

이정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2호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운전자 중 6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5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58% 증가한 반면, 전체 운전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 운전자는 7%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비중 증가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는 저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다. 2015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는 2006년 대비 약 20% 감소하였으나, 50대 교통사고는 71%, 60대 이상 교통사고는 약 167% 증가했다.

고령자 교통사고의 특징은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범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 강화 및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판의 시인성을 개선해야 한다. 인지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개발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사고 한 건당 중상자 수의 증가는 고령운전자의 손해를 추세변화를 의미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동차 보험요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백영화(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2호

2017년 1월 현재 1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소비자 권리 강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 시점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엄격히 규율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가입 시 비례분담 원칙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단계 등에서 보험회사가 설명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장애와 건강 통계』를 통해 본 장애인 건강위험의 특징과 활용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2호

최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간하였다.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및 검진 결과, 주요 질환, 의료이용 및 진료비, 사망률, 사망 원인과 사망 연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통계가 부재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또한 장애인은 성, 연령,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건강상태, 의료이용, 사망률이 매우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라서 일률적으로 장애인 위험률을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일부 민영보험회사들이 장애인전용보험을 통해 사망과 암 그리고 연금을 제한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유질환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성·연령·장애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10대 사망원인은 일반인과 유사하나, 사망원인별 조사망률은 장애인이 전체 인구보다 3~6배 정도 높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특성에 따른 사망률, 유병률, 진료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와 건강 통계』를 위험률 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와 고려사항

정원석(연구위원)·마지혜(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3호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하여 연금저축 알림서비스의 정보전달 내용과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서비스는 보고 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 간격이 발생하였으며, 예상연금액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선된 알림 서비스는 수익률 및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발송하도록 하여 수익률 보고 빈도를 강화하고, 수익률보고서에는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을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이러한 서비스 강화 조치로 가입자는 연금저축

의 수익률 및 예상연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가입된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 혹은 여타 연금저축 수익률과 비교하여 제시한다면 가입자의 연금자산 관리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RBC 비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

김해식(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3호

최근 보험회사의 RBC 비율 하락은 금융당국의 자본규제 강화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감소라는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위험계수 상향 조정이 2016년 말까지 진행된 데 이어 2017년에는 금리연동형 계약과 변액보험에 대한 금리위험 산출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나 보험회사 RBC 비율(=가용자본 / 요구자본)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둘째, 보험회사 가용자본은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보유채권의 평가이익과 증자가 그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금리상승은 보유채권의 평가이익을 줄이고 있어서 가용자본의 감소와 RBC 비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금리상승 환경에서 채권 평가이익은 줄어들고 채권발행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렇듯 기존 자본확충 수단에 제약이 커진 만

کم, 보험회사는 보다 보수적으로 자본을 관리해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은 장기적인 저금리 추세를 염두에 두고 재무건전성 로드맵을 추진하되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재무건전성 로드맵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성과

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3호

2013년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이 상승하고 있다. RAROC은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위험대비 이익률을 의미하며, 이 값이 높을수록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RAROC은 2013년 9.7%에서 2016년 9월 13.6%(연율화)로 상승세이며, 특히 대형사와 외국사의 RAROC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RAROC 상승의 요인으로는 위험손해율 하락에 의한 보험부문 이익 증가를 들 수 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본격화된 생명보험회사들의 인원·점포 감축에 의한 비용 절감도 최근의 RAROC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회사들의 최근 사업효율성 제고는 손해율 개선 등 질적 개선과 임직원·점포 감축을 통한 양적 개선을 병행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질적 개선을 통한 RAROC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방향 및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이아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3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확대 및 감세정책과 더불어 금융규제 완화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도드-프랭크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및 영업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되었고 금융기관의 실물지원 능력 및 의지를 크게 위축시켜 미국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주요 경제 관련 장관 인선에서 규제 완화 및 감세를 지지하는 기업인 출신(월가 및 대기업 등) 인사를 다수 지명하였다. 또한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2월 금융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하고, 2017년 4월 예정된 오바마 정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인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강화조치’ 시행을 연기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도드-프랭크법」을 대체할 구체적인 금융규제개혁 법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이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우선 정책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적 협력 및 공조가 약화되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평가와 제언

정원석(연구위원)·마지혜(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4호

금융당국은 노후소득원 준비를 위한 사적연금 설계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본 서비스는 유용한 연금저축 정보제공 서비스는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 알아야 하는 연금저축의 개요 및 특징, 소비자 유의사항, 절세 노하우 등 연금저축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안내하며 상담자가 원할 경우 금융전문가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저축 설계 정보는 연금저축 가입을 유인하여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 범위를 IRP와 다른 사적연금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는 가입자의 연금저축 선택과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상품 판매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 일괄면제규정 일몰과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4호

보험업의 특정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일괄면제규정(BER)이 2017년 3월 31일 일몰과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EU는 보험업 공동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

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법령의 제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사회 규칙을 1991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사회 규칙에 근거하여 일부 보험업 공동행위에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1993년부터 시행하여 왔고,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이를 연장하였다. 하지만 EU는 일괄면제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몰 폐기를 결정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모든 보험업 공동행위는 경쟁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는 보험업 공동행위도 다른 산업과 같이 경쟁 촉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법의 틀 안에서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보험업법 제125조에서 규정한 상호협정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EU의 일괄면제규정 폐기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상호협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되 보험회사의 법률 리스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 리스크와 해외사업 지역다변화

전용식(연구위원)·이소영(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5호

2016년 7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경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자국 산업에 영향이 미미한 관광, 문화콘텐츠, 유통,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 사례에서 나타난 중국의 관광 분야에서의 경제적 압력은 약 2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압력 조치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중국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는데, 해외사업 지역다변화를 통한 중국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

연성보험사기와 행동경제학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5호

전통적인 경제학에 의하면, 범죄행위는 ① 범죄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 ② 발각될 가능성, ③ 체포되었을 때 예상되는 형량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경제학자인 Dan Ariely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범죄결정이론이 사소한 거짓말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결과를 연성보험사기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연성보험사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지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나 기회가 되면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연성보험사기는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도덕성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경제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형량 강화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대책은 연성보험사기 억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성보험사기 대책으로는 홍보·교육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향후 연성보험사기 억제정책 개발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심리학 분야 전문인력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자산관리 대중화시대에 대비할 필요

최정훈(연구위원)·임준원(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6호

최근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자산관리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일임, 자문, 신탁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산관리 규모가 2013년에서 2016년 동안 연 13% 증가율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산관리 중 자문은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고객은 소득계층에 따라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어 중상류층 시장에서는 단순한 보험가입보다는 다양한 투자상품과 상속·절세 등에 대한 자문니즈가 강하다. 특히 최근 보험계약자는 고령화 및 저금리에 직면하여 보장성 수요뿐만 아니라 은퇴 설계, 재무 상담, 세제혜택 등 종합적 투자자문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회사가 개인 투자자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보험가입 유지율 향상, 투자자문 수수료 체계의 다양화, 그리고 보험가입 만족도 및 유지율 제고에 기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투자자문업을 겸영업무로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실제로 투자자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신 수익원으로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인 투자자문의 자산관리시장에 인가를 받아 공식적 진출을 통한 조직적인 대규모의 사업전개가 필요하다.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강성호(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6호

2014년 연금세제 개편(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이후 중산층(총급여 기준 5,500만 원 이하)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은 감소하고 그 이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산층 이하 계층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부액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로는 과세미달자 규모 증가, 낮은 세액공제율, 수수료 인하 외에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지수준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조사(2016)에 의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라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는 72.7%였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아 오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로, 제도 변화가 없었던 대체가능한 금융상품은 가입

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연금세제 및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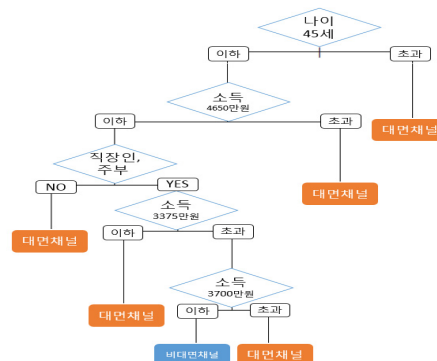
비대면채널 자동차보험 가입자 특성 및 시사점

기승도(수석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6호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CM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추세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을 예상된다. 과거 CM채널을 포함한 비대면채널 가입자 특성을 2016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보험연구원 발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나이는 약 44세 미만, 소득수준은 약 3,700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주로 비대면채널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한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7호

148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 기준 수익성이 금리하락 추세와 병행하여 하락하고 있다. 금리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포화로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보험회사들의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수료 수익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 수익은 변액연금 및 보험상품, 자산관리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는 보험회사에게 이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에게는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금융위험을 복합적으로 관리하여 장기 자산 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헬스케어서비스와 건강나이 도입

김석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7호

헬스케어서비스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Bio 기술의 결합으로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상품의 개발

및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은 초보단계 수준에서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험금부금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또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나이 기준 보험료 산출 방식은 갱신행 상품 또는 간편심사 상품에서 발생하는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이 어려운 고위험군도 합리적인 보험가격 지불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헬스케어서비스가 건강나이를 기반한 보험상품에 도입되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정부, 보험회사,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줄 것이다.

2016년 11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기승도(수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7호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2.6%로 2014년보다 약 6.2%p 개선되었지만, 예정손해율(약 78% 수준으로 추정)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적손해율 개선 효과는 사고발생률 감소와 보

험료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인상효과는 보험금 원가인 1사고당 손해액을 상쇄하는 수준이었다. 예정손해율보다 높은 현 실적 손해율 82.6%는 여전히 적자가 예상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운행행태별 요율차등화제도 도입, 운전 중 핸드폰 사용(포켓몬 고 게임 사용) 단속 강화 등 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016년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감 요인별 분석

(단위: 천 원)

구분	2014년 12월 (A)	2016년 11월 (B)	증감률 (C=B-A)
손해율	88.9%	82.6%	-6.2%p
사고발생률	45.5%	42.2%	-6.4%p
대당보험료	639	702	-8.7%p
1사고당손해액	1,249	1,374	8.9%p
기타복합요인	-	-	0.0%p

- 주: 1) 전체 보험종목을 합산한 손해율 분석임
 2) 사고발생률, 대당보험료 및 1사고당 손해액의 값은 전체담보를 단 순합산한 값으로, 실제 값이 아니며 손해율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의의 수치임
 3) 서영걸(1992), 『자동차보험 손해율 구조변화 분석모형』,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분석함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회적 인식 개선

이정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8호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강력범죄 대부분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하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전체 범죄에서 그 비중이 미미하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률은 낮

은 상태이다.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미치료 기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 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영보험도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법제개편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민영보험의 차별은 개선된 상태이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는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경험통계 부재로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료급여 통계와 같은 국민통계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에 따른 다양한 인수기준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민영보험에서 정신질환 보장은 개선될 수 있다.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8호

정보통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일상적 활동의 편의성 및 효율성과 이에 동반한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위험을 전가하는 사이버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향후 사이버보험 시장의 확대가 전망된다.

사이버리스크는 사이버 공격에 의한 또는 우발적인 정보통신체계의 기능장애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재무적 손실이나 평판의 저하를 가져오는 리스크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사이버보험은 개인과 기업이 사이버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위험 등을 보험시장을 통해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이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리스크 경감유인을 제공한다.

사이버보험 시장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 단독보험의 형태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도 공급되고 있다.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들로는 불충분한 경험통계, 독립적이지 않은 리스크, 사이버 손실에 대한 인식 결여, 사이버보험의 보장위험 및 상품의 복잡성 등이 있으므로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이버리스크 관련 통계의 표준화 등의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강국인 우리나라도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앞에서 제기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행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8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사기 조사전략 가운데 하나는 이제까지 적발된 보험사기를 유형화하고 그러한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는 보험사기 유형이 변화할 경우 새로운 유형을 조기

인지하여 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세(탈세), 안보(테러) 등과 같은 위험통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세무조사 분야의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탈세혐의자에 집중한 세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초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인 Tax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이하 ‘TCMP’)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성실납세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투입 비용 대비 효과 등의 문제로 198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TCMP 폐지 이후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00년에 다시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가 부활하였다.

보험사기 분야의 경우 현행 조사전략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 사례를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산림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9호

지난 5월 6일 강릉 및 삼척 일원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으며 화재와 병충해 등 산림재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최근 들어 3대 산림재해인 산불, 산사태와 병충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적 산림자원의 훼손과 임업인의 재산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2%가 산림인 세계 4위의

산림국가로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 수요도 크게 늘면서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제도를 활용한 산림자원에 대한 위험 관리는 미비하다. 현재 산림화재에 대한 정부정책은 자율적 예방이나 관리보다는 피해복구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정책에 그치고 있다. 산림재해보험은 산주 등 보험가입자가 산림재해에 따른 위험을 보험시장을 통해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 과정에서 산불 등 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유인을 제공한다. 정부도 보험을 통한 산림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을 산림조성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산림자원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산주의 자발적 위험관리 노력을 제고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며 보험요율과 보험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임목표준금액의 객관적인 산정과 지역별 위험의 차등화 등을 위한 기초적 통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와 국고채 금리

전용식(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9호

최근 수출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201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9%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할 경우 금리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보다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강세가 금리상승 압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절상 기대와 국가 위험프리미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축소되어도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부문 외화 유동성 증가와 양호한 대외건전성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도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IT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외화건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이 향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국고채 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 수출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국고채 금리 등 장기 시장금리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최근 판례 및 법 개정

백영환(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19호

대형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 뒷면에 소위 ‘1mm 깨알글씨’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7년 4월 7일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함에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응모권 뒷면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동의 관련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해당 경품행사의 광고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고 이에 고객들은 단순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2017년 4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해당 동의서상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최근 판례 및 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고객의 인식가능성과 가독성이 높은 방법에 의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0호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생활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

건강생활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미국에서 건강생활서비스의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건강위험군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어려워 위험군에게는 오히려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군이 위험군보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더 높은 일종의 역선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생활서비스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선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위험군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건강생활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건강군에서 위험군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인센티브 설계 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의미

전용식(연구위원)·이소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0호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중국의 국사신용등급을 5월 24일 Aa3에서 A1으로 강등하였는데, 평가시점이 2016년 하반기 중국의 자본유출 감독관리 강화조치 이후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중국의 자본수지 적자가 확대되었

고 2016년부터 중국 정부는 자본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일련의 자본유출 감독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자본유출 규제와 무디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중국의 기업부채와 은행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암치료 기술의 발전과 영향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0호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기존의 치료방법들은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과 같은 암치료법들은 초기암의 치료만 가능하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암세포 이외에 정상세포까지 파괴되는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 맞춤형 치료법인 면역치료법의 등장으로 향후 암치료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면역치료법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법은 CAR-T 치료법으로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추출한 후 면역세포가 특정 암세포에만 반응하도록 변형하여 체외에서 증식시킨 뒤 이를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이다. 아직까지 면역치료법은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 성공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혁신적인 개인 맞춤형 암치료 기술의 개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혁신적인 암치료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암보험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질병치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방안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1호

보험산업 내부에 집적된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외부에 집적된 정보도 함께 사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으나 현재는 외부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한편, 보험사기 방지 목적에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내부기관과 외부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조항이 담겨져 있는 Serious Crime Act 2007(이하 ‘SCA’)을 제정하여 범죄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SCA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보험산업의 관점에서 보험사기에 국한해서 정보공유 이슈를 접근하였는데, 영국사례에서처럼 좀 더 광범위

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법을 취할 때, 정보공유의 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범죄 간 연관성이다.

보험회사의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동향

조영현(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1호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은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IFRS 9 시행 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회사의 저신용등급 대출채권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관찰된다. 또한 운용자산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은 회사별 편차가 매우 큰 특징이 발견된다.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 확대는 저금리환경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회사의 경우 자본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이 상당히 높아, IFRS 9 시행 이후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자본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회사들은 IFRS 9 시행에 앞서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 확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대출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선제적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들은 IFRS 9 시행을 가정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하여 자본 대비 감내 가능한 수준으

로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2호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일명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수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2017년 5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고객에게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향후 보험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되는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관련 규정 정비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정도라면 현행 보험업법하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만약 인공지능의 분석결과 등을 사용하여 사람이 모집행위를 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에게 보험모집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자체를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겠다.

미국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2호

최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비은행 기업의 은행업 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 소유 은행들의 2016년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 소유 은행들은 모회사인 보험회사 고객의 연금계좌 운용, 신탁·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일부 보험회사들은 은행 자회사의 예금·대출업무를 축소하고 신탁업 중심의 저축은행(Trust Only Thrift)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기업의 사업 모형에 적합한 은행업 겸업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2호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낮은 보상한도의 생산물배상책임(PL)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PL보험이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

806개 외감대상기업의 PL보험 가입 실태를 조

사한 결과 367개 기업(45.5%)이 보상한도 10억원 이하의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10억원 이하 보상한도의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 중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업종의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제조기업이 충분한 보상한도의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류 사례와 같이 피해자들이 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제조 기업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PL보험의 보상한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정부당국은 기업들이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 차별금지 조항의 영향 검토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3호

2017년 1월 25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험 직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영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사적 영역이고 보험계약 인수는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 보험계약

을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보험가입 거절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더라이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될 경우,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소고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3호

새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보장 대상자를 확대하고 치매와 관련된 부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치매환자 한명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약 2,03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와 이에 따른 환자 본인과 가족의 부담, 그리고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공적 지원수준을 고려 할 때 새로운 치매환자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제도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역시 치매환자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정책이 원활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중증치매 위주의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금융선택법안의 비금융그룹 규제완화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3호

미국 하원을 통과한 금융선택법안(Financial CHOICE Act)은 도드프랭크법의 주용 내용인 대형 비은행 금융그룹(SIFI)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폐기하였는데, 그 배경에 대한 이해는 최근 비은행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SIFI 지정권한을 갖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조직구성이 편향적이고 SIFI 지정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고 자의적이어서 행정권한의 남용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FSOC의 조직구성은 보험그룹 등에 대한 SIFI 지정 시에도 보험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러한 SIFI 지정과정의 문제점은 글로벌 보험그룹인 MetLife의 SIFI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소송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규제의 도입 과정에서 규제를 받는 금융권역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이들 전문가의 의견이 규제도입 과정에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반영

되어야 한다. 금융규제의 도입 후에도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규
제당국과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시장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금융선택법안의 하원통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 일변도의 금융규제 기조를 흔들 수도
있으므로,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향후 변화추이에 대한 면밀한 감시도 필요하다.

전세금보장상품 판매 이슈 검토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4호

매매가격에 근접한 전세가격과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임차인 보호를 위
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이 커지자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임차인이 적시에 적합한 전세금보장상품을 인
지·구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
금보장상품의 판매대리점 또는 홍보 창구로 적
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기준 65
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
장신용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2017년 말까지
350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가맹대리점으로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 계약이라는 주요 상품에
부가하여 전세금보장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극적인
가격비교 및 탐색기회 부족, 정보과다, 결정피로증
등으로 인해 임차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임차인이 전세금보장상품의 가치를 제대
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판매사가 임차인이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전세금보장상품을 적극적
으로 모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차인이 전세금보장상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
한 전세금보장상품 판매 및 홍보 교육과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검토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4호

보험연구원은 2017년 7월 12일 표준약관의 장
해분류표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장해분류
표는 장해급여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면제
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중요
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근 12년간 장해분류표가 개정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험업계는
장해분류표 개정을 요청하였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장해
분류표에서 장해판정기준이 모호하거나 의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장해지급률이 장
해 정도에 비해 적정하지 않거나 장해판정기준
이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으로 평가된
다. 이처럼 장해판정 기준의 객관성과 장해 지
급률의 합리성이 향상될 경우 보험회사의 효율
성과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효

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부적절한 지급률 감소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빈번한 장애분류표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효율성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장애분류표 운영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사고위험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4호

2020년 우리나라에서도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시스템의 판단에 따라 자율주행과 일반주행이 수시로 전환되는 형태이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과도하게 신뢰한 나머지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는 동안 주변 환경 및 운행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수동주행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16년 발생한 테슬라 모델S 사망사고도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과도하게 신뢰한 결과 발생한 사고였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레벨3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인간이 운전 전제 관여하지 않는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제어권 전환을 전제로 하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 또는 운전자의 지나친 부주의로 인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기술 자체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은 물론, 자율주행모드 운행 중 또는 제어권 전환 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5호

빅데이터는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소비자의 위험 정보를 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보험상품의 설계 및 운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보험산업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보험에서 데이터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빅데이터가 개인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요율화(personalisation)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risk sharing) 기능은 약해질 수 있다. 즉,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과거에 비해 위험을 세분화하게 되는 경우, 이전에는 동일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던 일부 소비자들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어 평균위험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아예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위험군이 보험보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격차별과 위험공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빅데이터의 유용성을 고려함에 있어 단기적인 이익이나 성과에만 주목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미 채권시장 변화와 보험회사의 캐리트레이드 전략

임준환(산업연구원·이선주(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5호

최근 들어 국내 금리는 모든 만기에 걸쳐 상승하고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금리가 이런 특징을 보이는 데는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이 자국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기대심리보다는 미국적 요인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반영한다. 향후 미국 금리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도 상승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차는 확대될 것이나 그 차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통화긴축기조는 점진적이고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차의 확대 가능성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보험회사의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전략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리트레이드란 저금리 통화로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고금리 통화에 투자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말한다. 한편 캐리트레이드

의 실행조건이 만족된다고 해서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캐리트레이드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금리차이의 위험, 환위험, 환헤지 시 금리위험 등에 대한 제반 위험관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포인트제도 활용 전략

김세중(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5호

최근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포인트제도 도입이 활발한 가운데 일부 비금융그룹 보험회사에서도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그룹에 속한 보험회사 이외에도 M생명회사의 경우 적립 포인트 운영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 가입 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전용 보험회사인 L사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아이디어 제안이나 설문에 참여할 경우 보험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가 포인트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는 주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해외에서는 포인트 제도를 브랜드 충성도 및 인지도 제고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위험관리 유도, 위험에 대한 니즈 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게임의 요소와 디자인을 교육 또는 마케팅과 같은 실제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게임화(gamification)라 하며 보험산업에서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도입 중인 포인트 시스템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전략

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향후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종류별 예금보호 금액의 차등화 필요성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6호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1998년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과 상호저축은행을 아우르는 통합 예금보호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예금보험에 가입된 금융회사 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시에도 보장성이나 저축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성격에 관계없이 보험회사 단위로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된다. 이는 보험상품이 갖는 고유의 보장 기능을 간과하고 은행의 예금과 보험의 적립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예금과 달리 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적 금융상품으로 조건부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며 보험금도 손해사정을 거쳐 사후에 확정된다. OECD 주요국도 은행 대상 예금보험과 별도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도 사망보장과 연금 등 보험 종류별로 보험회사 지급불능 시 보장액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예금보험제도상에서 금융상품별 및 보험종류별 예금보험금의 지급액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구매한 금융상품의 기능

에 맞추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성과와 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6호

최근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우월한 사용자 편의성 및 금리 조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말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편의성과 낮은 대출금리를 앞세워 영업개시 일주일 만에 15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수신 6,530억 원, 총 대출 4,970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원리금상환가능성이 높은 고신용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만 일반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전략과 고객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고 금리에 민감하며 신용등급이 높은 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소비자행태 변화가 보험산업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상승과 생명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 관리

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7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금리하락 추세가 2016년 말부터 반전되는 양상이며, 장기금리의 점진적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중장기적 금리상승이 전망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듀레이션 갭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 보다 큰 생명보험회사는, 금리상승 시 자산 듀레이션 및 금리부자산 비중을 축소시켜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자본 증가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듀레이션 갭 확대 전략은 부채가 원가법으로 표시되는 현행 회계제도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듀레이션 갭 확대 전략은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RBC 제도 강화와 부채시가평가제도(IFRS 17 및 K-ICS)를 고려하면, 금리상승 전망에 의한 듀레이션 갭 확대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금리의 점진적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RBC 제도 강화 및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대응하여 자산 듀레이션(혹은 금리부자산 비중) 확대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이코노미와 보험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7호

데이터 이코노미의 경우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유출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데이터 이코노미에서의 배상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사례를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자동차산업 초창기에는 배상자력의 입증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었으나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증가하게 되자, 1929년 자동차 등록 시에 배상자력의 입증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929년에 도입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949년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였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도입 이전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자, 1956년 의무보험을 도입하였다.

자동차보험 사례에 근거하여 추론해보면, 데이터 이코노미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그로 인해 프라이버시 피해 규모도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개인정보보호규제와 같은 안전규제의 강화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배상체계의 구축이 필요한데, 자동차보험 사례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치매와 우울증의 관계

이정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7호

162

의학의 발전 및 출산을 감소에 따라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면서, 사망의 원인질환이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 중 치매의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치매 발병의 다양한 위험요인 중 우울증이 있으며, 치매 환자들은 과거 병력으로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80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우울증 환자는 50~70대에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시한 이후, 새 정부는 그 일환으로 치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울증이 치매의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우울증뿐만 아니라 치매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공·사건강보험이 향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울증과 같은 치매의 전조 정신질환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

임준환(선임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8호

최근 국내에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가치척도, 교환의 매체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 기능(실수요)뿐만 아니라 가치저장과 관련된 기능이라는 투자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하에서는 후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상화폐는 투자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가상화폐는 예측가능성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둘째, 단독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자산의 일부로 편입될 경우 낮은 상관관계로 분산효과를 갖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는다. 첫째, 가상화폐는 유동성이 낮은 이유로 손실위험이 높으며, 둘째,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투기적 동기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상화폐가 투자자산으로서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실수요 거래동기가 많아야하고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보호 및 거래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기업의 해외 금융회사 M&A와 소유·지배구조

전용식(연구위원)·이소영(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8호

최근 중국의 해남항공그룹(HNA)과 안방보험그룹(ABG)이 독일 알리안츠그룹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거절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독일 알리안츠그룹의 신규 자금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두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이슈가 거절의 주된 이유이다. 해남항공그룹 및 안방보험그룹은 모두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불투명하여 해외시장에서 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를 받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하여 공격적인 해외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는 중국 기업의 해외 M&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8호

국토교통부는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9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대부분의 한방물리요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상대방차

점수 없이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어 왔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7개 한방물리요법에 상대방차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 부재는 한방물리요법의 청구단가 상승 및 진료비 급증과 의료기관 간 높은 진료비 편차를 초래하였다. 금번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신설은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1조 6,586억 원 중 한방물리요법 진료비(290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미미하기 때문에, 진료수가 신설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으나 적어도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압력은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금융자산에 따른 즉시종신연금 선호도 차이

최장훈(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9호

우리나라는 최근 낮은 이율로 인해 개인연금 가입이 정체되어 있으며 금융자산 대비 개인연금 자산 비중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다.

정체되어 있는 연금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고객의 연금 선택에 영향을 주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고연령층에서는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시점

에서의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입의향이 낮아지는 것은 세대별 선호도에 차이가 있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에 대비한 유동성 자산의 중요성이 연금보다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0~69세에 대한 금융자산에 따른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 비율은 금융자산 1분위 24.2%에서 5분위 43.2%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회사와 정부는 연령과 금융자산 수준에 따른 선호도 차이에 대한 원인과 니즈 파악을 통해 즉시종신연금시장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즉시종신연금에 대한 홍보 또는 중도인출기능 강화 및 보장기능을 추가한 연금상품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고연령층에 대한 연금교육과 금융자산이 낮은 계층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 주택소유자 증가와 주택연금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29호

최근 발간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남성 주택소유자 비중(56.9%)이 여성(43.1%)보다 높지만, 여성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소유자 중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이 여성 인구 비중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50대 연령에서 여성 소유

주 증가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50대 주택소유자 증가인원 7만 5천 명 가운데 6만 9천 명인 92%가 여성이었으며, 40대는 주택소유자 증가인원의 80%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여성 주택소유자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1인 여성가구의 주택소유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별, 성별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50~69세 남성의 자가비율은 17%인 반면, 여성의 자가비율은 35%에 이른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구성을 보면 부부 61.2%, 독신녀 32.2%, 독신남 6.6%로 1인 가구 중 여성 가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향후 여성 1인 가구가 주택연금의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이 미래 노후소득의 재원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자산 축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상품구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김해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0호

새 회계기준(IFRS)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보험회사가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금리 환경에서 지급여력제도 강화에 대응한 국제 위주의 장기자산 비중 확대는 낮은 투자수익률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이자마진의 개선

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험마진 등 다른 수익원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성장성이 좋은 질병보장(건강)보험은 아직 보험마진 전망이 불투명하고, 보험마진이 검증된 종신보험은 성장성이 정체되면서 시장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보험회사가 보장성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해법이 제시된 데에는 그동안 보험산업 내에 누적된 성장 위주의 ‘시장흐름 따라하기’ 방식의 상품 전략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의 소비자 지출 구성의 변화를 볼 때,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연금 및 변액보험 비중 확대가 보장성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품구성을 선택하든 보험회사는 종신보험의 성장 정체, 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험료와 손실 지속 가능성, 연금의 장수위험, 변액보험의 낮은 평판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피해자 구제방안

최장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1호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발생하는 상해·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견종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맹견(猛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求償)하는 보험으로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이고 견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당국과 국회는 효과적인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등록제 의무화 이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1호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과정에 환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망사고의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질병이나 상해 등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규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1호

2016년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개선 이후 하락하던 손해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최근의 손해율 상승은 여름 강수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안정적이던 손해율 추세와는 대조적이어서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인하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인상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대물보상 제도개선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보상 제도개선 효과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

도개선이 필요하다.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과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임준현(산업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2호

최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상 기대로 인해 전 만기에 걸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금리기간구조 상승과 더불어 금년 9월 말부터 국고채 20년물, 30년물 금리가 국고채 10년물 금리보다 낮아지는 장기물 역전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 원인으로 외국 채권 투자자들 및 은행 및 증권사의 10년 이하 채권매도와 보험회사의 10년 초과 장기물 수요 증가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보험회사의 국채 장기물 수요 증대 원인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금리위험관리 필요성 증가, 추가 금리상승에 대한 RBC 비율 하락 방지 등이 있다. 금리상승은 금리역마진 축소를 통해 투자영업손실을 축소시켜 수익성을 제고시킨다. 그러나 금리상승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보유채권의 평가손실로 보험회사의 RBC 비율을 하락시키기도 한다. 특히 RBC 비율이 낮거나 보유채권의 회계상 분류를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한 보험회사들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부담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금리상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에게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율을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은 2021년 새로운 회계·건전

성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력이 취약한 보험회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방안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2호

인터넷, SNS, 휴대용 통신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사이버상에서 확산되어 특정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의도적으로 공개하여 다수로 하여금 특정인과 그 주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허위정보 및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여 특정인 및 가족들에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특약형태로만 판매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상품이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상품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도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

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김석영(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3호

보험은 사고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한 위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통계의 집적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 위험에 대한 경험 통계가 부족할 때 일본 등 해외 통계와 국민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경험 통계가 축적된 이후에는 회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7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보험회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신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를 활용한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개발이 용이해졌다.

한편 일본의료데이터센터(JMDC: Japan Medical Data Center)는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건강관리플랫폼 현황과 고려사항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4호

168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질병의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수집·분석·가공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한 건강관리플랫폼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애플의 HealthKit, 구글의 Google Fit, 마이크로소프트의 MS Health, 삼성의 Sami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및 보급에 착수하였고, AIA 생명은 건강관리서비스인 AIA 바이탈리티에 SK C&C의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건강관리플랫폼은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저장·관리하고,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송, 데이터 분석,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들을 수행한다. 건강관리플랫폼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표준화된 데이터 집적이 필요하며, 플랫폼 간 통합과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적 표준에 맞춰 의료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개인 건강정보 보안강화와 적절한 활용,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활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윤성훈(선임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4호

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 서비스수지가 적자(혹자)인 국가는 대부분 상품수지가 흑자(적자)이다. 예를 들면, 일본, 독일, 우리나라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는 상품수지가 흑자인 반면 서비스수지가 적자이고, 이와 반대로 미국, 영국 등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는 상품수지가 적자이나 서비스수지가 흑자이다. 둘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경우 적자 또는 흑자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추이와 우리나라의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향후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 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4호

169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소득원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13%에 불과하며 평균납입액 역시 261만 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특히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저소득층 연금저축은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로 저소득층 과세미달자 증가로 인한 연금저축 납입유인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저소득 과세미달자에 대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과세표준이 0원이더라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환급해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저소득층 연금저축이 2013년 수준으로 제고될 경우 증가하는 연금자산을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의 연금자산은 1조 1,845억 원이 축적되며, 해당 계층 납입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약 1,77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 되었다.

고령화리뷰 포커스

170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의 원인과 개선 방안

이태열(선임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5호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일시금으로 인출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이 미흡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퇴직연금 수령자 중 일시금 수령자의 비중은 무려 98.5%에 이르러 장기 연금 수령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시금 인출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연금 수령 인센티브, 퇴직연금의 짧은 역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인센티브의 문제를 보자.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나, 일시금 등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금이 허용되는 다양한 특례 조건이 부여되고, 특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연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의 역사에 대해서 보자.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수령 조건은 가입 후 10년인데, 현재 대부분 직장들의 퇴직연금 도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일시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일시금 수령자에게 갈수록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도 일시금 선호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연금화 인센티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연퇴직소득세 등 일시금에 대한 과세를 무겁게 하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일시금 수령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화가 발생하기 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려는 유인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도 일시금 선호 심리를 축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연령 사망률 변화 추이 국제 비교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5호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생명표에서는 사망률에 대한 최종상한연령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고연령 사망률의 장기 변화추이 분석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 60세 남녀의 기대여명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 장수국가인 일본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은퇴자들의 예상보다 빠른 기대여명 증가는 종신연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에 있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연령 사망률 변화 추이 분석은 중요하다.

사망률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고연령의 사망률 수준이 이미 OECD 주요 장수국가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며, 이는 고연령 사망률의 급격한 개선추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사망률 개선도 비교결과 우리나라 고연령의 사망률은 60대와 70대에서 OECD 주요 장수국가에 비해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개선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 우리나라 고연령 사망률은 OECD 주요 장수국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994년에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고연령 사망률 개선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OECD 주요 장수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험회사는 자사의 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보험개발원은 전체 보험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참조위험률로 활용되는 경험생명표를 작성한다. 연금사망률은 2회 경험생명표부터 작성되고 있으며, 연금가입 시점과 연금 개시시점의 차이로 인한 사망률의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생명표의 연평균 사망률 개선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는 관련성을 가진다. 8회 경험생명표에서는 사망률 개선율의 추세를 분석하여 국민생명표 사망률의 연평균 개선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국민생명표에서 계산된 사망률 개선율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둔화되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급격한 사망률 개선추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망률 개선 추이를 예측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을 제공하는 국가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사망률 산출 시 유연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망률의 과거 추세분석뿐만 아니라 주요 장수국가들과의 국제비교와 같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국민생명표상의 사망률 개선은 경험생명표 작성 시 반영되어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는 국민생명표 개선률을 경험생명표에 유연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생명표의 개선으로 고연령 사망률의 장기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으나 90세 이상 고연령 데이터의 안정성 제고와 최종상한연령의 추가확대가 요구된다.

의료서비스 가치를 고려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 검토

오승연(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5호

공·사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이용자로 하여금 비용을 의식하게 하는 본인부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자기부담 의료비가 높아지면 건강에 필요한 의료를 과소이용(underuse)할 유인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오히려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기존의 건강보험 비용분담 제도는 의료서비스

를 이용하는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줄이는 부작용도 있었다. 가치기반 보험설계란 특정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권장 혹은 억제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의료서비스의 가치는 치료효과와 비용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된다.

의료비 상승의 주요 요인인 만성질환은 예방과 치료에 따른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투약순응도(Adherence to medical therapy)가 낮은 편이다. 또한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가 필수적 의료의 과소이용을 초래하는 경우는 급성치료보다는 만성질환 치료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비용대비 치료 가치가 높은 만성질환(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우울증, 천식의 치료제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해 낮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제도를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치기반보험설계 제도를 시행한 다수의 사례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줄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었으나 전체 의료비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보험자가 일부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가치기반보험설계(본인부담 차등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큰 특정 질병군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범적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공급자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가치가 충분히 높다고 검증된

만성질환 관련 치료제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본인부담 삭감 혹은 감면을 시행해 볼 수 있다. 본인부담 차등제도는 원칙적으로 민영 실손의료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간에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당장에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 가치기반보험설계 제도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질병군 및 환자군의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와 지불시스템을 연계시킬 수 있는 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본인부담 차등제도가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적용될 때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

조용운(연구위원)·백영화(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6호

건강관리서비스는 질병관리서비스와 건강생활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질병관리서비스는 질환군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군이 아닌 건강군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서비스는 물론 건강생활서비스도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건강생활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분리하여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일반적으로 4개 단계에 걸쳐 제공된다. 첫 번째,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

강수준 계층화, 두 번째,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수준 계층화 결과를 기초로 첫 회 상담을 통한 행동목표 설정 및 지원계획(처방) 작성, 세 번째, 이메일, 전화, 지도 등을 이용한 생활습관 개선 실천지원, 네 번째, 서비스 과정 및 성과 평가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행위를 권유하였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생활서비스 중 문자, 전화, 지도 등을 이용한 생활습관개선 실천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권유할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판단 혹은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법제하에서 보험회사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상품개발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 상품의 기초서류에 반영하여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서비스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취지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험 상품의 기초서류에 근거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병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보험 상품의 기초서류에 근거한 건강생활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이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혹은,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병 정보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이 보험계

약을 이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혹은 별도의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실태 및 개선 방향

류건식(선임연구위원)·이태열(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6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의 경우 기업이 일방적으로 선정하거나 근로자 개인의 기존 거래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2014년 6월)에 의하면 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35%, 기존 거래 관계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13%인 반면, 사업자의 운용능력을 보고 선정하는 경우는 9.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300개 기업)의 절반(51.7%) 이상이 사업자 선정 시 기존 거래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은행(54.8%)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할 때 근로자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공정경쟁보다 거래관계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안전성, 전문성, 운용능력, 서비스 능력이 사업자 선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산정기준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운용리스크의 부담주체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사업자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둘째, 사용자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에게 사전보고 하는 의무조항을 설정하여 선정과정을 객관화하고 사업자 선정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유를 보고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유용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자 평가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즉, 정량평가기준과 정성평가기준을 결합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업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규약 등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노후준비 지원 제도 도입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김세중(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7호

본고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1차(2016~2020년)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2016년 12월 발표하였다. 보험회사는 정부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본격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청소년, 청년, 중년 등을 아우르는 전 국민 대상의 노후준비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①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②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③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④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보험회사는 연금상품을 활용하여 재무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보험산업이 제공하는 연금상품은 젊은 시기부터 재무적 노후준비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며, 특히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소득대체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보험산업은 재무적 노후준비 인식 확대가 연금상품의 수요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의 노후준비 교육 및 진단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비재무적인 영역에서는 건강보험,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는 고령

친화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다양한 건강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비재무 영역 중 건강 관련 분야의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확대로 역할 제고가 기대된다. 향후 전개될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IT기기를 보급하며,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노후준비 지원 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노후준비와 관련이 깊은 보험산업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래 보험회사의 역할은 단순히 보험상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융합하고 제공하는 역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후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의 종합 평가

이태열(선임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7호

정부 관계 부처(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이 일단락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소득세법, 예금자보호법,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이 개정되어 왔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

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고는 그 간 진행되어 왔던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를 크게 ① 가입 측면, ② 운용 측면, ③ 지급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선진국의 제도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가입 측면의 경우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영업자 등 가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인구를 퇴직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초기로서 아직 성숙되지 않다 보니 상기의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에 의해 밀받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에 비해 실효성이 상당히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운용 측면의 경우 원리금 보장 위주로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간의 투자 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이나 수탁자 책임의 엄격성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급 측면의 경우 은퇴 이후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도산 시 수급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 당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는 제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도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 중 선진국 대비 가장 취약한 분야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급 측면의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 연금 관련 제도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가입 관련 세부 규정의 구체화,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연금 수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후속 작업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재산세 체감에 미치는 영향

이태열(선임연구위원)·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8호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제는 직장·지역 가입자 간에 상이한 부과 기준이 적용되고 직장 가입자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문제로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실시한 후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재산과 자동차의 범위를 축소하여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가입자 간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이중 부과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조세인 재산세를 합하여 ‘체감재산세’라 칭하고, 금번 개편안이 재산세 체감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건

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조세인 재산세와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를 합한 ‘체감재산세’가 재산세보다 매우 과중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합한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는 재산 과표 3억 원 기준 시 재산세의 약 3.6배이며, 과표 5억 원 기준 시 재산세의 약 2.3배로 나타난다.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도 재산 과표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는 정도의 개선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가 실제 재산세보다 과중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과표 3억 원의 경우 재산세 대비 ‘체감재산세’는 3.6배에서 3.4배로, 재산과표 5억 원의 경우 체감 재산세가 2.3배에서 2.2배로 감소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을 제고하여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복지부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부과되는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납부자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연금가입률 변화와 향후 과제

강성호(연구위원)·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8호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9대 국회에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계획하였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고용정책심의회(17. 2. 28)에서는 부처 간 심의를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퇴직연금에 대한 단계적 의무화 방향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추진될 경우 근로자의 노후준비 우선 순위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퇴직연금 확대 시 모든 소득계층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은 증가하나 고소득층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 근로자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노후 소득보장 측면에서 역진적일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퇴직연금 의무화 수행 과정에서 제도의 수용성과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의 형평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퇴직연금 등 대부분의 공·사적 연금제도는 제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확대 계획보다 조기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조기 가입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의무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벌칙규정 등이 현실성 있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일 고령자의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류건식(선임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9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불과 9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일찍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어떠한 방향으로 고령화 연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고령사회 대비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은 저부담·고급여 방식 연금정책으로 1995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사회보장지출액(사회보장급부비)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악화로 이어졌다. 사회보장급부비 지출액은 1990년 47.4조 엔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18.3조 엔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저부담·고급여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사적연금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사연금 간 연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추진했다. 2012년 이전의 연금개혁은 연금급부인하,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과 같이 보험료와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부분적 연금개혁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의 연금개혁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된 공적연금

제도 통합,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 연금개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급부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일본은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은 장수안심연금(공·사연계연금) 도입을 추진하였다.

둘째, 고령화에 대비한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적격 퇴직연금을 폐지하고 후생연금기금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해 신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확정각출연금의 유연한 설계를 위해 각출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고 과거 근무채무 상각방법의 탄력화, DB형 급부감액요건 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범위를 전업주부,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영세기업의 가입지원을 통해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연금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매칭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매칭기여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 대응차원에서 고령화 연금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일본의 장수안심연금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기능강화를 위해 일본처럼 주부 등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직장별 특성을 감안한 세제혜택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한·일 고령자 노후생활 관련 정책 평가

김세중(연구위원)·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9호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로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건강 외에 여가 및 대인관계 등 노후생활에 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며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고령화가 가장 진전된 국가로 고령자에 대한 대책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으므로 일본과의 노후생활 정책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은 1995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1996년 동 법을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고령사회대책대강을 마련하였다. “사회참여 활동의 촉진” 부문에서는 고령자가 다른 세대와 함께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보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활동의 촉진” 부문에서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고령자의 교류, 재교육 기회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대인관계·여가 등 노후생활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동 법을 실현하기 위한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 2016년 수립되었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 노후생활 관련 내용은 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간 노후준비 연계서비스 신규제공, 고객 특성별 맞춤형 상담 및 교육 교재 개발,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이 있다.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 중 노후생활 관련 내용은 중·고령층 대상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활동사업 활성화 등이 제시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후생활 관련 정책을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만큼 다루고 있는 범위가 넓고 고령자와 사회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척도 중 하나인 봉사활동 경험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활동영역도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봉사활동 경험은 고령자의 사회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일부 지표에 불과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후생활 정책은 고령자를 대하는 인식의 전환,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자의 노후생활은 노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령화 심화와 함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될 것이다. 고령화의 심화는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이므로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보다는 사회전체가 고령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실태 및 대책방향

류건식(선임연구위원)·이태열(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0호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47조 원(2016년 말)에 이르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도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기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87%에 이르고 있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5% 수준에 불과해 사업장 간 퇴직연금 도입의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퇴직연금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운영자금부족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퇴직연금 특별 대출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기여금을 100% 사외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재정지원보다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재정지원의 수준을 차별화하고 재정지원의 시한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영세사업장일수록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퇴직연금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합형 DC형태로 운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투자지식 미흡을 감안하여 중립적 기관을 통한 투자교육 강화, 최소수익률 보증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DC형 제도를 하나로 모은 집합형 DC형태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투자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스위스처럼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미의 노후빈곤과 연금정책 평가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1호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화사회(2000년)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지니면서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미국의 연금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급속히 고령화되고,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낮아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늦었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10년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고령자의 낮은 소득으로 노인빈곤율(2013년)은 한국 49.6%로 미국 21.5%에 비해 28.1%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공적연금 가입 및 수

급 수준이 낮고, 사적연금의 격차는 더욱 크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공적연금 보험료율과 가입률이 낮은 편이며,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수급자가 적고 소득보장 수준도 미국에 비해 낮다. 한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이로 인해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pension fund) 비중 또한 매우 낮다.

한편 미국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로 추진되었다. 미국의 공적연금 개혁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급여를 줄이고 보험료를 증가시켜왔다. 미국의 사적연금 개혁은 연금상품 다양화, 세제혜택 강화, 연금지급보장 등을 통해 약화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연금정책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연금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재정문제 및 가입측면의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적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퇴직 직전 세대(예, 50대)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인센티브를 주는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DB형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DC형 및 IRP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확대와 사적연금제도

이태열(선임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2호

국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조달, 국민부담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최근 조세와 준조세 부담구조를 조정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종합과세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8년부터 부과 대상 소득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다.

본고는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원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향후 국민의 연금자산 형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따라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강화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사적연금소득도 유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정 결과, 연금저축 및 IRP 등 세제적격 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체감되는 세제 혜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받아도 건강보험료 3.06%와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면 체감세액공제율은 4.64~6.84% 수준으로 낮아져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연금화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가뜰서 심각

하게 지적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선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국민의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할 유인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사적연금제도는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작은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에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적연금 세제는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 및 준조세 부담 논의 시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과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연금정책 평가

류건식(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2호

한국의 공적소득대체율은 39.3%인데 반해 호주의 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은 13.5%에 불과하여 한국이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적 역할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사적연금 가입률과 사적연금 적립금 비중 모두 한국이 호주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이 16.0%에 불과하며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이 53.5%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호주는 15세 이상 근로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이 92.0%에 이르고 있다. 또한 GDP에서 차지하는 사적연금의 비중은 한국이 8.2%에 불과한 데 반해

호주는 118.7%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적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적연금의 역할이 큰 호주의 연금정책을 평가해 보면 첫째, 퇴직연금 가입의 의무화,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1992년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퇴직연금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직장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 국회의원, 예술인, 운동선수 및 배우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되었다. 둘째, 퇴직연금의 성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금세제 혜택의 수준을 높이고 가입자 속성별로 세제 혜택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가입자는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 30,000호주달러까지 15% 저율세율을 적용하여 자발적 납입을 유도하고 있다. 60세 이후 퇴직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만 60세 미만 퇴직금 수령 시에는 과세하고 있다. 셋째, 퇴직연금 운영에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해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로 운영하고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해상충문제 해소를 위해 엄격한 연금기금 관리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연금수익률 제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주도의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며 호주건전성 감독청, 호주증권투자위원회, 호주국세청 등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엄격한 리스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호주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여 퇴직연

금의 소득보장 역할이 제고되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호주처럼 매칭기여 방식의 보험료지원, 고연령층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부여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생활서비스와 의료행위 그레이존 검토

조용운(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3호

최근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태에 있으나 서비스의 특성이 복합적이어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들을 정리해 보고 그레이존 규명을 위한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법규와 판례는 특정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치료 목적 여부와 위해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판단함에 그레이존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질병과 구분되는 대사증후군 등의 예방 혹은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방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의료법」과 판례는 그렇지 않다.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의료법」과 판례는 타인에 대한 행위를 다루고, 자기 신체에 대하여 질병 치료 목적으로 계속·반복적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아 개인 스스로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 건강생활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질환자가 아닌 대사증후군을 가진 자가 의료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바일 앱 및 개인용 건강 관리기기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수준 계층화 결과(기준에 따라 자동 산출됨)를 산출 하는 것이 그리고 동 앱 및 기기 등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치료 목적이고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 질환자가 아닌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관리를 하고자 행동 목표 설정 및 계획 작성 등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생활서비스기관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원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질환자가 아닌 개인 스스로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 등의 개선을 실천하도록 이메일, SMS, 전화 등을 이용하여 권유한다면 건강상태의 진단을 포함하지 않고 권유만 하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관련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건강생활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발생하는 그레이존을 줄일 수 있도록 판결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3호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대부분은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퇴직소득세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퇴직소득공제에 대해 검토하고 퇴직소득을 연금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소득은 소득공제수준이 높아 일시금 수급 시에도 세부담이 크지 않아 연금화 유인이 약하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14.2%는 2015년 한 해 동안 퇴직경험이 있고(근속기간 5.7년), 퇴직급여는 1인당 1,604만 원 수준이며, 이중 807만 원은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퇴직소득공제율 50.3%). 또한 높은 퇴직소득공제율은 과세표준소득을 낮추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며, 이는 퇴직급여 대비 퇴직소득세(가칭, 실효퇴직소득세율)로 나타내면 4.4% 수준이다. 이로 인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되는 연금세제혜택도 크지 않아 연금 수급요건(55세 이상)을 갖춘 퇴직자의 일시금 선택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소득의 대부분은 사업주 부담분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연퇴직소득)이므로, 이연퇴직소득 수급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 있다. 현재 이연퇴직소득은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급할 때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므로 퇴직소득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조세재정 중립적 측면에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퇴직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줄여 일시금 수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가된 퇴직소득세 재원만큼 연금소득세

를 감소해 줌으로써 조세재정 중립하에 연금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소득 지급을 퇴직연금(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55세 이후(혹은 65세 이후)로 연기할 경우 이연에 따른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복지 비용’과 ‘노후 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지출 구성 변화

이태열(선임연구위원)·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4호

최근 우리나라는 조세 및 준조세(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스스로도 노후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강제적인 복지 부담,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소비 지출 등이 실제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서 지난 10년간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전체 가계 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소비지출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흑자액과 비소비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17.4%에서 2016년 18.6%로 1.2%p 상승해 조세나 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계의 흑자액은 동 기간 무려 4.8%p나 상승하여 조세와 사회보험 보험료에 대한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저축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소비지출의 비중은 동기간 64.1%

에서 58.1%로 무려 6.0%p나 감소하여 가계 부문의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세부 항목에 대한 비중 변화를 보면 조세, (공적)연금 보험료, 사회보험 보험료 등이 대표적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된 항목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료 항목의 대부분이 국민연금보험료이며 사회보험료 항목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10년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다른 항목에 비해 가계에 주는 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식료품, 의류, 교통 관련 소비지출 항목들은 비중이 대표적으로 감소한 항목으로 나타나며 소비 부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당국은 복지 재원을 위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가계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총체적 부담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계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흑자 규모 확대는 공적 복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효과적인 사적 노후 보장 수단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 현황과 개선 과제

이정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4호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 의료비는 매년 상승추세에 있으며, 노인 의료비의 관

리가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치료가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과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일상생활지원과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모두 의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요양병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노인 의료비 관리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의료법에 근거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와 같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며, 노화 등에 따른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위 기관당 병상 수는 요양병원이 요양시설에 비해 현저히 높다.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병상 수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현저히 많으며,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기관 수 증가와 함께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의 노인 진료비에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 상승률이 높다.

요양병원 기관 수와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치료가 필요 없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소 증가와 장기입원의 증가 때문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증가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가 모호하고, 요양병원의 입원이 요양시설

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입원일수 기준의 수가제를 적용하여,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전원체계 미비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요양시설의 형식적 촉탁의 제도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치료종료환자는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 평가와 정책적 함의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5호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공무원 등 모든 경제활동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개인형 퇴직연금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은 IRA 제도의 다양화, 세제혜택의 차별화, 퇴직급여제도 간의 연계성 제고 등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사업장 또는 가입자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IRA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 선택폭이 넓다.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직종별, 연령별 등에 따라 세제 차별화를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인하고 있다. 셋째, 퇴직자산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나, 우리나라는 중도인출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적립금 소실 우려가 있다. 넷째, 퇴직연금(DB형·DC형) 적립금 대부분이 IRA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IRA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퇴직연금의 가입 범위 확대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됨에 따라 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폭 확대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점진적으로 가입자의 직종별, 연령별 등에 따라 세제를 차별화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 적립금 인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적립금 이전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가입자교육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한·일 공적 건강보험 건강생활서비스 비교 평가

조용운(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5호

최근 정부는 헬스케어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민간 건강보험 부문의 건강생활서비스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고는 공적 건강보험 부문이 건강생활서비스 공급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 일본은 공적 건강보험자가 대사증후군 평가를 위한 건강검진(특정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자(대사증후군 예비위험군, 위험군)에 대하여 매년 계획적으로 특정보건지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정부의 표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예방 중심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특정건강검진과 같이 대사증후군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제도는 있지 않다. 그러나 대사증후군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의 대사증후군 사후관리와 일본의 유사 제도(특정보건지도)는 공적 건강보험이 주도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두 나라 모두 개인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

다. 일본은 건강검진 실시율이 41.3%인 반면, 특정보건의도 참여율이 12.3%(2009년), 한국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2.9%(2012년), 사후관리율은 21.6%(2012년)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공공 부문 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나라 제도가 모두 단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생활습관 변화 개입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서비스 다양화 및 인센티브 제공 가능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공·사건강보험 연계 사례와 시사점

정성희(연구위원)·이태열(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6호

호주 민영건강보험은 정부의 건강보장 정책의 변경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나, 현재 공·사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국민 의료비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호주의 건강보험 정책은 1990년대 이전까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집중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확대와 민영부문의 보장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1984년 공적 건강보험제도(메디케어) 도입 이후 민영건강보험에서는 건강한 가입자의 이탈로 시장의 위축과 함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활성화, 지속가능성 제고, 보장 기능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공·사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민영건강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자 민영건강보험 가입 보조금 지원, 고소득자 민영건강보험 미가입 시 세금 추징 등 소득기준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이 의료비 보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선택 방지, 취약계층 보장 확대, 의료수가 통제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표적인 제도로 조기 가입 및 지속 유지 장려를 위한 평생건강보험보장, 보험회사의 고령자 고액청구금액 보전, 보험회사와 의료인간 수가 합의 등이 있다.

호주 정부는 상기의 민영건강보험 관련 제도들을 종합하여 2007년 민영건강보험법(Private Health Insurance Act)이라는 개별법 체제를 구축하였다. 본 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민영건강보험 가입 장려 및 민영건강보험상품 규율 체계 정립에 있다. 호주는 국민의 건강보장이란 큰 틀에서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이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는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호주는 민영건강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공적 보장을 중심으로 하되 민영 부문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국가 보장 체계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은퇴가 건강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이정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6호

188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은퇴는 은퇴자에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경제적 준비나 건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기대수명의 연장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은퇴가 은퇴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가 은퇴자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은퇴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은퇴는 은퇴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신체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은퇴는 은퇴자가 심리적·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여, 은퇴 후 여가활동을 통해 더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고령자 패널 2008~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 전후의 건강생활습관에 대해 분석할 결과, 은퇴 후에 흡연·음주와 같은 건강생활습관은 은퇴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퇴 전에 비해 은퇴 후 응답자의 8%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더 하였고, 은퇴 후에 금연의 비율은 약 11%, 금주의 비율도 약 10%가 더 많았다. 은퇴자는 은퇴 전에 비해 건강생활습관은 증진되었으나, 본인

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은 은퇴 후에 평균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우 좋음」을 1로 하고, 「매우 나쁨」을 5로 하여 측정한 결과, 은퇴 후에는 평균적으로 3.46이며, 은퇴 전은 2.43으로 은퇴 후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또한 은퇴 후에 우울 증상의 수치가 은퇴 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는 경제적으로 노후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인지기능도 저하되어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은퇴 전보다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은퇴는 건강생활습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체건강은 은퇴 후 잘 관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신건강에는 악영향을 주어 은퇴자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은퇴 후로 악화됨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은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은퇴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은퇴자들은 중년충부터 고령층까지 연령의 폭이 넓고 은퇴에 이르게 되는 과정도 다양하므로 집단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사 건강생활서비스가 은퇴생활 전반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의료심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과 의무화 검토

정성희(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5호

의료기술 발전으로 보험회사의 의료심사자에 대한 의학지식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의료심사자의 관련 자격증 취득 시 기본적인 의료지식만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자격 취득 이후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체계성 미흡과 의무화 부재로 의료심사자의 의료지식 전문성과 업무 능력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대부분 선진 보험회사의 경우 의료심사자의 경력 연수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언더라이터는 보험전문연구기관의 프로그램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고, 대부분 주에서 손해사정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일정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급여 영역이 확대되고 보험의학 관련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심사자의 의학 판단기준 역량 강화가 긴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업계의 체계적인 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의 의무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정부 및 정당(안) 비교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6호

정부는 2017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본고는 이번 정부(안)를 2016년에 이미 제기되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기본적으로 가입자를 구분하느냐 여부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키느냐에 있다. 정부(안)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조정하였으나, 야당(안)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구분 자체를 폐지하여 부과 방식을 일원화한 것이다. 또한 부과 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도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야당(안)은 연금, 분리과세 대상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안)이 정부(안)보다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타당성은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 포착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민주당의 별도 기준, 국민의 당의 기본보험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방추나요법 진료비 실태와 문제점

이정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6호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연금 도입과 과제 : 독일 뢰름연금을 중심으로

김동겸(선임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6호

190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급증으로 한방진료비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방추나요법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한방추나요법의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높고, 진료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추나요법의 진료비 수준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진료비 격차가 컸다. 한방추나요법 진료건별 진료비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6배인 반면, 한방병원은 80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방추나요법의 진료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부산·서울·경기 지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방추나요법은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한방물리요법등과 함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장영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방에 비해 한방 비급여 진료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보장대상 확인이 어렵고, 처방에 대해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제외된 주요 이유이다.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한방비급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방추나요법을 비롯한 한방비급여의 의료기관별 가격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인 뢰름(Rurup)연금을 2005년부터 도입·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뢰름연금제도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증대, 공적연금 개혁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 노동시장 환경변화 등을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뢰름연금은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에서 배제되어 온 자영업자를 주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적연금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가입 이후 해지가 불가능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뢰름연금은 세제혜택을 통한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 유도, 종신연금 형태의 급여수령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에 이르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또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구빈곤율은 12.9%로, 상용근로자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노후빈곤위험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차원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연금 도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과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7호

퇴직연금 가입자의 약 87%(부분연금 포함)가 연금을 선호함에도 실제 55세 이상 퇴직자의 약 93%가 오히려 일시금을 선택하는 연금퍼즐현상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럽복지국가인 네덜란드는 100%, 스위스는 80%가 연금으로 수령하고 호주 등은 부분연금형태인 소득인출형연금을 통해 퇴직금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연금퍼즐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높은 연금선호가 연금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소득인출형연금을 허용하여 급부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이들 방식간의 상호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가입자 니즈변화를 반영한 옵션가미형 연금상품제공을 통해 연금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퇴직연금 적립금의 인출범위를 확대하여 연금해지를 방지하고, 일시금에 비해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이 보다 부여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 : 일본사례 중심으로

김동겸(선임연구위원)·정성희(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7호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은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해외 보험회사들은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우생명, 제일생명 등 일본의 주요 보험회사는 정부기관, 학계, 건강관리서비스 전문업체, IT업체 등과의 활발한 업무제휴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연계한 신상품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일본 보험회사의 산업 간 협업을 통한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는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규제 개혁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도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형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 다양한 산업의 시장참여를 저해하는 규제로 산업 간 상생모델 구축을 통한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의 접목과 타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요건이므로 헬스케어산업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가 요구된다.

변액연금 현황과 과제

김세중(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8호

변액연금은 투자형 상품으로서 저금리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연금상품이나 최근 생명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변액연금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수익률 제고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액연금의 안정적 수익성 확보를 위한 해외사례로는 미국에서 2010년 AXA Equitable사에 의해 처음 개발된 구조화 변액연금(Structured variable annuity)을 들 수 있다. 구조화 변액연금은 주가지수 상승 시 수익률 한도를 둠으로써 손실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조화 금융상품을 변액연금에 적용한 상품이며, 소비자가 수익률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조화 변액연금 사례는 원금의 손실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개발 사례이다.

생명보험회사는 변액연금 수요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변액연금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금리에 따른 전통적 연금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감안하여 생명보험회사는 새로운 상품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 DC형 제도 개혁과 함의

이상우(수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8호

일본은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공적연금 급여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적연금 확대, 아베 정부의 저축에서 투자 활성화 등의 배경에 따라 DC형 제도 가입 범위와 자산운용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 확정각출연금법이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형 DC제도 가입범위를 종전의 정규직·파트타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서 전업주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도록 했다. 둘째, DC형 제도 가입자 교육 미실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가입자 교육의 법적 지위를 종전의 배려의무에서 한 단계 높은 노력의무로 개선하였다. 셋째, DC형 제도 분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리스크-리턴 특성이 서로 다른 운용상품’으로 조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제공하는 운용상품 수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넷째, 디폴트 옵션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중 운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산투자를 기업에게 의무화하고,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제도 개혁은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공무원 등을 가입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인형 IRP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DC형 제도의 자산운용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용상품 비율 제한 등과 같은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자산운용 감독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농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강성호(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9호

고령화와 함께 농가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공적노후소득보장 외에 농지연금이 도입(2011년)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기준 농지연금 가입률을 보면, 전체 55만 가구 중 7,488가구만 가입하여 가입률이 1.3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농가의 고령화 상태와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농지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은 절실히 보인다. 2016년 농가의 고령화율은 40.3%(101만 명)로, 전체 가구의 고령화율 13.2%(676명)의 3배 이상이다.

한편,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은 고령도시가구 소득의 40.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농가의 빈곤화는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농가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고령농가가 많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의 소득이 적다는 점 외에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근로활동이나 공적연금 가입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유동화는 노후빈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지역 노인가구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고령농가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혁의 연계 필요성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0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소득자에 대해 지급해 온 기초연금은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은 부부, 국민연금, 기초수급자에 적용되는 감액제 폐지를 함께 공약했기 때문에 실제 재정 부담 증가 규모는 단순히 일인당 10만 원 인상한 경우보다 클 수도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대체율 보완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위 70%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부 축소를 기초연금의 인상으로 상쇄하여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다. 가급적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고질적인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정책을 포괄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말고, 전체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형 IRP 수익률 현황과 과제

김세중(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0호

194

2017년 7월부터 개인형 IRP의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개인형 IRP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개인형 IRP 규모는 12.4조 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중 8.4%를 차지하지만, 수익률은 타 퇴직연금 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기간 중 수익률은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기업형 IRP 포함)이 각각 1.68%, 1.45%를 나타낸 반면, 개인형 IRP는 1.09%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2016년 기준 제도유형별 5년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 볼 때에도 개인형 IRP 수익률이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적배당형 자산 수익률만을 보더라도 개인형 IRP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퇴직연금제도 중 금융회사가 거의 동일한 펀드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형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자산 수익률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입자의 수익률 관리 정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회사들이 개인형 IRP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 수익률이 유사제도인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및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1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16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소득층의 가입의향이 47.9%로 가장 높은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입의향은 각각 26.8%, 24.1%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 제도 도입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임의가입형태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퇴직연금가입이 낮게 나타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투자능력 제도를 위해 투자 중심 가입자교육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영업자가 퇴직연금 가입 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 판매추이와 과제

김세중(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2호

기대수명의 증가로 개인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세제비적격 일반연금과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는 2014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4/4분기 초회보험료는 2014년 2/4분기의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상품 판매 감소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환경 지속, 회계제도 변화,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의 판매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신상품으로 변액연금 판매에 치중하고 있으며, 주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최근 신규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연금을 대체하기에는 규모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은 부족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연금시장 활성화는 노후소득 부족으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의 대응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종신노후소득을 원하는 은퇴자에게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은 중요한 보완상품이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연금상품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건강보장 가미형 퇴직연금 상품 니즈 및 과제

류간식(산업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2호

2016년 12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7조 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은 56.1%에 이를 만큼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보험권 전체의 퇴직연금 적립금 시장점유율은 2006년 3월 50.0% 수준에서 2015년 3월에는 32.5%로 낮아져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 보험회사 위상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보험회사들은 DC형 퇴직연금에 건강보장을 가미한 운용상품을 개발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손해보험사들은 퇴직연금 가입자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DC형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DC형 적립상해보험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동경해상, 손보재팬, 아이오이 손해보험은 자산관리기관과 상품제공회사로서 퇴직연금사업을 하면서 DC형 적립상해보험을 제공하여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보험회사도 퇴직연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니즈를 반영한 건강보장 가미형 퇴직연금 상품의 개발 검토가 요구된다.

가구의 총 저축액 대비 개인연금 저축액 비중 비교

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2호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비자 인식변화 조사

조용운(연구위원)·김동경(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3호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주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노후 준비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 크다.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가구 단위의 총 저축액 중 개인연금 저축액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2005년보다 증가하였으나 배우자 없는 가구주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주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배우자가 없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현재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높으므로 유동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 둘째, 이들은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적고 장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유인이 낮을 수 있다. 셋째, 비상 시(질병, 상해 발생)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혼인상태와 건강상태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연금 상품 개발과 정책적인 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생활서비스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건강생활에 대해 무관심한 개인이 건강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개인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다이론 통합 모형(Transtheoretical Model)에 기초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의 변화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행동변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경우 모두 건강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강생활서비스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다태아의 출생과 건강 현황

이정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3호

출생통계에 의하면 다태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신생아 중 다태아의 비중도 상승추세에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인한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시술은 전체 출생아에서 다태아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다. 2014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출산 건수는 총 1만 2,541건, 출생아 수는 총 1만 5,636명으로 출산 건당 1.25명의 아이를 출산하며, 이 중 다태아의 비중이 39.2%에 달하고 있다. 난임시술지원 자격요건이 완화된 2016년 9월 이후 시술지원 결정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다태아 발생빈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모와 다태아의 입원 기간 증가 등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신생아의 체중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향후 신생아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단태아보다 저체중 발생빈도가 높고 평균체중이 낮은 다태아는 발달과정에서 건강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출산되는 다태아는 1만 5천 명 이상으로 향후 그 수가 누적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출생 이후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발달과정 및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다태아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 사례 및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3호

최근 미·일 보험회사들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일괄형 서비스(제도설계부터 운용 및 자산관리까지 관련된 모든 퇴직연금서비스 제공)를 개발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운영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저렴한 비용으로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길 선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일 보험회사들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MetLife는 대형 자산운용사에 밀린 대기업 대상 퇴직연금시장에서 철수하는 반면,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일괄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또한 일본생명명은 그룹 내 관계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괄형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손보재팬그룹은 DC형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연금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DC형 퇴직연금에 특화된 일괄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도 중소기업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대상 일괄형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위험자산 투자성향과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4호

198

정부는 퇴직연금 중심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의 투자자산 선택폭 확대를 위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포함)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40%에서 70%로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DC형 퇴직연금가입자들은 적립금의 78.9%(2016년 12월 기준)를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DC형 가입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 투자상품 정보 부족으로 위험자산 투자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의 보완조치 차원에서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과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수익률을 제도적으로 보증해 주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예: 캐쉬밸런스형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위험자산 투자확대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투자운용상품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투자교육 중심의 가입자 교육이 요구된다.

고연령 사고사망자 감소추이와 의미

김세중(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4호

2016년 사망원인 통계를 60세 이상 고연령군과 60세 미만 저연령군으로 구분해 볼 때 고연령군의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질병과 질병 이외 원인 모두에서 저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질병 이외 원인을 사고, 고의적 자해(자살), 타살 및 기타로 구분할 경우, 사고사망은 고연령군의 사망자 수 감소가 저연령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고사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운수사고의 경우 저연령군 사망자 수는 연평균 7.0% 감소하였는데 반해 고연령군 사망자 수는 연평균 5.7%의 감소에 그치고 있다. 추락사고의 경우 저연령군 사망자 수가 연평균 0.4% 감소한 반면 고연령군 사망자 수는 오히려 2.0% 증가하였으며, 익사사고 역시 저연령군 사망자 수가 연평균 2.3% 감소한 반면 고연령군 사망자 수는 0.5% 증가하였다. 화재의 경우에도 저연령군 사망자 수가 연평균 1.6% 감소한 반면 고연령군에서는 이보다 낮은 1.3%의 감소를 보였다.

사고사망의 경우 안전인식 및 안전시설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함에도 고연령군의 사망자 수 감소가 저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고령자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 연금시장 경쟁도 변화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5호

영국 연금시장은 2015년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의무화 폐지 이후 연금사업을 포기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증가하면서 연금시장 경쟁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 영국에서는 Solvency II 시행에 따른 장수리스크 부담이 부각되면서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연금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Prudential은 2017년 2월 연금시장 철수를 발표하였고, Standard life는 2015년 신계약 판매를 중단한 이후 2016년 10월 161억 파운드에 달하는 연금부문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Aegon은 2010년 신규 연금판매를 중단한 이후 2016년 보유계약을 모두 매각하였다. 영국 연금시장의 경쟁도 약화는 연금자유화, Solvency II 시행, 저금리 환경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세제혜택 감소, 수수료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연금판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1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장수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영국의 경우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영국과 같은 연금시장의 경쟁도 약화는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과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점증하는 연금니즈를 충족하는 데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후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

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5호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에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016년 30.7%로 전년보다 0.1%p 증가하였다. 또한 55~79세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소득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58.3%로 가장 많았다.

2015년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 가구 근로소득(자영업소득 포함)은 50~59세에서보다 60~69세에 감소하였으나 전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로 여전히 가장 큰 소득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 근로소득에 대한 불평등도와 근로환경은 60세 이후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의 경우 60세 이후의 지니계수는 낮아지지만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므로 총소득의 불평등도는 60세 이후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불평등도가 노후에 더 높아지므로 노후의 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 환경과 소득 기준이 개선되고 저소득 고령자층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 지표의 추정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5호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라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다양한 의료비 보장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의료비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정부는 매우 구체적인 재원 소요 규모, 보장률 인상 목표, 비급여 의료비 축소 목표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책의 결과로 예상되는 총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 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총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정부의 정책 자료에 나타난 지표 중 본고가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①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②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③ 2022년 비급여의료비 규모이다. 이 세가지 지표를 기초로 ① 2017~2022년의 총진료비 ② 2017~2022년의 의료물가 상승률, ③ 2022년의 본인부담금 규모 등을 산출하고자 한다.

추정 결과, 첫째, 총진료비는 건강 보험의 보장 확대에 따라 2019년 100조 원을 넘어서 2022년 123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의료물가상승률과 의료소비 자연증가율의 합은 매년 약 6%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9년에만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의료수

가 인상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급여진료비는 2015년 13조 9천억 원에서 2022년 32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김세중(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6호

최근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전체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6년 일본의 고독사 건수는 1만 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거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보험회사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하였다. 세입자가 고독사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며, 2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 임대료 인하 요구 등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2016년 폐기물 처리, 원상회복, 임대료 보충 보험금 규모는 각각 194,700엔, 253,304엔, 345,000엔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으로 판단되며, 보험회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독사 증가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II.

2017년 주관 행사

정책·경영세미나

국제세미나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고령화포럼

금융정책포럼

Chapter

정책·경영세미나

-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보험산업의 미래 및 2017년 보험산업 정책방향
-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계약자 행동과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 장애인·정신질환자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 Risk-based Global Insurance Capital Standard
-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과제
- 보험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 개선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
-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및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행사명 :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국회 정부위원장·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204

행사개요

- 일시 : 2017. 2. 9(목)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제 :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이진복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 제1주제 :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
(송운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이원돈 (대구대학교 교수)
 - 토론 : 경수현 (연합뉴스 논설위원)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지석 (국민안전처 과장)
신동호 (상명대학교 교수)
유지호 (보험개발원 부문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이창욱 (금융감독원 실장)
조재연 (중소기업청 과장)

개최배경

다수의 국민들에게 순식간에 큰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 사고 위험은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동 세미나는 재난사고 중 최근의 대형사고 발생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과 전통시장화재의 위험 관리 실태를 돌아보고 이들을 보험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제1주제

과거 문헌자료에 따르면 과거 한 반도에 진도 8~9(규모 6~6.9) 수준의 지진이 최소한 33회 이상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최근 수십 년간 강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현재 국내 전체 건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중은 6.8% 밖에 되지 않고 지진보험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형 지진사고가 인구 밀집 지역에 발생할 경우 정부와 국민들은 이를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진보험으로 인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민영 보험회사가 재물보험에 특약으로 판매하는 지진담보특약이 있다.

미국, 일본, 터키의 경우 과거 대형 지진사고를 경험한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성 지진보험제

외국 사례에서 볼 때 지진사고는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손해를 야기한다. 우리나라 지진보험은 외국 지진보험에 비해 개선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도적으로 지진보험리스크를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한 보험자들은 해외 지진보험 사례를 고려해 기존 지진보험 상품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진보험을 미국, 일본, 터키의 사례에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지진보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외국의 경우 지진 사고가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가 지진보험리스크의 대부분을 인수해 관리하거나 지진보험을 의무화해 지진보험 풀을 만들어 지진보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성 지진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주요 담보가 풍수해 손해이므로 풍수해 위험이 거의 없는 보험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진보험리스크를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지진담보특약의 경우에도 정부와 무관하게 보험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므로 지진담보특약의 보험리스크 관리도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스스로 관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보험리스크 관리 측면뿐 아니라 보험상품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지진보험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지진보험의 경우 담보별 보상한도 및 총 보상한도 설정, 지진사고에 대한 정의 및 인수거부 조건 명시 등을 통해 보험자가 지진보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지진보험은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될 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도적으로 지진보험리스크를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자들은 해외 지진보험 사례를 고려해 기존 지진보험 상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예방과 복구대책, 특히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정책성보험의 도입이 거론되었지만,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의 당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였다.

전통시장은 약 36만 명의 주 생계 터전이자 유통산업의 균형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보루로서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연평균 68건의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는 피해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수건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와는 달리 인적 피해보다는 물적 피해가 두드러진다. 둘째,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대부분 원인제공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

무엇보다도 시장상인들의 화재에 대한 인식변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소화·전기·가스·감지·피난 시설의 현대화와 화재예방 및 점검 관련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시설현대화 및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위험이 감소하여 보험료가 인하되면 정부의 보험료 보조 없이 민간에 의한 자율적 시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 배상자력 및 그 확보수단이 부족하여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자신이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중이용업·특수 건물 화재 등의 사회재난과는 다르다. 셋째, 주요 피해자인 점포상인의 상당수는 소득수준 및 보험가입여력이 낮아 복구자력이 부족하다. 넷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 투입이 반복되는데, 이러한 사후적 무상 지원방식은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의 위험을 수반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화재는 주로 노후화된 전기시설, 인화성 시설, 밀집형 구조, 미흡한 안전관리인식 등에 기인한 인재로, 예방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처럼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보험가입여력이 없는 영세 상인을 재난취약계층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보험료의 일부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임의 정책성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화재위험은 잠재적 피해자인 시장상인의 자기재산손해 보험을 통한 사후관리가 불가피하나,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수요와 공급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 다만, 정책성보험 도입 시에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소득수준(개별 점포)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정부의 보험료 보조가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시장상인들의 화재에 대한 인식변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소화·전기·가스·감지·피난 시설의 현대화와 화재예방 및 점검 관련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시설현대화 및 안전점검강화를 통해 화재위험이 감소하여 보험료가 인하되면 정부의 보험료 보조 없이 민간에 의한 자율적 시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 국회, 정부, 대중매체, 학계, 업계에서 일부 건물에 대한 지진보험 의무화, 지진보험 요율 현실화, 지진보험 상품 개선, 지진채권 발행, 지진보험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지진에 대한 국가재보험 도입,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지진보험 시장 개발, 풍수해보험 대상 확대, 전통시장 화재보험 단체보험 가입 장려 추진, 보험품을 활용한 전통시장 화재보험 운영, 전통시장화재보험 전체 가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보험산업의 미래 및 2017년 보험산업 정책방향

행사명 : 제43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 | 주관행사

207

행사개요

- 일시 : 2017. 2. 13(화) 07:30
- 장소 :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
- 발표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제1주제 : 4차 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보험산업의 자율·책임&발전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개최배경

보험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보험요율 산출에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패러다임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4차 산업혁명이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작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소비자 중심의 생산체계가 구축될 전망이고 금융산업도 고객의 성향, 습관, 관심사 등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할 것이다. 이중 IoT, Bio,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IoT의 연결생태계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성장모

델을 제시할 것이며 보험회사는 IoT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맞는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장성 보험에 헬스케어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며 인공지능은 보험회사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공지능 판매채널이 등장하여 판매채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공지능 채널은 설계사 중심의 판매채널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속설계사 조직 규모에 의한 경쟁이 사라지고 상품 및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소비자는 헬스케어서비스, 건강리스크, 일상생활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인공지능 채널을 통해 구매할 것이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회사, 일상생활 서비스 전문회사로 진화할 것이다.

보험산업의 주요 축이 변화함에 따라 공급자, 소비자, 감독자는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의 지원을 강화하며,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언급하였다.

제2주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김학수

국장은 보험산업의 현주소와 보험산업의 자율 및 책임 그리고 2017년 보험산업 발전 추진방안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CEO에 대한 당부사항을 부탁하였다.

보험산업은 3저(저성장, 저금리, 저출산)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영구지속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험산업은 자율과 혁신을 통하여 창의적 경쟁을 하여 질적 성장을 이룩하고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험산업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의 지원을 강화하며,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 자율화 시대에 문과 틈을 찾고 만들어내는 CEO의 해안을 필요하다면서 CEO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계약자 행동과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행사명 :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계약자 행동과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세미나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주최)

행사개요

- 일시 : 2017. 3. 28(화) 14:30
- 장소 : 코리안리빌딩 강당(12층)
- 주제 :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계약자 행동
과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환영사 : 이창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 축사 :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제1주제 : 동태적 보험계약자 행동과 리스크
관리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
 - 제2주제 : 거시경제 위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김범 (숭실대학교 교수)
 -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
 - 송소운 (타워스 왓슨 코리아 상무)
 - 정용호 (한화생명보험 상무)
 - 천병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무)

개최배경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뉴 노멀’ 상황과 함께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1,3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는 신규 보험수요 축소와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 투자수익의 감소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거시경제 위험요인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계약자행동에 따른 리스크의 평가와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제1주제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경우 계약자 의사결정(가입, 유지, 해지, 연금화 등)이 보험회사의 부채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신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채가치는 시가로 평가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한 부채가치의 변동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거시경제 환경변화는 계약자 의사결정(가입, 유지, 해지, 연금화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부채 및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경제 환경에서 보험계약자 행동의 이해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데이터 집적 및 계약자 행동모형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 및 계약자행동의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한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경제 환경에서 보험계약자 행동의 이해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계약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데이터 집적 및 계약자 행동모형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2주제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사드배치 이슈로 인한 경제보복,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불확실성 확대의 주원인으로 평가된다.

임태준 연구위원은 거시경제량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적용되었다. 첫째, 중국 경제 성장

률은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1%P 하락한다. 둘째, 리보 금리는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25BPS 상승한다. 셋째, 국제 유가는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배럴당 5달러 상승한다. 시뮬레이션 실행 결과, 개인연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해지율은 상승하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 환경변화는 보험수요 및 계약 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다시 보험회사의 가용·요구자본 및 유동성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임태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거시경제 위험에 대비하여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장애인·정신질환자 위험보장 강화 방안

행사명 : 『장애인·정신질환자 위험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국회의원 나경원 공동주최)

211

행사개요

- 일시 : 2017. 4. 14.(금)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 장애인·정신질환자 위험보장 강화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나경원 (국회의원)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정세균 (국회의장)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임중률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병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 제1주제 : 장애인의 건강 위험 실태 및 정책 제언
 -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제2주제 : 장애인 위험 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김두철 (상명대학교 교수)
 - 토론 :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장)
 - 김정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개최배경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비장애인보다 건강 및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위험보장은 취약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실과 보험연구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위험과 건강불평등이 큰 편이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의료접근성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고통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문제다. 세계장애보고서는 보건의료의 미충족 필요는 정신장애인일수록, 여성장애인일수록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 심층면접조사 결과 의료부문의 미충족

장애인의 의료보장 강화 방안으로 건강검진 강화,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관리와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제도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검진 강화를 위해 장애 특성에 맞게 건강검진 시설 및 장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민영보험의 장애인 위험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기초요율 개발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의 경우 단체보험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인수 기준을 마련해 정신질환 상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는 장애 발생 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의료비 과부담, 초기 재활 프로그램의 질 향상, 장애치료와 재활을 위한 직·간접적인 의료서비스 부족 등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장애치료와 재활을 위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적절한 수가 및 비용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보장구 항목의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기준액의 상향조절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법에 근거한 의료보장 강화 방안으로 건강검진 강화,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관리와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제도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검진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로 건강검진 매뉴얼을 만들어 장애 특성에 맞게 건강검진 시설 및 장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질병 및 사고(상해, 배상책임 등) 위험이 높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각종 위험에 대비한 보장 능력이 부족하다. 상법 732조에 따라 심신박약과 심신상실자의 사망담보 계약은 무효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에서 중증 정신장애자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사고 위험률 추정이 어려워 장애인 대상 상품 설계 및 공급에 한계가 있다.

비슷한 위험보장 욕구를 가진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종합공제(가칭)를 도입하여 의료비, 상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용 부담 등으로 장애인의 자발적 공제 설립이 어려울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직적, 재정적 측면에서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영보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험차별 구제심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 인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기초요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위험보장을 위한 공제도입과 관련해서는 장애유형별 역차별이나 낙인효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문제에 주의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제3주제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8.3조 원으로 GDP의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금지 법제 개편을 통해 차별이 개선되고, 정신질환 보장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보험 접근성은 낮은 편이며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과 정신질환 건강검진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층에 대한 정신질환 검진이 필요하며 근로기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40세 이전으로 검사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단체보험을 활성화하여 근로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인수기준을 마련해 정신질환 상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에 발병률이 높은 스트레스 및 불안장애, 기분장애, 조현병에 대한 보장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상품 공급 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이용 횟수 제한, 본인부담금, 연간 치료비 한도 제한과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론 이날 토론과정에서는 장애인 위험에 관한 기초통계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 해당 부처 간 협의와 보험회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보험가입 과정에서

차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장애인 위험보장을 위한 공제도입과 관련해서는 장애유형별 역차별이나 낙인효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문제에 주의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행사명 :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214

행사개요

- 일시 : 2017. 4. 17(월) 15: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주제 :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제1주제 :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따른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효과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 제3주제 : 헬스케어서비스의 산업 간 융복합
사례(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김대중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치원 (서울와이즈요양병원 원장)
성윤주 (녹십자헬스케어 상무)
손주형 (금융위원회 과장)
정기택 (경희대학교 교수)
최두아 (휴레이 포지티브 대표)
최수진 (산업통상자원 전략기획단MD)

개최배경

제4차 산업혁명과 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헬스케어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 국가에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관리가 중요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선순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 진입 대비 의료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성장 시기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저성장 기조하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혁신 기술의 융합과 디지털화 현상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ICT(모바일·인터넷)기반하에서 산업 간의 융합으로 요약된다. 인슈어테크로서 헬스케어산업은 보험과 의료·헬스(의료기기, 병원, 헬스케어 등)의 융합과 동시에 온라인보험(on-line)과 의료·헬스(off-line)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특징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신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간의 전·후방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은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체계의 선순환 전환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보험산업은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건강개선을 도모하고,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웨어러블기기 및 건강정보·기록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상품 및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산업은 인슈테크와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디지털 기술의 기회 선점 및 신사업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2주제 헬스케어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불필요하고 지나친 규제의 완화이다. 국민건강의 공공적인 특성과 건강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 및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와 주체를 의료법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나, 지나친 규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헬스케어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헬스케어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① 고용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② 만성질환

의 예방 및 사후 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③ 국민 건강증진, ④ 수출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헬스케어산업의 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우려도 분명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나, 우려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예방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의료시장 참여자, 공공·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균형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헬스케어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 및 적극적인 참여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건강증진의 효과는 장기간(생애주기, 세대 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헬스케어의 효율성 개선은 결국 더 많은 의료수요를 창출할 것이므로, 의료시장 참여자들은 타 업권 간의 경쟁적 구도보다는 협력적 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성장 장기화에 따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둘러싼 대립은 공감대 형성으로 해결하고 이해관계자의 균형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제3주제

헬스케어산업은 발전된 기술의 접목과 다양한 공급자의 생태계 진입으로 산업 간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서비스(공급자) 접점이 다변화되면서 맞춤형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수집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각각 기술이 통합적 시각에서 접목되고,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비즈니스 수익구조(Value-Chain) 간 공급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해 일상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스스로 라이프 디자인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해외 보험회사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산업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는 정부기관, 학계, 건강관리서비스사, IT 업체 등과 업무 제휴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형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보험회사도 환경변화를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혁신과 타 산업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한 신 수익모델 창출이 독자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해외 보험회사의 새로운 기술의 융합과 산업 간 혁신을 통한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은 정부의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규

제 개혁이 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저성장 시기 경제 성장의 견인책으로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이 필수적인 만큼, 의료기관 공급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헬스케어서비스의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건강정보 공유 활성화 및 개인정보 누출·악용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이 균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이날 토론과정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편익)와 우려(비용)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한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Risk-based Global Insurance Capital Standard

행사명 : 『Risk-based Global Insurance Capital Standard』 학술세미나 | 주관행사

217

행사개요

- 일시 : 2017. 6. 13(화) 14:00~16:30
- 장소 : 보험연구원 대회의실(12층)
- 주제 : Risk-based Global Insurance Capital Standard (ICS)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제1주제 : ICS Development
(한태진 금융감독원 선임)
 - 제2주제 : Market Adjusted Valuation의 이해
(김범 숭실대학교 교수)
 - 제3주제 :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와 가용자본 인정기준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4주제 : 요구자본의 산출방식과 리스크 요인의 상관성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 제5주제 : ICS 필드테스트를 통해 본 실무적 이슈 (한민섭 삼성화재 책임)

개최배경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국가별 자본규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보험그룹(IAIG)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자본기준인 ICS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ICS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본 세미나는 ICS 추진경과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험감독기준의 국제 표준을 이해하고 세계보험감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제1주제

ICS 개발작업은 2017년까지 추진되는 ICS 1단계에 이어 2019년에 완료되는 ICS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성된 ICS는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ICS의 적용대상은 글로벌 보험그룹(IAIG)으로 그룹 및 연결 기준 자본적정성을 산출하고 최소 기준을 제시한다. ICS는 자산·부채평가(valuation), 가용자본(capital resources), 요구자본(capital requirement)으로 구성되고,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주요 리스크(보험, 시장, 신용, 운영)를 모두 고려한다.

제2주제

ICS의 자산·부채평가방식은 시장기준조정방식(MAV)과 일반회계수정방식(GAAP+)으로 구분된다. MAV는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보험부채, 재보험을 조정하고 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최적추정방식(Best estimate basis)에 의해 재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GAAP+는 MAV의 대체방식으로 최적추정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일부의 부채에 대한 재평가를 제외하고는 기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국가별 자본규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보험그룹(IAIG)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자본기준인 ICS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ICS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험감독기준의 국제 표준을 이해하고 세계보험감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GAAP/IFRS 방식을 따른다. 자산·부채평가에 서의 주요 이슈로 보험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단일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위험 및 자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접근방식이 가능한가 등이 있다.

제3주제 IAIS는 가용자본의 질에 따라 인정기준(손실흡수성, 사용제한, 영구성, 가용성, 후순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ICS 공개초안 1.0'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후순위성·가용성·영구성 등과 관련하여 나라마다 또는 감독자와 보험회사 간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견들은 어느 시점에서 보험회사 지급능력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가용자본에 대칭되는 요구자본의 논의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4주제 ICS의 요구자본은 리스크 요소를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거대재해, 운영, 시장, 신용으로 분류하고 상관성을 반영하여 합산하여 산출한다. 각각의 개별 리스크는 위험계수방식 또는 스트레스 방식을 통하여 산출한다. 상관계수의 하향 조정은 리스크 분산 효과의 증가로 나타나 요구자본량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다양한 국가의 보험회사, 보험협회, 계리사회, 감독기관 간 상관계수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

제5주제 ICS 1차 필드테스트에서의 주요 이슈는 리스크마진과 주식리스크였다. 이후 리스크마진 산출 시 금리리스크를 제외하고, 주식리스크 산출 시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재분류하였다. 한편 2차 필드테스트에서는 금리리스크와 가용자본이 주요 이슈 사항이었다. 이후 금리리스크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평가방식이 조정되었다.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과제

행사명 : 제44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 | 주관행사

219

행사개요

- 일시 : 2017. 7. 7(금) 7:30~9:00
- 장소 : 조선포털 그랜드볼룸
- 주제 :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과제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제1주제 :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의 의료적 필요성
당뇨병 분야 적용 경험을 중심으로
(조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제2주제 :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의료·비의료행위 중심으로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헬스케어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장벽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헬스케어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료적, 법적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2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당뇨병이 4~6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7년 질병예방연구협의체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은 당뇨병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뇨병 고위험군인 내당능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림으로써 체중감량을 할 경우 평균 4년간 관찰하였을 때 당뇨병 발병률을 58% 낮출 수 있었다. 같은 연구에서 당뇨병 치료 약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한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당뇨병 발병률 감소 비율은 32%로, 이는 생활습관교정요법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였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당뇨병 관리 서비스에서도 당뇨병 관리 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스마트폰 앱을 자주 이용할수록 혈당 감소 효과가 크고 당뇨병 자가관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당뇨병 발병 고위험군을 상대로 생활습관교정요법을 사용한다면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며, 특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주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여러 가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 발병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제거 또는 경감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대 상황의 변화,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 사회통념을 감안하여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특히 기본적으로 헬스케어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 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판단한 행위에 대해 의료행위로 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측정기 등 평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혈압, 혈당, 지방 측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판례 및 유권해석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헬스케어서비스 유형 중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지도,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등의 경우에는 의료행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제거 또는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만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대 상황의 변화,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 사회통념을 감안하여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이미 의료기기과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일응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 개선

행사명 : 『보험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 개선』 공청회 | 주관행사

221

행사개요

- 일시 : 2017. 7. 12(수) 15: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 주제 : 보험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 개선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환영사 :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제1주제 : 장애분류표 현황 및 개선 필요성
(서영일, 금융감독원 팀장)
 - 제2주제 : 장애분류표 개선 방안 주요내용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교수)
 - 패널토론
 - 좌장 :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김영재 (교보생명 헬스케어센터 원장)
이영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디컬센터 센터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조재빈 (한국소비자원 차장)
김종오 (다스카손해사정 상무)
이용욱 (한국손해사정사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박동식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교수)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욱 (금융감독원 실장)

개최배경

현행 장애분류표는 의학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장애판정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장애에 대해서는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생·손보 업계는 대한의료감정학회 등 외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장애분류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장애분류표 개정은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장애분류표’는 민영보험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분류표는 장애 판정기준 미비,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한 장애 판정기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일반인 인식,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애 상태임에도 장애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 말하는 기능의 장애, 정신행동 장애 등 일부 장애의 판정기준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의학적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장애분류표상 일부 장애의 판정기준 등이

현재 마련 중인 장애분류표 개정방안은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인 장애평가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해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 요소 개입을 최소화하였으며 모호한 장애평가방법을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으로 대체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장애평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장애지급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장애 판정기준이 의학 전문용어 등으로만 기술되어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장애분류표를 마련하고 '18.1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2주제 현재 마련 중인 장애분류표 개정방안은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인 장애평가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해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 요소 개입을 최소화하였으며 모호한 장애평가방법을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으로 대체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장애평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장애지급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기존의 장애평가기준에 객관적인 장애평가방법을 추가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장애평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고 장애지급률의 상하향 조정하고 신규 장애지급률 추가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파생장애의 평가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는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수정안은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를 합산하여 합산한 파생장애와 최초의 장애를 비교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토론 토론에서는 현재 마련 중인 개정방안에 대한 장애평가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김규동 연구위원은 장애분류표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니지 못하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분류표가 자주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가 다수의 장애분류표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창욱 실장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의 어려움을 겪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행사명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국회의원 정종섭 공동주최)

223

행사개요

- 일시 : 2017. 8. 21(월)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정종섭 (국회의원)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발표 :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센터장)
 -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제실장)
 -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
 -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개최배경

최근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방진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적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수준의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

도록 한방진료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동 세미나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 환경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발표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31% 증가하여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 6,586억 원의 28%(4,635억 원)를 차지하였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는 한방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뿐만 아니라 1인당 한방비급여 진료비 증가에 기인한다. 동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하여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를 차지하였다. 또한 양방급여, 양방비급여, 한방급여의 1인당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2.2%, -5.4%, 2.5% 증가한 반면, 1인당 한방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8% 증가하였다.

한방진료를 이용하는 교통사고 환자 수가 증가하고 진료수가
와 적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한방진료를 이용하는 교통사고 환자 수가 증가
하고 진료수와 적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하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환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합
리적인 소비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개
입하여 필요·타당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
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료수가 인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결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
보된 결정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보건의료의 성
격상 자보수가기준에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진료수가기준의 추상성
을 적시에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진료수가 청
구서 및 명세서에 계약의 주요 성분·원산지·효
능 표기를 의무화하여 심사평가원이 환자를 대
신하여 계약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필요·타당성
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
째,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도
현지조사제도 도입을 통한 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

토론 이날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정부당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을 대표하여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한
방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
하였다. 다만, 한의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대부분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을 가진
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
방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
하였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

행사명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국회의원 주승용 공동주최)

225

행사개요

- 일시 : 2017. 8. 28(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주승용 (국회의원)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축사 :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제1주제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
 - 패널토론
 - 좌장 :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 토론 :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장)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개최배경

이번 토론회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여 선량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이상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보험의 사고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 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 원으로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하고 있어 음주·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10조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가해 운전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가 더 많을 경우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 운전자의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 폭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사고부담금 제도 강화와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정은 음주운전억제의 필요조건이고 불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예: 20% 한도)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자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조 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

현재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낮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증가하고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도 있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 제도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 확대와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인이 부담하는 방안(자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된 치료비지급보증제도는 지급보증제도의 규정 미비로 인해 과잉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치료비 지급보증제도는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 분쟁을 조정하고 자동차사고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목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내원 시기와 내원 당시 상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으로 보험회사는 환자의 치료기간과 치료금액 추산이 어려워 기한 없고 금액 한정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급보증은 대인배상 1뿐만 아니라 대인배상 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의 담보에도 적용되는데, 대인배상2의 경우 배상금액 한도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금액 한정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다. 기한 없고, 금액 한정 없는 치료비 지급보증은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유인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자배법 12조 개정)하여 보험금 누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잉치료와 보험금 과다청구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 제정과 적용, 그리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자배법 15조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합리적 피해자보호,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 억제가 기대된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 우리 사회가 음주 운전 가해자에 대한 법적·재정적 처벌이 매우 가벼운 상황이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발표자의 대안 제시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사고부담금 증가가 음주운전 감소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상범위 확대는 보험료 할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행사명 :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국회의원 민병두·금융감독원 공동 주최)

227

행사개요

- 일시 : 2017. 8. 30(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환영사 : 민병두 (국회의원)
 -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 축사 :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1주제 : 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 및 소방
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조정석 금융감독원 팀장)
 - 패널토론
 - 좌장 : 장동한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 토론 : 김한목 (삼성생명보험 상무)
 -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
 -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국장)
 -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
 - 천병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무)
 - 최영해 (동아일보 논설위원)

개최배경

민영보험은 정부나 사회가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의 위험을 보장한다

는 점에서 최근에는 공적 성격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가입 거절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소방공무원 및 고위험직종 종사자 전반에 대한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금융당국, 보험업계,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1 주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①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②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을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③ 보험가입을 거절하기도 하는데, 일부 고위험직업의 위험도가 고위험직종의 보험료에 비해 너무 높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보험 원리에 기반해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직종의 보험가입 확대는 3층보장론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개인보험은 정부나 기업(고용주)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여 3층보장론을 완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직업)의 위험으로 인해 개인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직업 위험도 때문에 증가한 보험료에 대해서 고용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료는 직업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은 원래 보험료에서 직업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증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직업으로 인해 증가된 보험료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기보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가입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별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직업별 사고 통계의 집적·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주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김규동 연구위원은 고위험직종 공무원의 보험가입은 정부가 고용주 입장에서 정책성 보험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정책성 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차후에 다른 고위험직종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제2주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업 위험(risk)을 고려하여 직업별로 차등화된 인수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보험회사의 인수 기준과 이를 적용하는 실무 관행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부 보험회사는 직무와 손해율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 희망자의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아닌, 가입 희망자의 직업(소속)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그동안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조정석 팀장은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 보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첫째, 보험회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회사의 청약서에 직무위험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항목을 신설하여 보험회사가 직무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셋째, 직업별 사고 통계 부족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직군을 확대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별 사고 통계 집적·관리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인수 현황”, “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공시될 예정이다.

토론 이날 학계, 보험업계, 언론계, 정당국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전문가들은 직업별 위험도에 따른 합리적 보험료 차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시장 원리로 인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행사명 :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보험과 미래포럼 공동주최)

229

행사개요

- 일시 : 2017. 9. 19(화)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제 :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 발표 및 토론
 - 인사말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박찬대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 축사 :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 제1주제 :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장만영 보험과 미래포럼 공동대표)
 - 패널토론
 - 좌장 :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법학회 회장)
 - 토론 : 김욱 (교보생명 전무)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영준 (단국대학교 교수)
양해환 (금융감독원 보험총괄팀장)
제종욱 (김앤장 전문위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개최배경

인슈어테크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보험산업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것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슈어테크로 인한 보험산업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보험업계와 정부 관계부처의 충분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고, 일부 법령이나 규제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에,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통제되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와 달리 동일한 정보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해 신뢰성이 높으며,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다.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및 기업 간 거래에서 효율성 증대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재)보험회사들은 재보험, 기업보험 및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처럼 보험사고의 규모가 크고 계약의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한 기업성 재물보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국내에서는 교보생명이 블록체인을 이

블록체인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환경을 바꿔놓을 수도 있으며, 보험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전통적인 보험산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보험산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며, 언더라이팅, 보험료 산출 등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시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관련 법규정은 이러한 기술 발전 및 보험환경 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용하여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는 등 생명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적용 시도가 있으나,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개인정보 및 보험계약 정보를 블록체인화 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본인 인증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둘째, 표준화된 보험금 중복 청구, 과다 진료 및 보험사기 관련 징후를 조기에 확인 가능하고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 심사 차이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자료의 신뢰성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적용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환경이 바뀔 수도 있어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계증권의 발행범위가 확대되고 P2P(peer-to-peer) 보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보험연계증권 발행이나 P2P보험 플랫폼 구축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서비스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주제 현행 상법과 약관규제법상 약관 교부 내지 약관 사본의 교부의무는 종이 약관을 전제로 한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나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상

품설명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약관 교부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을 위하여 보험업법에 관련근거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상법 및 약관규제법에서도 대면거래를 상정하여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의 경우 전자적 방식의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을 전제로 한 해피콜 제도를 비대면 보험 모집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온라인 보험판매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점진적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헬스케어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현행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야에서의 치료 및 건강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토론 이날 토론자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슈어테크의 활성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는 공감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이익 보호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의 적용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및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행사명 : 제45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 | 주관행사

231

행사개요

- 일시 : 2017. 10. 12(목) 7:30
- 장소 :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 주제 :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및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기조연설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 발표 :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개최배경

최근 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저금리, 새로운 회계제도,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판매수수료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축성 보험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장성보험 역시 시장 성숙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국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질적 성장 중심의 성장 전략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국내 금리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산업에 기회요인인 동시에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해약 증가 등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 환경 및 규제, 기술 변화 등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토대로 보험료 전망을 제시하고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 정책 및 전략을 논의하고자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기조연설

정부는 보험산업이 사회 변화와 경제 주체들의 요구에 맞는 위험보장 상품 공급이라는 본질적 기능 수행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험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상품개발 단계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헬스케어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 장애인 등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보험료 산정 단계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셋째, 보험판매 단계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을 활성화, 소비자 이해도 향상을 위한 TV 모집광고 개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사업비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보험금 청구·지급 단계에서는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다섯째, 보험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IFRS 17 등 관련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부채적성평가지의 단계적 강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건 완화 등 다양

2018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추세적 감소로 인해 1.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주요 경영과제로는 본연의 경쟁력 강화, 보험회사 위험관리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 대비를 제시하였다.

한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여섯째, 불필요한 사전적 한도 규제는 사후 건전성 감독으로 전환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영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할 계획이다.

주제발표 우리나라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추세적 감소로 인해 2017년에 0.81%, 2018년에 1.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변액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의 부진이 개선되면서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감소와 장기저축성보험 감소 지속으로 인해 2017년 대비 0.5%p 감소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네 가지 보험산업 대응 과제와, 각각의 대응과제별 세부 정책 및 경영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 선정에는 보험산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저성장, 금리상승,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과 금융업 본연의 역량 집증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반영하였다.

첫째, 양적 성장의 동력이었던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 본연의 경쟁력에 근거한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반손해보험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 비용효율적 해외진출, 겸영업무 역량 강화, 간단보험 활성화,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IFRS 17, IFRS 9, K-ICS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 및 해외투자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리변동과 환율변동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부채부담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증가, 보험해약률 상승에 따른 위험보장 공백 확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 역할 재정립, 공사협력 노후소득보장, 장애인·정신질환자 보장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간 융합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등장에 대비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으로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역량 배양, 보험과 헬스케어의 융복합,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지급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행사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금융산업협력위원회 공동주최)

233

행사개요

- 일시 : 2017. 11. 9(목) 10: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 홀(지하 1층)
- 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제1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
조정실장)
 - 제2주제 :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이사)
 - 손영래 (보건복지부 과장)
 - 손주형 (금융위원회 과장)
 -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개최배경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의 불충분한 보장을 보완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분담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2017년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공적 건강보험으로 완전 편입되고, 3대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와 환자의 지불능력을 환자 중심으로 통합적,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① 비급여 관리 강화, ② 법정본인부담 차등적 인하, ③ 공·사보험 간 연계 강화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 표준화·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정보의 통합적·연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한편,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 되더라도 여전히 20% 수준의 법정본인부담이 존재하므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더불어 환자에 따라 법정본인부담을 차등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의료비 규모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비급여 증가가 이를 전인하고 있는 만큼,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환자가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사보험 연계 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크게 강화할 계획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공·사건강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해외 민영건강보험 운영 사례를 보면 공보험과 관계에 따라 그 역할이 다양하므로, 우리나라는 공보험의 보완형에 맞는 공·사건강보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제2주제

주요국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과 대체·경쟁보다는 주로 보완·보충형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의 형평성·접근성 제고, 의료비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호주 등은 건강위험에 따른 민영건강보험 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대신, 만성질환자·고액 청구자 비중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지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독일 보건당국은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수가체계를 1965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국내 민영건강보험의 현안과 해외 사례를 종합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비급여 관리 강화가 전제 요건이므로, 비급여 조사 및 정보 공유 확대, 표준서식 마련 및 사용 의무,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부 및 심평원 주관의 비급여 진료의 표준가격 결정 혹은 청구 가능 범위 설정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 상품구조 개편 시 소비자의 권익 강화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비 중 개인부담(37%)이 OECD 평균(1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법정본인부담의 실손

보장 제외 검토는 실손 가입자의 보장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보험의 보완형에 맞는 바람직한 공·사 역할 정립 방안과 함께 사회안전망으로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이 균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자·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민영건강보험 가입지원을 위해 보험회사는 적정 보험료 보장 및 계약심사 완화를, 정부는 보험회사의 위험부담 경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간 연계 강화와 바람직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문재인케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 연계 방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Chapter

2

국제세미나

- 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 당신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고령사회, 공사보험 연계 방안
-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 보험의 미래 혁신

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행사명 : 『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국제세미나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생명보험협회 공동주최)

236

행사개요

- 일시 : 2017. 6. 28(수) 14:00~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기조연설 :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변화
(Larry Hartshorn, LIMRA 수석부사장)
 - 세션 1
 - 제1주제 : 국내 보험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와 향후 과제(황인창, 보험
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해외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활용
사례(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 세션 2
 - 제3주제 : 보험금 등 지급사정 시 AI 활용
(Hatta Takashi, 후코쿠생명 부장)
 - 제4주제 : 인슈어테크 혁신 - B3i, 보험산업
블록체인 컨소시엄(Georgio Mosis,
RGA 임원)
 - 제5주제 : 4차 산업 관련 기술 활용- 빅데이터
활용 중심(황승준, 한화생명 상무)

패널토론

- 좌장 : 김대식 (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석영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황승준 (한화생명 상무)
- Larry Hartshorn (LIMRA 수석부사장)
- Georgio Mosis (RGA 상무)
- Hatta Takashi (후코쿠생명 부장)



개최배경

지난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다보스 포럼이 개최된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사업모형이 부상하고 창조적 파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새로운 사업모형 수립과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새로운 사업모형 수립과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 및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산업의 구조변화, 의도하지 않은 소비자 피해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은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적합한 경영 및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은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적합한 경영 및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국내외 활용사례를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기조연설 4차 산업혁명은 한국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구성요소는 크게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으로 볼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인터넷의 만남은 사람과 사물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하게 해주면서 개인의 생활습관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보험 상품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전보다 대량의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것을 과거의 분석 방법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워졌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보험회사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한국 보험산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제1 주제 국내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경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망, 장수, 질병, 사고 등 위험에 대해 보장격차(protection gap)가 크게 발생하는 보장부족(underinsurance)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장격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을 살펴보면, 금융당국 및 보험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새로운 사업모형을 확립, 확장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비용 대비 수익 관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확립하여 보험산업 내 유연성과 다양성을 현재

국내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경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 만약 기존 보험회사들이 인슈어테크를 이해하고 산업 변화를 선도해 나가지 않는다면 완전히 다른 생태계의 가치사슬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고유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ICT 기술 접목 능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사업모형 확립·확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인슈어테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판매채널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판매 및 확장 사례가 다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채널을 통한 판매는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비용을 낮추어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 및 사업모형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사물인터넷은 보험회사에게 가장 필요한 종류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위험의 대상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축적으로 새로운 사업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P2P 등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보험 가치사슬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보험회사들이 인슈어테크를 이해하고 산업 변화를 선도해 나가지 않는다면 완전히 다른 생태계의 가치사슬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제3주제 후코쿠생명은 인원 감축 대응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목적으로 IBM사 Watson Explorer를 활용한 자동코드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진단서를 텍스

트화하여 상병명, 수술명, 입퇴원일 등을 특정화하고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상병명, 수술명을 동의어 전개 톨을 이용하여 정규화하고, 과거 지급이력을 이용하여 적정한 상병명, 수술명으로 변환하기 위해 학습한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은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인간의 지급심사와 AI 지급심사를 조합함으로써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1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 달성을 목표로 진행하였고, 2단계에서는 실제 인원 감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 변경 및 진단서 개선 등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활용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전제한 업무 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주제 블록체인은 이전의 전자상거래에서 우려되었던 부분들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계약 도입으로 탈중개화, 거래수수료 절약, 거래시간 단축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RGA는 2016년 10월 Swiss Re에서 주도한 B3i(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보험회사 가치사슬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가능성에 대해 공동 모색 중

국내외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금 지급심사 개선,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사업 프로세스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이해 기반의 과학적 영업지원 툴 지원 등 다양한 인슈어테크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다.

최근 들어 블록체인 성공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는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의 전 과정을 가속화하고 간소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보안취약성 및 규제 관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5주제 한화생명은 실용성, 범용성, 확장성, 내재성의 네 가지 방향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고객 이해 기반의 과학적 영업지원 툴(tool)을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업종과의 개인정보 비식별 결합을 통해 이중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부 프로세스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험데이터의 활용가치를 검증함으로써 수익모델화를 검토 중이다. 빅데이터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분석 영역으로 구분하여 목적별 최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향후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빅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화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 이번 국제세미나 발표자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행사명 :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국제세미나 | 주관행사

240

행사개요

- 일시 : 2017. 9. 15.(금) 13:30
- 장소 : 코리안리빌딩 강당(12층)
- 주제 : 회계제도 변화와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 발표 및 토론
 - o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o 축사 :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o 세션 1. 회계제도 변화가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미치는 영향
 - 제1주제 : IFRS 9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김진귀, 삼정회계법인 전무)
 - 제2주제 : IFRS 17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Sun Lei, ABL생명보험 사장)
 - o 세션 2. 해외 사례와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 제3주제 : 일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 변화 (Susumu Okamura, Education for Asian Talents 대표)
 - 제4주제 : Solvency II가 유럽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미친 영향 (Angela Choi, Willis Towers Watson 전략컨설턴트)
 - 제5주제 : 회계제도 변화와 보험회사 ALM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o 패널토론
 - 좌장 : 오창수 (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진귀 (삼정회계법인)

Sun Lei (ABL생명보험)
 Susumu Okamura (Education for Asian Talents)
 Angela Choi (Willis Towers Watson)
 조영현 (보험연구원)
 안조영 (교보생명보험)
 장원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개최배경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전례 없는 경영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저성장, 인구고령화라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더하여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IFRS 9 및 17) 및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및 판매,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제도적 환경하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부채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운용 전략의 중

새로운 제도적 환경하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부채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운용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은 보험회사 영업의 양대 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응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자리가 드물었다.

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은 보험회사 영업의 양대 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응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자리가 드물었다.

이에 따라 IFRS 9 및 17의 도입이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유럽·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제1 주제 IFRS 9은 ‘자산의 공정가치(시가) 평가’에 중점을 둔 기준으로 보험업은 부채의 공정가치(시가) 평가를 규정한 IFRS 17과 함께 도입해야 보다 유의미하다. 보험업은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기준서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IFRS 9과 IFRS 17을 함께 도입해야 보다 의미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현행 기준(IAS 39)과 비교하면 IFRS 9은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손상(대손충당금) 등이 크게 변경된다. IFRS 9은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AC),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 및 측정한다. 또한 손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기준에서는 발생손실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IFRS 9에서는 기대신용손실 개념으로 인식한다. 보험회사는 2021년 IFRS 9과 IFRS 17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나 연결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목적으로 IFRS 9 도입이 필요한 경우 2018~2020년까지 다음의 대안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IFRS 9을 적용하여 IFRS 9 도입으로 인한 손익변동 효과를 당기손익(P/L)으로 반영하거나, IFRS 9을 적용하되 IFRS 9 도입으로 인한 손익변동 효과를 자본(OCI)으로 반영한다. IFRS 9 도입은 지분상품 투자 축소, 장기채·해외채 투자 확대 등 자산배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대손충당금의 경기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신용위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2 주제 IFRS 17은 보험회사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① ALM, ② 회계적 불일치 및 변동성, ③ 보험상품 설계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

현재 ALM은 RBC 기준 듀레이션 갭을 관리한

현재 ALM은 RBC 기준 듀레이션 갭을 관리한 것이 일반적이거나, 향후에는 경제적(실질) 듀레이션 갭을 관리해야 한다. IFRS 17 도입 시 부채 듀레이션 확대가 불가피하기에 ALM 측면에서 자산 듀레이션 확대도 필수적이다.

것이 일반적이나, 향후에는 경제적(실질) 듀레이션 갭을 관리해야 한다. IFRS 17 도입 시 부채 듀레이션 확대가 불가피하기에 ALM 측면에서 자산 듀레이션 확대도 필수적이다.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채 매입이 필요한데, 국내 장기채는 물량이 충분치 않고 수익률이 낮아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쉽지 않다.

회계제도 전환에 대응하여 경제적 듀레이션 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적 불일치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적 듀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해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할 경우 RBC 비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보험회사의 실질 자본을 늘리는 금리상승에도 RBC 비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RBC 비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는 모회사 재무상태표상에서의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통해 완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룹 차원에서 도움이 될 뿐 보험회사 자체에 도움을 주진 못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제도 변화는 보험상품 설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을 고려한 상품개발이 필수이며 ALM이 상품개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제3주제 투자자 행태(behavior)는 경제기초(fundamental)에 의해 움직이지만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과거 30년간 저금리 및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자산운용 측면의 여러 부분에서 시사점을 얻었다. 규칙은 사명과 철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 무시될 수 있으며, 규제가 반드시 가장 최신이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고, 위험은 종종 새로운 기술로 가려진채 발생한다. 또한 위험은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더 자주 발생하며, 위기 후 규제 조치는 때때로 선제 조치보다 중요하기도 하다. “적절한 위험-수익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답을 얻어야 한다. 규제환경 측면에서 일본은 규칙중심(rules-based)에서 원칙중심(principles-based)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 투자자, 소매금융 측면에서 각각 지배구조,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신인 의무(fiduciary duty)가 도입되었다. 시가평가 기반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은 업력, 상품 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다.

제4주제 2016년 유럽 보험회사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를 도입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17 도입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IFRS 17 도입 비용은 0.25조~1조 유로로 예상되며 이는 Solvency II 도입 비용의 20~250%에 해당한다. Solvency II 도입으로 인해 요구자본, 특히 시

Solvency II는 유럽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투자유연성과 위험관리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였다.

장리스크 산출 방법이 크게 변화하였다. 스프레드 리스크는 무위험이자율 수익률 곡선에 대한 신용스프레드의 변동성에서 기인하는 리스크로 채권의 듀레이션과 신용등급에 의해 결정되었다. 주식은 글로벌 시장(유럽 혹은 OECD)의 경우 39%, 기타 시장 및 비상장인 경우 49%의 충격을 가정하여 리스크를 측정하였다. 부동산과 외환(충분히 헤지되지 않은 경우)은 25%의 충격을 가정하여 리스크를 측정하였다.

Solvency II는 유럽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투자유연성과 위험관리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산 배분이 시장 일관 기준(market consistent basis) 부채 평가, 위험 기반 자본규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등 다양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듀레이션 불일치, FX 불일치 등이 줄어들 수 있게 자산 포트폴리오가 재조정되었으며 주식투자 및 대체투자는 어려워졌다.

Solvency II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 측면에서 유럽 보험회사는 장기부채에 매칭이 되는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 부동산, 해외채권 등 투자대상을 다양화 하였으며, 수익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저신용등급 상품 시장을 주시하였다.

또한 Solvency II는 보험회사의 관리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 회계적, 지급여력 기준

간 상충(trade-off)을 고려한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했으며, 투자, 계리, 위험관리 부서 간 협업을 제고하였고, 회사 내의 독자적 ALM 부서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 보험회사는 Solvency II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IT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제5주제 IFRS 9에 의해 보험회사의 손익 변동성이 높아지고,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산구성에서 회계제도 전환을 가정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회계상 자본변동성(절대값 기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경제적 관점에서 현금흐름 및 자본관리를 하되, 향후 전환될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와 공통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듀레이션 갭과 IFRS 자본변동성을 동시에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비중과 듀레이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각후원가(AC)나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되는 자산의 투자형태 등을 바꾸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손익변동성 완화를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손보사는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비중 축소

경제적 듀레이션 갭과 IFRS 자본변동성을 동시에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비중과 듀레이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 비중 축소 및 장기채 비중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률 저하는 투자영역의 다변화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장기회사채, 신흥국 국채 등의 투자 비중 확대를 검토해야 하며, 신용리스크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산 부실화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IFRS 자본변동성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는 부채 듀레이션의 축소에도 지속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파생상품을 이용한 듀레이션 갭 관리 실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IFRS 자본변동성이 높은 손해보험회사는 특히 저신용자산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

이번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발표자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들이 IFRS 9, 17과 K-ICS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당신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고령사회, 공사보험 연계 방안

행사명 : 제10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

245

행사개요

- 일시 : 2017. 10. 18.(수) 09:00~16:00
- 장소 :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 볼룸(1층)
- 주제 : 당신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고령사회, 공사보험 연계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막사 :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 기조강연 : 데트로프 림프 (스위스리 아시아 UW총괄 사장)
 - 세션 1.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공사보험 연계 방안
 - 제1주제 : 유럽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공사협력 모델 (프레드헬름 슈니츨러, 독일 국제보건건설링 대표)
 - 제2주제 : 신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과제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
 - 제3주제 : 우리나라 공사건강보험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패널토론 1
 - 좌장 :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프레드헬름 슈니츨러(독일 국제보건건설링 대표)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 세션 2.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공사연금 포트폴리오

- 제1주제 : 주요국의 공사연금 운영 현황과 공사협력 모델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주요국의 퇴직연금과 연금세제 정책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정책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2

- 좌장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국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 실장)



공정한 질서를 위해 공사보험이 연계된다면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유리한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국민의료로 위해 공사보험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시장과 민간자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 속에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복지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재원과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진료비의 급증에도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국민연금도 2060년에 기금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사적보험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보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1주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강력한 공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민영건강보험(임의건강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규제들은 세 국가에서 모두 (1) 시장의 지속성, (2) 소비자 보호, (3) 소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적 건강보험이 국민 모두를 보장하나 Co-payment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국

민의료보장 향상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인지하고 세제 혜택,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체형 민영건강보험 가입 고용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공적 건강보험기금이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고 민영보험회사들은 운영을 대행한다. 민영건강보험은 치과, 안경, 약품, 정신질환 등의 추가 보장을 수행한다.

독일은 대부분 국민이 공적 건강보험을 가입(89%)하나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을 선택하고 있다(11%).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에 장수준비금(aging reserve)을 설정하여 연령이 상승해도 보험료가 안정되도록 하고, 민영보험의 취급을 단종보험회사로 하고 있다.

1-2주제

문제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당위성 부여, 비급여 항목의 평가, 심평원의 선진화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정책의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의료 수가, 전달체계의 개편은 당장 시행할 수 없으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공급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비급여에 대한 ‘우선 순위’와 ‘보장률’의 설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비급여 의료비의 특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사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수가 관리방식이 선진화 되어야 하며 비용변수만 통제하는 것이 아닌 질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정한 질서를 위해 공사보험이 연계된다면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유리한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국민의료를 위해 공사보험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1-3주제 문재인케어의 기본 방향은 매우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2022년 급여비가 86조에 이르는 대규모 재원 사업으로 추정되는 만큼, 의료비 통제와 재원 조달에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케어와 민영건강보험과의 관계 정립과 관련하여, 공적 보장의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칠 1차적인 영향은 해당 진료가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날 것이다.

공적 보장의 확대 정책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관리에 성공할 경우 (1) 비급여 표준화, (2) 표준화된 기준의 사용 의무화, (3) 건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로 이어지는 공사협력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예비급여에 대한 ‘우선 순위’와 ‘보장률’의 설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비급여 의료비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공사협력이 필요하다.

2-1주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대안모색 차원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리스터연금은 도입 후 가입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취약계층의 가입 및 급여수준이 낮고, 수수료가 높다는 한계가 있다. 즉, 리스터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나,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가입률이 낮고, 급여수준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한계가 있다. 또한, 낮은 수익률, 높은 수수료,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도 제도 확대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용 시 전제조건으로 적극적인 재정조치와 함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착이 전제된 후 도입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현행 개인연금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2-2주제 주요국의 퇴직연금과 연금세제 유형과 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

사적연금 활성화의 어려움은 낮은 가입률과 유지율 그리고 미흡한 연금화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적연금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입내실화 유도, 연금세제 지원 강화, 자산운용 효율화, 가입자 수급권 보호 그리고 연금화 유도를 제시할 수 있다.

주, 미국, 영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공사연금의 3층 연금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되어 왔다.

선진국과 유사한 연금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연금의 성숙도 측면에서 보면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도입률 상황,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이 적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공사연금의 연계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연금 다층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과거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을 통합하여 피용자 연금을 일원화하였고, 독일, 미국, 호주도 퇴직연금 제도 개혁과 공사협력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경주하고 있다.

2-3주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복지재정 및 공적연금 악화로 노후소득보장의 공적기능이 악화되고 있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잘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각지대, 재정문제, 급여수준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복지재정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적연금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

사적연금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입내실화 유도, 연금세제 지원 강화, 자산운용 효율화, 가입자 수급권 보호 그리고 연금화 유도 등이 있다.

토론 이번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자들은 100세 시대에 대비한 공·사건강보험, 공사연금의 연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행사명 :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손해보험협회·교통안전공단 공동주최)

249

행사개요

- 일시 : 2017. 11. 2(목) 10:20
- 장소 : 조선포탈 그랜드볼룸(1층)
- 주제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 인프라, 사회적 이슈 및 수용성 제고 방안
- 발표 및 토론
 - 축사 :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원욱 (국회의원)
 - 기조연설 1 :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장관)
 - 기조연설 2 : 에바 몰나
(前 UN유럽경제위원회교통실장)
 - 세션 1
 - 제1주제 : 종합안전 측면에서의 기술과 자율주행의 미래
(조셉 카니안드라, 前 NHTSA국장)
 - 제2주제 : EU 내 자율차 공동 개발 및 운영 방안
(알베르토 위텐바흐, EU 위성항법정 시장혁신담당관)
 - 제3주제 : 한국 정부의 자율차 정책
(이재평 국토교통부 과장)
 - 패널토론
 - 좌장 :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 토론 : 조셉 카니안드라 (前 NHTSA국장)
알베르토 위텐바흐 (EU 위성항법정 시장혁신담당관)
이재평 (국토교통부 과장)
김정룡 (한양대학교 교수)

○ 세션 2

- 제4주제 : 아우디의 자율주행기술
(미르코 리히터, 아우디 자율차 담당이사)
- 제5주제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고용 현황과 일자리 전망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6주제 :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법 체계
(이나 에버트, 독일 쾰 대학 교수)
- 제7주제 :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 인프라, 사회적 이슈, 수용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 관, 학, 연 협의체이다. 우리나라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가 국내에서 상용화되면 우리 사회에는 자동차 산업 및 도로교통의 영역은 물론, 경제, 고용,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각종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바, 위 포럼을 주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자율주행차에서부터 유관분야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제1 주제 美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서 자동차 안전 관련 연구개발(R&D)을 담당했던 조셉 카니안드라(Joseph Kaniyandra) 前 국장은 자동차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차 도입 이전의 과도기 상황에서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 주제 유럽 국가들의 연합체인 EU의 경우 특히 ‘연결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EU 위성항법청 알베르토 위텐바흐(Alberto Wytenbach) 시장혁신담당관은 유럽에서 계획 중인 정밀지도, 정밀 GPS, 커넥티드 자율주행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 주제 이재평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 기술과장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토부의 지원정책을 개괄하며 향후 지원계획을 공유하였다.



제4 주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을 내년 출시할 계획을 발표한 아우디에서는 미르코 리히터(Mirko Reuter) 자율주행분야 이사가 아우디의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과 전망을 발표하였다.

제5 주제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고용 현황과 일자리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6 주제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최근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이 개정되었고, 독일, 영국 및 미국 등 주요국들도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독일은 최근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es, StVG)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도입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등 주요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였다.

자동차보험, 특히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 선결과제로 자율주행자동차가 개입된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손해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때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회복이다.

독일의 법 체계는 한국과 매우 유사하고, 특히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책임 체계가 한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체계와 유사하므로,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 체계는 한국의 제도 변화에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교통사고 책임 주체에 관한 문제 및 해킹, 데이터보호, 자율주행시스템 및 차량 유지 관리 책임 주체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며,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등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 보유자 외에도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 도로 관리자 등 자율주행차 사고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 주체들이 배상책임보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사이버배상책임, 해킹, 데이터 유출 등 보험 보상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위험들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과 인간의 심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향후 관련 규제 및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현행 자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 제작사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가 공동의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동차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 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주요국들은 어떻게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제7주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사고 책임 법

보험의 미래 혁신

행사명 : 『보험의 미래 혁신』 글로벌 인슈어런스 컨퍼런스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LIMRA 공동주최)

252

행사개요

- 일시 : 2017. 11. 7(화)~11. 8(수)
-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
- 주제 : 보험의 미래 혁신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이안 왓츠 (LIMRA 수석부사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 기조연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제1주제 : AI-중심 회사가 되기 위한 방법
(스티브 모나건, 젠라이프 회장 겸 대표)
 - 제2주제 : 인지 시대의 보험: 혁신, 붕괴, 재발명
(마크 W. 카터, IBM 비즈니스혁신부장)
 - 제3주제 : 보험 기술 규제
(피터 카신, Kemdys 파트너)
 - 제4주제 : 동태적 언더라이팅
(존 카터슨, RGA 임원)
 - 패널토론 1 : 헬스케어 혁신
(래리 하트슨, LIMRA 부사장)
(올린 웨팅턴, Wethington International 회장)
 - 제5주제 : 오늘 날의 변화시키는 기술
(자넷 앤더슨, LSI 마케팅 최고책임자)
 - 패널토론 2 : 금융산업의 지평을 변화시키는 기술
(정유신, 서강대 교수, 좌장)
(허일규, SK텔레콤 상무)
(한준성, 하나금융그룹 부행장)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6주제 : 인공지능: 희망, 과대포장 혹은 공포
(스티브 모나건, 젠라이프 회장 겸 대표)
- 제7주제 : 경영전략 측면에서 바라본 AI 시대
(김대원, 카카오 정책지원파트장)

개최배경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보험산업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보험연구원과 LIMRA는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하고 있는 신기술에 의한 보험산업의 미래 혁신」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조연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기술의 발전이지만 그것이 어떤 기술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스티브 모나건은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AI 등의 기술 발전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크 W. 카터는 디지털화와 기술 발전은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터 카신은 향후 스마트 계약은 보험계약과 보험모집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존 카터스는 가치사슬적 동태적 언더라이팅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제1 주제 스티브 모나건(Steve Monaghan)은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AI 등의 기술 발전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술발전에 있어서 규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AI시대에는 기술 학습과 사업모형 적용을 통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 주제 마크 W. 카터(Mark W. Carter)는 디지털화와 기술 발전은 모든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라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블록체인은 거래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세상은 신뢰에 기반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보험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3가지 중요한 수단은 플랫폼,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슈어테크 사례들을 들었다.

제3 주제 피터 카신(Peter Cashin)은 향후 스마트 계약은 보험계약과 보험모집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스마트 계약이란 인간언어로 저장되는 기존 계약과 달리 컴퓨터 코드로 저장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스마트 계약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스마트계약은 투명성, 안정성 등이 뛰어나지만 계약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고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스마트계약의 규제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미국, EU의 사례를 예시하였다.

제4 주제 존 카터스(John Cardus)는 기존 언더라이팅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높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언더라이팅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치사슬적 동태적 언더라이팅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동적 언더라이팅과 관련해서 미국, 한국, 인도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토 론 1 래리 하트슨(Hartson)과 올린 웨팅턴(Olin Wethington)은 패널토론 1에서 건강관리 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래리 하트슨은 최근 건강보험에서 빠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의학기술, 정보화 기술, 정보 집적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2025년경에 예상되는 기술의 발전을 소개하였다. 원격의료, 유전자 검사, 드론, 로봇틱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넷 앤더슨은 “새 기술이 보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들은 새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소비자가 찍은 셀카에 기초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으로 기술의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가상 공간상 건강관리 자문 등의 신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올린 웨팅턴은 중국 건강보험 시장 관련 CDRF (China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를 소개하였다. 소비자와 건강보험 제공자 간의 균형 설정을 위해 결정해야 할 사항과 소비자의 건강보험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을 설명하고 더딘 보험상품 개발, 제공 서비스 부족, 낮은 수익률 등의 중국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국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으로 민간보험회사의 공동사업 모델 구축, 정부와 민간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제5주제 자넷 앤더슨(Janet Anderson)은 “새 기술이 보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들은 새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소비자가 찍은 셀카에 기초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으로 기술의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모바일, 인공지

능, 정보와 보험의 연계, 손해사정, 모바일 앱, 인력 절감, 로봇 설계사, 건강 센서 활용, 기술 수용 등의 주제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토론 2 허인규, 김석영, 한준성, 정유신은 패널토론 2에서 신기술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허인규는 평균과 대수의 법칙이 데이터 패러다임의 1차와 2차 전환이라면 실시간의 빅데이터가 3차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다고 말하였다. 김석영은 보험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준성은 금융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은 기회보다는 생존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유신은 디지털 시대의 상징은 디지털 스타트업인 유니콘이며 디지털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려면 주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스티브 모나건은 보험산업 역시 기술을 활용해 우리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김대원은 인간이 인공지능 및 로봇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6주제

스티브 모나건(Steve Monaghan)

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치적으로 일자리 감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우려의 기저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있고, 이는 좋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보험산업 역시 기술을 활용해 우리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7주제

김대원은 인공지능의 미래는 인

간이 주인이 될 것이며 인간이 인공지능 및 로봇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Chapter

3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IFRS 17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 IFRS 17 도입과 세무회계
- 최근 원화환율 동향 및 전망

IFRS 17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행사명 : 제22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258

행사개요

- 일시 : 2017. 2. 23(목) 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IFRS 17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 발표 및 토론
 - 발표 : 김은경 (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
 - 토론 :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국내 보험회사는 2021년 보험회계에 관한 국제기준인 IFRS 17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포럼은 IFRS 17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현행 보험회계는 국가별로 다른 회계기준, 보험산업의 특수한 회계처리,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 알기 어려운 이익정보로 인해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해자로부터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고품질의 회계기준을 발표하여 재무보고의 개선을 이루고자 1997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17년 상반기에 최종기준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IFRS 17의 주요 내용은 보험계약의 식별과 인

식, 통합의 수준, 보험부채의 측정, 보험회사의 손익 표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보험계약의 식별과 인식의 주요 내용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있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정의하고 일부 명백한 비보험요소는 보험요소와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 수준은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의 단위에 대한 내용으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단일 폴로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하되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의 유의적인 위험이 없는 계약,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나머지 계약집합으로 나누어 회계 처리한다.

보험부채의 측정은 보험계약 이행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의 명시적이고 편향되지 않는 확률가중 추정치의 현재가치인 이행현금흐름, 비금융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인 위험조정,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인 계약상 서비스 마진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손익은 비보험사와 보험사 간의 비교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 이익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영업손익과 투자영업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IFRS 17 도입과 세무회계

행사명 : 제23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259

행사개요

- 일시 : 2017. 5. 12(금) 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IFRS 17 도입과 세무회계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
 - 토론 :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2021년 도입될 보험회계에 관한 국제회계기준 IFRS 17은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포럼은 IFRS 17이 세무회계에 미칠 주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현행 보험회사의 법인세는 받은 보험료는 수익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비용으로 인식하여 산출하되 수익발생과 비용발생 간 시간차이는 책임준비금으로 조정하는 구조이다. 이때 책임준비금은 감독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IFRS 17은 기존 회계기준과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및 책임준비금 산출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이는 법인세 산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행 법인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IFRS 17로

작성한 재무제표 항목 중 계약서비스 마진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는 소득으로 가산하며, 최적추정부채 중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자비용은 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너무나 복잡한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만약 책임준비금이 최적추정부채보다 큰 경우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법인세법이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IFRS 17에 따른 재무제표와 법인세법에 따른 재무제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기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인세법이 IFRS 17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의 원칙과 모순이 된다는 점과 시가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IFRS 17에서는 금리변동 및 위험변동이 최적추정부채의 변동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으로 인해, IFRS 17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을 세무회계상 손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FRS 9과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원화환율 동향 및 전망

행사명 : 제24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260

행사개요

- 일시 : 2017. 12. 19(화) 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최근 원화환율 동향 및 전망
- 발표
 - 발표 :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최배경

최근 보험회사들은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장기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투자를 급속히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 대한 보험산업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본 포럼은 원화환율 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최근 원화환율 동향을 살펴보면, 금년 중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달성 예상, 국가신용도 유지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의 원/달러 환율 추이로 확장해 보면, 2017년 중 원/달러 평균환율은 1,133.4로 2010년 이후 평균수준(1,12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2015년: 1,059억 달러, 2016년: 987억 달러, 2017년 1/4~3/4분기: 618억 달러) 등 외환순공급으로 원화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자산축소)는 달러화 강세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금리인상 시행 이후 미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미달러화는 강세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유출되어 원화는 약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 되어 2014년 하반기 이후 이미 미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실제 미국 금리인상(최초 인상: 2015년 12월) 이후 미달러화는 보합 또는 약세로 반전되었다.

북한 리스크는 원화환율 상승 요인인데 아직까지 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의 현저한 규모와 강도, 위험의 장기화 가능성, 외국인의 쏠림현상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향후 원화환율은 외환순공급 지속이라는 외환수급(원화환율 하락요인)과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 북한 리스크 등 대외불확실성(원화환율 상승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로 환율이 정해지는 와중에 외환당국은 단기간에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Chapter

4

고령화포럼

-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대응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행사명 : 2017년 제1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262

행사개요

- 일시 : 2017. 1. 17(화) 16:3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 발표 및 토론
 - 발표 : 김동진 (교보생명 팀장)
 - 사회 :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2001년부터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서비스 회원 수는 약 6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보험회사의 세일즈 톨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유지율과 지급률을 개선시키고 보험가입자의 모델헤저드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이 제공하고 있는 헬스케어서비스는 평상시 건강관리(건강상담, 건강정보 제공), 가족 건강관리(건강검진 안내), 일반 치료지원(병원·의료진 안내 및 예약대행, 입·퇴원 시 차량에스코트), 중대질환 1:1 지원(암·중양 전문간호사의 병원동행 및 의료법률 자문) 등이 있다. 이 중 간호사 병원동행 서비스

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료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헬스케어서비스 비용은 예정유지비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CI보험 등 예정유지비 규모가 큰 상품에 헬스케어서비스를 연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IFRS 17/Solvency II의 도입으로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에 따른 준비금 적립과 부채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보생명은 종신보험에 부가되던 헬스케어서비스를 올해부터는 70세까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70세 이후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헬스케어서비스 공급자로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비교해 본다면,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험회사보다 효율성은 높을 수 있으나, 환자에게 적극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에 효과성 측면에서는 낮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헬스케어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의 자발적 니즈가 낮은 상황에서 공급자가 이를 유인할 다양한 도구(Tool)이나 유인(Incentive)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보다 더 효과적인 공급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대응

행사명 : 2017년 제2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263

행사개요

- 일시 : 2017. 4. 6(목)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1주제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
 - 2주제 : 개인연금법 제정(안)
 - 3주제 : 연금세제 수준 및 공사연계연금 도입
 - 4주제 :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및 금융교육 강화
- 토론
 - 토론 :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실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최배경 본 간담회는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준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 제1주제에서는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금형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자산운용 참여와 수급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어 도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수탁법인을 관리·감독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2주제에서는 연금상품과 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의 초점은 개인연금계좌에 대한 것으로 세제 적격과 비적격 상품 간 상호이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투자 일임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높아져 연금자산 관리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3주제에서는 연금세제 수준과 공사연계연금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적연금 세제의 적정수준을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고, 세제와 보조금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과세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4주제에서는 정부의 통합연금포털과 금융교육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내용의 품질 강화 노력이 필요하고, 무료 맞춤형 자문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Chapter

5

금융정책포럼

- 기본소득의 이해
- 보험시장 선진화, 도전과 과제: 가격자유화

기본소득의 이해

행사명 : 2017년 제1회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266

행사개요

- 일시 : 2017. 1. 18(수) 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기본소득의 이해
- 발표 및 토론
 - 발표 :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 사회 :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전망은 일자리에 근거한 소득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연금 등 소득위험을 보장하고 있는 보험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본 세미나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이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기본소득의 철학적 근거는 자유권, 평등권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재산권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정신이다.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의 수혜자인 빈곤층의 혜택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유층까지 포함하여 모든 이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된다면 중산층은 순납세자(net tax payer)에서 순수혜자로 변하게 되고,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정

치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늘리자는 것에 비해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더 쉽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일자리 불안정성, 임금격차 확대 등의 기술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자본의 집중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자산과 소득을 창출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이때 나머지 사람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불안전 노동자들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안정성을 실업수당, 구직수당 등 선별적 복지정책을 통해 보장하는 것은 행정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의 인권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의 공유재산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체로 모든 기술은 90%가 이미 공개된 사회의 지적 자산에 근거하여 생산되는 것이다. AI 기술의 중요한 요소인 알고리즘은 이미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데, 30년간 정체되었다가 최근에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통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 집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전체 사회의 생산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수준은 소득계층의 분포와 소득계층별 조세의 노동 및 투자유인 왜곡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시장 선진화, 도전과 과제

: 가격자율화

행사명 : 2017년 제2회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267

행사개요

- 일시 : 2017. 4. 14(금)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보험시장 선진화, 도전과 과제: 가격자율화
- 발표 및 토론
 - 발표 :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권대영 (메리츠화재보험 전무)
 - 나효철 (라이나생명보험 이사)
 - 송운상 (KB생명보험 상무)
 - 이평로 (KB손해보험 상무)
 -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금융위의 보험산업경쟁력 강화로드맵 발표 이후 가격자율화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보험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수익성 약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저금리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가 시장의 이슈로 부상하였다. 금융당국의 규제의 흐름은 보험료와 자산운용 규제에서 준비금과 자본규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보험료 자율화를 시행하였다. 가격자율화 이후 바람직한 시장의 모습

과 소비자 가용성과 가격자율화 간 조화가 가능한가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토론 최근의 보험제도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가격자율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시장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보험료 인상은 금리 하락이 한 원인이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부가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철학과 강도의 변화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실손보험과 같은 경우 정부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시적으로 보험회사가 가격을 올리는 선단적 행태를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며, 가격자율화의 순기능을 예상하고 있었다. 가격자율화는 보험업계의 인내만큼이나 금융당국이 인내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III.

2018년 주요 연구계획

보험회사 위험관리 제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보험규제 합리화

기타(보험연구원 10년사)

보험회사 위험관리 제고

270

회계제도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계약자배당제도를 중심으로

김규동(연구위원) | 보고서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 9과 IFRS 17은 현행 수익인식 기준과는 전혀 다른 수익인식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금융자산회계기준인 IFRS 9은 ‘자산의 공정가치(시가) 평가’에 중점을 둔 기준서로 자산의 분류와 손상 인식 방법이 현행 회계기준(IAS 39)과 다르며, IFRS 17은 시가평가로부터 예상되는 장래이익은 보장서비스 제공에 비례하여 천천히 인식하고, 장래 예상되는 결손은 즉시 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수익인식 기준의 변화는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 배당 방식에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회계제도 변화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계약자 배당 방안을 살펴보고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Solvency II 시행 이후 유럽보험시장 연구

김해식(연구위원) | 보고서

유럽연합(EU)의 보험회사 자본규제, 즉 지급여력 규제기준인 Solvency II는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가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 제정 작업에서 중요한 벤치마크가 되고 있고, ICS가 국내 지급여력제도 개선 작업의 기본 틀이라는 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이 미래 자본규제 환경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Solvency II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時價)로 평가하여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U는 2016년부터 Solvency II를 적용 중이며, 현재도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보고서는 Solvency II 시행 전후의 유럽 보험시장 연구를 통해 유럽의 보험산업이 어떻게 새로운 자본규제 시행에 대비해 왔으며, 제기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거나 진행 중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에 줄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과정이 세계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보험산업도 이러한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현황 및 정상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지급능력, 자본관리, 그리고 자산운용 전략 및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운용에 관한 연구

조영현(연구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운용자산 중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말 기준 생명보험회사는 18.8%, 손해보험회사는 30.2%로 일본 및 미국 보험회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정책으로 가계대출 확대가 어려워지는 환경이며, 부동산 경기 악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대출채권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향후 도입될 IFRS 9 및 17 등으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자본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채권 비중 축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비중 축소 방안에 대해 검토

토하며, 대체 자산 투자에 대해 분석한다.

생명보험상품의 장수리스크 연구

김세중(연구위원) | 보고서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장수리스크 요구자본이 신설되는 등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이해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해외 요구자본제도의 장수리스크 개념을 정리하고 연금상품의 장수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연금상품과 종신보험 간의 자연헤지(natural hedge) 관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다. 추가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방향 연구

기승도(수석연구위원) | 보고서

현재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제도는 1987년에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손해보험회사들은 불량물건(모든 보험

사 인수거절물건) 처리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특정물건’을 공동인수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편익과 피해자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동 상호협정이 마련되었다.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1987년의 공동인수제도 틀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부내용만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사고위험도가 높은 가입자 인수를 억제하는 등 인수정책을 강화하면서 공동인수물건 비중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공동인수물건 대상 담보를 전담보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불량물건 처리방법으로서 “현 공동인수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아니면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인수 관련 사회적 논란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내재적 요인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불량물건처리 제도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한 불량물건처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2

273

인구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994년 14%를 넘어섰고(고령사회 진입), 2005년 20%를 초과하여(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20년 정도 앞서있으며, 경제 및 사회,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경험해 왔다.

일본의 경우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산업의 경우 수요 감소, 수익성 하락 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전략이 수립되었고 규제 완화도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인구고령화 추이 및 원인,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 경제, 재정 및 금융시장, 그리고 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보험산업의 대응을 정리하고자 한다.

2019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은 저금리, 시장성숙 등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양적 성장에서 수익성 위주의 질적 성장 중심으로 성장 전략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경기회복세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국내 금리상승, 회계제도와 감독제도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은 보험산업의 위기가 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교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혁신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사회적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2019년 보험료를 전망하고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중장기 전망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거시경제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계기준과 지급여력제도 개정으로 금리변동 등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화의 영향 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보험산업 블록을 포괄하는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대내외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정책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베트남 진출 전략

조용운(연구위원) | 보고서

2016년 말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주춤한 상황이다. 보험회사 해외점포는 81개로 2015년(84개), 2014년(83개) 대비 감소하였다. 반면, 은행은 178개로 전년(170개) 대비 증가하고, 여신전문회사도 33개로 전년(26개) 대비 증

가하였다.

2016년 말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회사 총자산 대비 해외점포 자산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비중은 1.4%로 전년(1.5%) 대비 감소하였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는 0.5%에 불과하다. 반면, 은행은 5.1%로 전년(4.8%) 대비 증가하고, 여신전문회사도 7.4%로 전년(3.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본고는 아세안 지역의 보험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베트남 시장의 위상을 비교 평가하고, 베트남 보험시장을 집중 조사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베트남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자본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황인창(연구위원) |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국가재정 악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장기자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자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자본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주요 자본공급 주체는 장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및 연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특

히, 장기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정책과제 도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자본공급 현황 및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방안

임준(연구위원) | 보고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적절한 위험관리 및 피해구제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보험은 디지털경제의 피해구제체계 가운데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여러 제약 요인에 의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과제에서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최창희(연구위원) | 보고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보험회사들이 머신러닝을 보험사기 적발, 요율산출, 마케팅,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고 국내 보험회사들도 최근 들어 머신러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개발원은 사고정보이력시스템(ICPS)을 개발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영업 및 마케팅 등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도 있다.

여러 가지 인자(날씨, 경기, 행사)들이 보험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험사고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경영에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머신러닝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보험회사들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보험사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276

요양병원 운영 현황 및 역할 정립 방안

이정택(연구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0.8%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사망의 원인이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인구의 의료비 중 요양병원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의 의료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노인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실손보험 손해를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연금위험 관리 방안

최장훈(연구위원) | 보고서

노후대비를 위하여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잠재적 연금가입자는 연금화 위험(annutization risk)-연금가입 이후 금리와 물가 등과 같은 거시

경제 상태의 변화에 연금의 실질소득이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연금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 정채되어 있는 개인의 연금 가입을 늘려 연금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 시점에서 연금포트폴리오와 은퇴 전의 투자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연금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연금포트폴리오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은퇴 직전에 연금포트폴리오 자산의 가치를 최적화(위험 및 기대수익의 최적화)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장기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 연금정책의 국제 비교와 정책 방향

강성호(연구위원) | 보고서

고령화와 여성의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여성에 대한 연금정책 마련이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6.2세 높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 가입 및 수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공적연금에서도 유족연금, 분할연금, 부양가족연금 등 파생적 성격의 연금이 여성연금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공사적 연금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의 여성연금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여성의 연금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진국은 공적연금으로 배우자연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후빈곤에 대비하여 사적연금에서도 다양한 대응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즉, 여성에 특화된 IRA운용(미국 등), 분할 연금지급(독일, 캐나다 등), 유족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여성 노후대비실태, 해외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 특징 등을 살펴본 후 사적연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사회 대비 예방중심 건강관리 연구

오승연(연구위원) | 보고서

질병의 유형과 특징은 생활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한다. 경제활동 공간이 농경사회에서 육체노동 중심의 제조업으로, 정신노동 중심의 서비스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요한 질병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사후적 급성기 치료에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까지 예방정책은 주로 공중보건과 의료부문에 집중해 왔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문

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직장, 시장 등 다양한 생활공간 속에서 민간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의 질병의 특징과 예방정책의 변화과정, 그리고 민간 부문의 역할 및 공·사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향후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임태준(연구위원) | 보고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자 한다. 특히,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이 기존과 동일한 매출총이익률(profit margin ratio)을 유지할 경우 가능한 보험료 최대 인하수준을 보고서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4

소비자 보호 및 보험규제 합리화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원석(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보험 소비자의 보험상품 접근 및 선택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전속설계사 숫자가 보험회사 경쟁력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미래에는 고객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진 회사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

보험회사들 역시 기술 발달에 따라 전속설계사 중심에서 방카슈랑스, TM, 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한 판매채널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속설계사 중심의 판매채널이 중심이었으나 방카슈랑스, TM, 온라인 채널 등이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채널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여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설계사 채널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판매채널 그리고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보험 시장 및 관련 규제의 변화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황현아(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서류에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보험계약 및 상품 관련 중요 서류들이 모두 포함되고 그 위반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간수입보험료라는 일률적 기준에 의해 과징금을 산정, 부과하게 되면 그 위반의 경중에 상응하지 아니한 부당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그 위반의 세부 양태에 부합하는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보험 모집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 모집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 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모집자격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모집”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단순한 소개, 광고, 홍보 행위와 보험 모집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 모집행위의 의미에 대한 관련 법규, 판례, 유권해석,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보험 모집행위의 구체적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타

5

보험연구원 10년사

안철경(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2018년은 보험연구원이 설립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보험연구원은 2008년 2월 인사, 예산, 운영이 분리된 독립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2010년 11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보험연구원은 전신인 보험연구소가 1995년에 설치된 이래 조직의 부침이 심했고, 독립조직으로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설립 과정이 별도로 진행되는 등 복잡한 발전 과정을 겪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 역량을 개선하고 업적을 축적한 바 관련 내용을 보험연구원의 10년사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보험연구원 창립 과정과 그간의 활동을 종합함으로써 연구원 현주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IV.

2017년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 제공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KiRi 고령화리뷰
각종 대외 연구 활동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보험·금융 도서 정보 제공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 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전반을 아우르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투고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간 발간 횟수를 3회(3월, 7월, 11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1월)로 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의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17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1호 (2017년 2월)	제 목	저 자
	Stopping Rule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위험집단 구분 및 적정 손해 수준 추정	김명준, 이상준, 김영화
	IoT 기반 스마트 뱅킹서비스의 인지도 보안과 신뢰가 서비스 이용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허연, 임세현
	우리나라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보험회사특성별·보험모집방법별 유지율기준 적합성분석 - 독립채널과 전속채널을 중심으로 -	이근창, 오기석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투자 기업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호성, 김순호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2호 (2017년 5월)	제 목	저 자
	한국경제에서 Forward Guidance 정책효과 추정방안 모색	주동현
	방카슈랑스채널이 사망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창수, 정희문
	자기부담금 보험계약의 보험수요에 관한 연구 : 무보험, 일부보험 및 전부보험의 보험료 조건	홍순구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3호 (2017년 8월)	CDS에 내재된 Q-P 비율에 관한 연구	김정무, 박윤정
	제 목	저 자
	외제차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 김현수
	IFRS 17 도입에 따른 종신보험의 보증형태별 보증비용 및 수익성 분석	오창수, 은재경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4호 (2017년 11월)	혼합복점시장에서 R&D 리스크의 선택과 민영화	이상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재무적 효과	성주호, 신동건, 배상현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4호 (2017년 11월)	제 목	저 자
	보험설계사 이직 요인과 정착률 제고 방안	안철경, 정세창
	이사회적 적극적인 감시기능은 항상 주주가치를 개선시키는가?	이지혜, 변희섭
	확률지배를 활용한 DC형 퇴직연금의 목표연계 투자전략	김용태, 성주호, 정도영
	국제회계기준하의 보험계약부채 공정가치 산출에 관한 연구	오창수

2.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 제공

동향분석실은 경제·금융·보험 관련 환경 변화와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KiRi 리포트』, 『보험동향』,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Korean Insurance Industry』를 제공하고 있다.

『KiRi 리포트』는 격주로 발간되는 웹 저널로 보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까지 총 434호가 발표되었다. 2016년 10월에 『KiRi 위클리』가 현재의 『KiRi 리포트』로 개편되어 주간 발간되던 것이 격주 발간으로 바뀌었으며, 2017년 2월에는 해외 학술연구분석이 추가되는 변화가 있었다. 『KiRi 리포트』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포커스, 주간 이슈, 해외 학술연구분석, 글로벌 이슈,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로 구성된다. 포커스는 경제, 금융, 보험산업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제공한다. 주간 이슈는 실물경제와 금융 및 보험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 또는 핵심 정보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제시한다. 해외 학술연구분석은 보험, 금융 관련 국제적인 학술연구보고서, 기업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최신 연구동향을 보험관련 전문가, 금융당국, 소비자에게 소개한다. 글로벌 이슈는 광범위한 글로벌 경제, 금융, 보험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소재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는 금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 금리·환율·주가·국채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한다. 한편, 1년 동안 발표된 『KiRi 리포트』를 집적하여 매년 1회 『KiRi 리포트 모음집』도 발간하고 있다.

『보험동향』은 분기별로 연 4회 발간되며, 경제금융 동향, 국내보험 동향, 해외보험 동향으로 구성된다. 2016년 가을호부터 그동안 제공되던 테마진단은 폐지되었다. 경제금융 동향은 보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국내보험 동향은 보험회사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집적하여 보험료, 구성비, 시장점유율, 판매채널, 경영성과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이사항 및 추세 변화 원인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해외보험 동향은 데이터 집적이 가능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보험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는 보험회사의 분기별 경영성과, 보험료, 종목별 구성비, 시장점유율, 자산운용 수익률, 판매채널 등을 간략히 분석하여 영문으로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는 보험시장을 둘러싼 금융·경제 환경 변화와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기초로 한 보험시장의 변화 추세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보험산업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보험료, 수익과 비용, 판매채널 등에 대한 정보를 연 1회 영문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3.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보험수요 변화, 보험 가입 행태, 보험산업 주요 이슈 등의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권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통계 데이터와 보고서는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감독 당국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일부는 보험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조사 결과를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 활용 등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분석 자료로 재 활용하고 있다.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조사대행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해 2017년 6월 시행되었으며, 연령·성별·지역·수입규모·결혼유무 등을 기준으로 추출된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 총 2,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보험 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시행되는 기본조사와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기본조사에는 보험 가입률, 가입 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 만족도, 향후 상품 및 채널별 가입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이유와 관련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에는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연금 및 노후생활 준비실태,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연성보험사기가 포함되었다.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17)

연 도	주요 이슈
2001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2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03년	주 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4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2005년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만족 및 방카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2006년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2007년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2008년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2009년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2010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 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 자산관리서비스, 대출 관련)
2011년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
2012년	경제환경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추세 변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문제, 가격경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2013년	방카슈랑스 채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실태, 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노후생활 및 연금, 금융자산
2014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금융역량 및 보험 이해도, LTC보험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은퇴자산 선택행위 분석,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해약/효력상실 해지, 개인정보 보호
2015년	실손의료보험, 정년제, 빅데이터 관련 보험 상품,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노후소득 등의 준비, 연금제도,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2016년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연금 보험 및 노후생활 준비 실태,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
2017년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노후생활 준비 실태, 연금 가입 상태 및 가입 니즈,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연성보험사기 관련

4. KiRi 고령화리뷰

사회안전망연구실이 주관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는 『KiRi 고령화리뷰』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현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사적 부문의 역할에 대해 시사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 관련 통계, 정책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소개하고 있다.

『KiRi 고령화리뷰』는 과거 연간보고서로 발간되었던 것을 반기별로 발간하다가 시사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월간지 형태로 개편하였다. 『KiRi 고령화리뷰』는 심층적인 분석을 다루는 포커스, 전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한 이슈 분석,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다루는 국내 동향/해외 동향, 고령화와 관련된 각종 핵심 지표들을 업데이트하는 고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령화 지표는 관련 지표들을 인구 및 복지재정, 노동·빈곤 및 노후소득, 건강 등 3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여 순차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공적/사적 부문 간 균형 있는 관심과 비중을 가지고 발간되는 정간물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KiRi 고령화리뷰』의 차별성과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다.

5. 각종 대외 연구 활동

5.1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금융 및 보험산업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각종 금융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행사 내용

- 주최 : 보험개발원
- 일시 및 장소 : 2017. 2. 2(목) 15:00,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 1층 대강당
- 주제 :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 사회 : 김성태 (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일태 (금융감독원 팀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신종원 (YMCA 본부장),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해당 제도 도입이 가입자들에게 큰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전략의 진단과 모색” 한국연금학회 2017년 춘계학술 대회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연금학회
- 일시 및 장소 : 2017. 4. 21(금) 13:00,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6층) 및 601호 강의실
- 제1섹션 제1주제 : 일본 DC형 운용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적 함의(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2섹션 제4주제 : 소득 계층별 자산 추정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 사회 :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박사)
- 토론 : 박희진 (근로복지공단 박사)
- 토론 : 김희선 (국민연금연구원 박사)

“2025 금융의 미래-새로운 금융이 온다” 머니투데이 창간 16주년 기념 금융전문가 좌담회

행사 내용

- 주 최 : 머니투데이
- 일 시 : 2017. 7. 19(수)
- 주 제 : 금융산업의 변화와 대응 방안
- 참석자 :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학수 (금융위원회 국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 한준성 (KEB하나은행 부행장), 이정훈 (핑커 상무)



-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보험 기능 자체를 수행하는 산업이 나타나면 보험인력이 그쪽으로 더 퍼지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금융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2017. 9. 27(수) 14:00, 예금보험공사 대강당(19층)
- 사회 :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성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홍민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성기 (금융위원회 팀장)
-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비은행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서는 과잉규제이다”고 주장했다.

5.2 작업반, 회의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2017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및 보험상품감독위원회 참여를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각종 T/F	작업반 명 / 주최	참여자
	장해분류표 개정 TF / 손해보험협회	김규동
	고위험군 민영보험 가입활성화 TF / 금융감독원	김규동
	4차산업혁명 대비 금융부분 TF / 금융위원회	김석영
	IFRS 17 적용지원 TF / 한국회계기준원	김해식, 황인창
	자본규제개선 TF / 금융위원회	김해식
	개인연금법 실무자 TF / 금융위원회	강성호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술개발 TF / 국토교통부	기승도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 / 금융위원회	오승연, 이정택
	사이버보험 활성화방안 TF / 한국침해사고대응팀	이승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 금융위원회	임준
	부동산 금융연구 TF / 금융위원회	임준환
	보험업계 헬스케어서비스 TF/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정성희
	신정부 민영의료보험 정책관련 작업반 / 보험유관기관	정성희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TF / 금융위원회	최창희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 TF / 금융위원회	김세중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 금융위원회	김석영
회의/ 자문/ 포럼	회의·자문·포럼 명 / 주최	참여자
	IFRS 17 도입준비위원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7)	조재린, 김해식, 황인창
	보험상품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2017.6 ~ 2019.5)	백영화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제도개선분과 / 기획재정부 (2017.8 ~ 2018.2)	강성호
	자율주행차 융복합 비즈니스분과 / 국토교통부 (2016.6 ~ 2018.5)	기승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 금융위원회 (2017)	안철경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 금융감독원 (2017)	안철경
	보험적립금운용분과 / 우정사업본부 (2017)	안철경
	금융산업정책위원회 / 서울시 (2017)	안철경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 금융위원회 (2017.9 ~)	이태열

6.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6.1 국제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보험·금융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7년 보험연구원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7년에 10회를 맞이하고 있는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을 포함하여 총 4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는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공동으로 2017년 6월 28일에 개최되었다.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는 보험연구원 단독으로 2017년 9월 15일에 개최되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은 ‘당신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를 주제로 2017년 10월 18일에 개최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는 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보험연구원 공동으로 2017년 11월 2일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보험의 미래 혁신’을 주제로 한 글로벌 인슈어런스 컨퍼런스는 LIMRA와 보험연구원 공동으로 2017년 11월 7~8일에 개최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용		
2017년 국제세미나 (2017년 6월 28일)	소주제	발표자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변화	래리 하트슨 림라 수석부사장
	국내 보험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와 향후과제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해외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활용사례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보험금 등 지급사정 시 AI 활용	하타 다카시 후코구생명 부장
	인슈어테크 혁신: B3i, 보험산업 블록체인 컨소시엄	조르지오 모시스 알지에 임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 빅데이터 활용 중심	황승준 한화생명 상무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2017년 국제세미나 (2017년 9월 15일)	소주제	발표자
	IFRS 9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김진귀 삼정회계법인 상무
	IFRS 17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순레이 에이비엘생명보험 사장
	일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 변화	스스무 오키무라 인재아시아 대표
	Solvency II가 유럽보험회사 자산운용에 미친 영향	안젤라 초이 위리스 타워스 와슨 전략컨설턴트
	회계제도 변화와 보험회사 ALM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국제 보험산업심포지엄 (2017년 10월 18일)	당신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고령사회, 공사보험 연계 방안	
	소주제	발표자
	유럽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공·사협력 모델	프레드헬름 슈니츨러 독일 국제보건컨설팅 대표
	신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과제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공·사건강보험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국의 공·사연금 운영 현황과 공사협력 모델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주요국의 퇴직연금과 연금세제 정책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공·사연금정책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국제컨퍼런스 (2017년 11월 2일)	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미래	
	소주제	발표자
	종합안전 측면에서의 기술과 자율주행의 미래	조셉 카니안드라 前 NHTSA국장
	EU 내 자율차 공동 개발 및 운영 방안	알베르토 위텐바흐 EU 위성항법청 시장혁신 담당관
	한국 정부의 자율차 정책	이재평 국토교통부 과장
	아우디의 자율주행기술	미르코 리히터 아우디 자율차 담당이사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고용 현황과 일자리 전망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체계	이나 에버트 독일 쾰른 대학 교수
2017년 글로벌 인슈어런스 컨퍼런스 (2017년 11월 7~8일)	보험의 미래 혁신	
	소주제	발표자
	AI-중심 보험회사가 되기 위한 방법	스티브 모나건 젠라이프 회장 겸 대표이사
	인지 시대의 보험: 혁신, 붕괴, 재발명	마크 W. 카터 아이비엠 글로벌 보험산업국 비즈니스혁신부장
	보험 기술 규제	피터 카신 케네디스 기업보험 국제부 담당 파트너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라이싱과 언더라이팅의 변화	존 카터슨 알지메이 임원
	헬스케어 혁신	래리 하트슨 림라 부사장
	오늘 날의 변화시키는 기술	자넷 앤더슨 레이프투스 솔루션 마케팅 최고책임자
	인공지능: 희망, 과대포장 혹은 공포	스티브 모나건 젠라이프 회장 겸 대표이사
	경영전략 측면에서 바라본 AI 시대	김대원 카카오 정책지원팀장

6.2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자료 작성과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ECD와 관련된 일련의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때 대한민국 OECD 대표부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보험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의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 요청자료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 정기회의에서부터 2017년 12월의 제100차 정기회의까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7년 6월과 12월에 개최된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시장중심의 보험 및 사적연금 시스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보험, 사이버리스크보험, 재해 리스크 재원조달과 보험, 보험산업의 기술혁신(Insurtech), 감독기관 지배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7. 보험·금융 도서 정보 제공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에서는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Best, LOMA, LIMR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E-gen Touch」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며, 보험연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2017년 12월 말 현재 단행본 25,000여 권, 학위논문 1,900여 권, 정기간행물 100여 종, 세미나 자료 및 보고서 2,600여 종, 비도서 자료 11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V.

일반 현황

경영비전

연혁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임직원 현황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1. 경영비전

본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2. 연혁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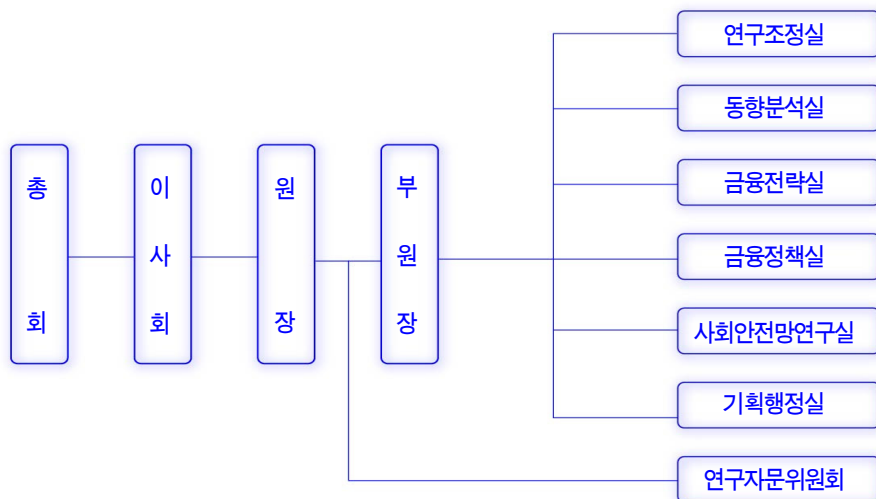
4대 한기정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 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 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2013년 4월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6년 4월	4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취임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1 조직도



3.2 총회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4개사, 손해보험회사 17개사가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2017년에는 2017년 2월 1차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총 4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에는 2017년 2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2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2017년 연구자문위원회는 2018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17년 10월에 개최되었다.

4. 임직원 현황

(2017. 12월 말 현재)

원장	연구직			행정원	초빙연구위원	임시직원	합계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원				
1	30	23	3	8	2	5	72

5.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원장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성명	직위	최종학위
한기정	원장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 박사

부원장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결위 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안철경	부원장	송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연구조정실

- 연구사업계획의 기획 및 수립
- 연구사업계획의 일정 및 실적 관리
- 연구관련 대외업무 및 직원의 대외활동 관리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획
- 연구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각종 연구 관련 위원회의 주관
- 신규연구사업 개발 및 업무 조정
- 대내외 연구원 홍보 및 소통
- 발간물의 편집 및 교열
- 홈페이지, 인터넷, 사무관리전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기타 연구 관련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업무분야
조재린	실장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비모수회귀분석, 최적디자인
변혜원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김선아	감사/부장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감사, 연구행정 업무
장동식	수석연구원	송실대학교 정보통계학 박사과정 수료	행사, 연구행정 업무
변철성	수석담당역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홍보, 전산 업무

동향분석실

- 국내외 경제, 금융동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 국내 보험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국내 보험회사 재무분석
- 해외 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 금융 및 경제관련 주요통계의 집적관리
-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 보험 가입성향 등 수요자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전용식	실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계량경제, 금융경제, 환경경제
이승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김규동	연구위원	Temple University 보험학 박사	보험, 리스크 관리
김진억	수석담당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관리
권오경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
이혜은	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정인영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이소양	연구원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중국동향
최예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글로벌리스크, 보험
정민지	연구조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금융전략실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일반생명보험 관련 연구
-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 관한 연구
-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재보험기법 등에 관한 연구
- 자산운용 연구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재무건정성감독 연구
- 회사별 경영성과 평가 연구
- 보험회계 및 세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정성희	실장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응용통계(화귀분석, 실험설계), 보험계리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재무관리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국제경제, 응용미시
최창희	연구위원	The University of Iowa 경영과학 박사	보험계리, 경영과학
송윤아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황현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수료/변호사	보험법, 상법
조영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시장미시구조,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황인창	연구위원	KAIST 경영공학 박사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재무계량경제
임태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금융경제
기승도	수석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	통계학, 자동차보험
채원영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응용통계
이아름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금융, 무역
한성원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
홍민지	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금융
김미현	연구조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경영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금융정책실

- 보험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과제 개발연구 및 지원
- 보험회사 합병, 겸업화, 진입·퇴출 등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 보험모집 및 채널에 관한 연구
- 업무행위규제,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지배구조, 자율규제 등에 관한 연구
-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에 관한 연구
-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김해식	실장	St. John's University 리스크 관리학 석사	보험회계, 재무건전성 평가
임준한	선임연구위원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 파생금융
김석영	연구위원	Arizona University 수학 박사	보험계리, 리스크관리
임준	연구위원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론
백영화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변호사	금융법
양승현	연구위원	Washington State University 석사/변호사	금융법
정원석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게임이론
오승연	연구위원	Massachusett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김세환	부장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 및 보험
박정희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마케팅
이선주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계리
손민숙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금융법
이규성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금융
이유리	연구조원	고려대학교 언론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사회안전망연구실

-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공·사 연금에 관한 연구
- 의료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공·사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제반 이슈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강성호	실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재정금융, 연금보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퇴직연금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최장훈	연구위원	University of Minnesota 통계학 박사	요인분석, 다변량분석, 보험계리
김세중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금융보험, 연금
이정택	연구위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응용미시, 노동경제
이상우	수석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 일반금융보험 동향
김동겸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관리
김미화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김유미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계리
서명희	사무조원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사무보조업무

기획행정실

- | 연구원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관리
- | 일반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 보험금융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출판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행사 운영
- | 각종 계약 체결 및 관리
- | 사무실 비품, 물품, 차량의 조달 및 관리
- |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 기획 및 입안
- | 예산의 수립·운영 및 통제
- | 의전 및 비서업무
- |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도서·자료의 수집, 구입, 관리 및 해외연수·출장자료의 관리
- | 연구조사정보 DB의 구축 및 도서관원제 운영 및 관리
- | 문서수발, 통제, 보존 및 관리
- | 기타 연구원 내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반업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업무분야
김경환	실장	기획행정업무 총괄
홍성연	파트장	회계, 출장, 규정 업무
이상윤	수석담당역	자료실 업무
이정환	파트장	기획, 총무, 행사 업무
김형진	선임담당역	인사, 예산 업무
이성원	담당역	급여, 회계 업무
박규찬	사서	사서 업무
장지연	인턴	사무보조 업무
최원	선임연구원	휴직자
김혜란	연구원	휴직자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정기간행물	간행물 명	발간 주기	주 관
	보험금융연구	연 4회(2, 5, 8, 11월)	사회안전망연구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연간(8월)	동향분석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8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	계간(3, 6, 9, 12월)	동향분석실
	KIRi 리포트	격주간	동향분석실
	고령화리뷰	월간	사회안전망연구실
용역보고서	보고서 명	저 자	
	해외 주요국의 지급여력제도 현황	이기형 외 9인	
	국내신탁업 현황 분석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과제 도출	임준 외 2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과 보험산업의 역할	정성희 외 2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성희 외 4인	
	한국 가계의 금융건강 연구	강성호 외 2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 연구	임준 외 2인	
	지재권 중장기 보험 운영 타당성 연구	이기형 외 1인	

2017 연차보고서

발 행 인 한기정
편집위원장 조재린
편 집 위 원 장동식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18. 1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